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기			금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제1장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1. 총괄	1
2. 통합 재무제표	5
3. 성과보고서	11

제2장 일반회계

I. 개 요	18
--------------	----

1. 세입결산	18
2. 세출결산	20

II. 검토의견	42
----------------	----

1. 핀테크 지원 사업: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필요 등	42
2. 자금세탁방지추진: 분담금 납부액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58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등	63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진흥원 내 과도한 이월·유보잔액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69
5.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실적이 부진한 내역사업 추진 재검토 및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 집행 필요	79
6.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88
7.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저조한 사업 실적을 고려해 국가 재정 출자 속도를 조절할 필요 등 ..	99

8.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펀드 간 경쟁으로 인한 기존 펀드의 투자집행 지연 방지 노력 필요	110
9.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특정업무경비 개인 정액 지급 시 현금 지급 부적절	117
10.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금융위원회 청년인턴의 금융감독원 파견 부적절	120

제3장 공적자금상환기금

I. 개 요	124
1. 수입·지출 결산	124
2. 재무제표	128
II. 검토의견	131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채무상환 완료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노력 필요	131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I. 개 요	136
1. 수입·지출 결산	136
2. 재무제표	140
II. 검토의견	143
1.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금 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	143
2. 대위변제금: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151
3.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관련 제도 개선 필요	159

제5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I. 개 요	165
1. 수입·지출 결산	165
2. 재무제표	167
II. 검토의견	170
1.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170

제6장 신용보증기금

I. 개 요	175
1. 수입·지출 결산	175
2. 재무제표	178
3.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	181
II. 검토의견	184
1. 정부출자수입: 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84
2.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채권시장안정 유동화보증계정의 예상부실률 산정 방식 개선 필요	187
3. 업무용건물: 광진지점 리모델링 및 본점 주차타워 공사 지연 부적절	193
4. 경영지도: 신용카드 수수료 과다 편성 지양	200
5.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리스크 관리 철저 및 임시전용 재원 상환 방안 마련 필요	203
6. 대환보증 대위변제: 프로그램 수요에 비해 과다 추계된 정부출연예산 편성 부적절	210

제7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I. 개 요	216
1. 수입·지출 결산	216
2. 재무제표	219
II. 검토의견	222
1. 재고자산매각대: 기금 청산 일정을 고려한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가치 극대화	222

제8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I. 개 요	227
1. 수입·지출 결산	227
2. 재무제표	232
II. 검토의견	235
1. 대위변제(주택금융보증계정·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보증심사 단계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235

제1장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1. 총괄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와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구성됨.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규모(세출예산현액 순계기준)는 2023회계연도 재정규모 32조 2,172억 9,300만원 대비 0.6% 증가한 32조 4,150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4,994억 2,900만원, 기금 30조 9,156억 6,600만원임.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계기준으로 전년대비 110.3% 증가한 3조 9,994억 2,900만원 규모이고,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2조 5,000억원을 제외한 순계기준으로는 전년대비 6.2% 감소하였으며,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운용실적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30조 9,156억 6,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도 (A)	2024년 도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 일반회계	1,902,151	3,999,429	2,097,278	110.3
- 기금회계 전출	303,860	2,500,000	2,196,140	722.7
- 순계예산(a)	1,598,291	1,499,429	△98,862	△6.2
○ 6개 기금(b)	30,619,002	30,915,666	296,664	1.0
- 공적자금상환기금	8,883,298	9,327,316	444,018	5.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4,198	63,107	8,909	16.4
- 신용보증기금	10,465,063	9,444,908	△1,020,155	△9.7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86,546	2,057,449	570,903	38.4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25,263	4,579,651	△245,612	△5.1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904,634	5,443,234	538,600	11.0
□ 총 재정규모(a+b)	32,217,293	32,415,095	197,802	0.6

주) 각 회계의 금액은 세출예산현액(기금은 운용실적)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총 수입 및 지출 실적은 연간 수입·지출계획 34조 9,719억 9,900만원의 88.4% 수준인 30조 9,156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총 수입 및 지출실적 30조 6,190억 200만원 대비 1.0% 증가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A)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합 계	30,619,002	33,981,492	34,971,999	30,915,666	88.4	1.0
공적자금상환기금	8,883,298	10,889,253	10,940,754	9,327,316	85.3	5.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486,546	2,019,636	2,019,636	2,057,449	101.9	38.4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54,198	64,109	63,115	63,107	100.0	16.4
신용보증기금	10,465,063	11,470,275	11,470,275	9,444,908	82.3	△9.7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4,904,634	4,641,030	5,581,030	5,443,234	97.5	11.0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4,825,263	4,897,189	4,897,189	4,579,651	93.5	△5.1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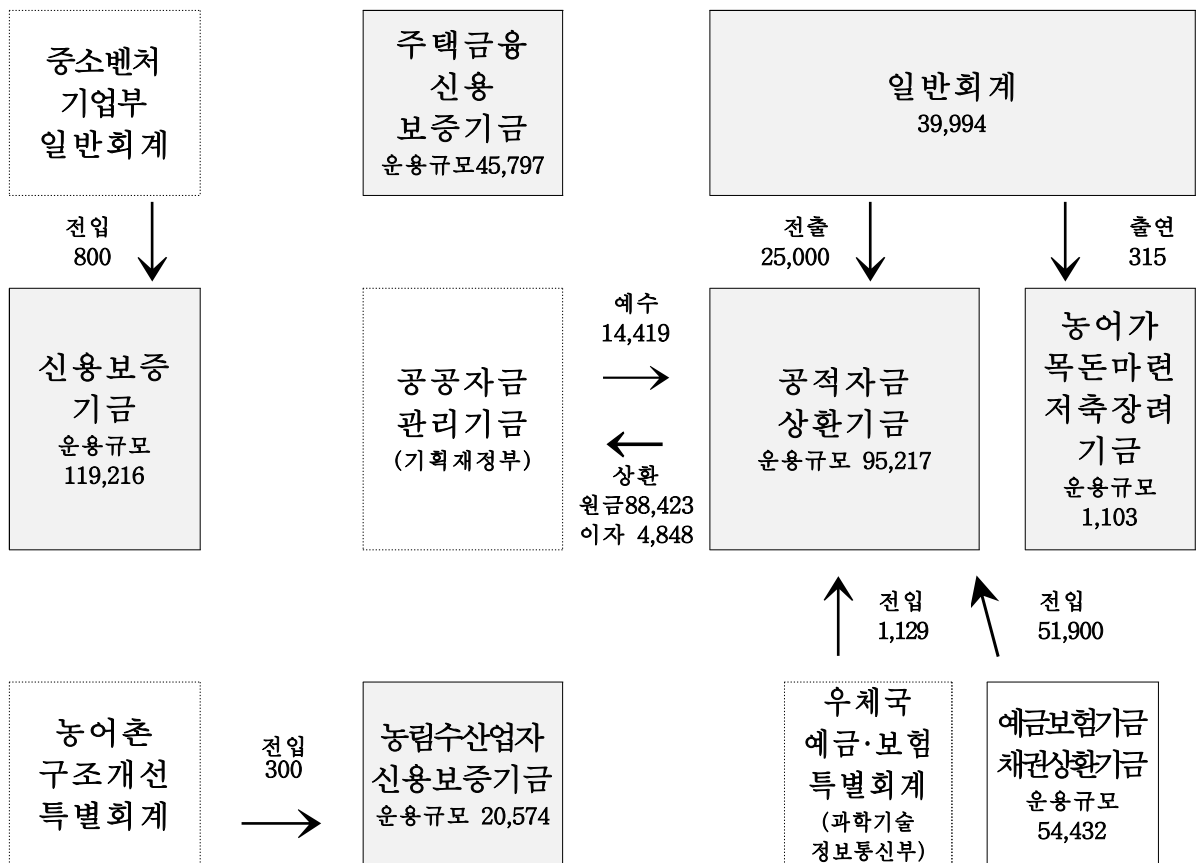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결과 회계·기금 간 재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2조 5,000억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에서 1,129억원을 전입하였고,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315억원을 출연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반회계에서 800억원을

전입하였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300억원 전입하였음.

□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 5조 1,900억원을 전입 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기금예수금 1조 4,419억원을 받았으며, 예수금 원금 8조 8,423억원과 예수이자 4,848억원을 상환하였음.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결산 재정흐름도〉

(단위: 억 원)



주: 총계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 통합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¹⁾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자산은 33조 64억 400만원이고, 부채는 26조 7,396억 6,300만원이며, 순자산은 6조 2,667억 4,100만원임.

〈금융위원회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26,518,136	26,118,385	399,751	1.5
	투자자산	5,010,798	5,977,465	△966,667	△16.2
	일반유형자산	536,235	548,158	△11,923	△2.2
	무형자산	15,694	22,123	△6,429	△29.1
	기타비유동자산	925,540	781,098	144,442	18.5
	자산계	33,006,404	33,447,229	△440,825	△1.3
부 채	유동부채	848,576	8,459,661	△7,611,085	△90.0
	장기차입부채	20,611,176	20,420,276	190,900	0.9
	장기충당부채	5,175,776	4,917,385	258,391	5.3
	기타비유동부채	104,135	147,779	△43,644	△29.5
	부채계	26,739,663	33,945,101	△7,205,438	△21.2
순자산	기본순자산	76,948,724	76,948,724	-	-
	적립금 및 잉여금	△68,756,0445	△75,478,923	6,722,878	8.9
	순자산조정	△1,925,938	△1,967,672	41,734	2.1
	순자산계	6,266,741	△497,871	6,764,612	1,358.7

(자료: 금융위원회)

1)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024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4,408억 2,5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장기 운용자산 규모 감소 및 유동성 대체 등으로 투자자산이 전기 대비 9,666억 6,7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4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 부채는 전년도 말 대비 7조 2,054억 3,8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만기도래 정부내예수금 감소 등으로 유동 부채가 전기 대비 7조 6,110억 8,5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4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 순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6조 7,646억 1,2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적립금 및 잉여금이 6조 7,228억 7,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 재정운영표2)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운영결과는 △3조 3,20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재정운영결과 △2조 8,498억 400만원 대비 4,704억 3,400만원 감소함.

〈금융위원회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3,080,427	2,418,406	662,021	27.4
1. 프로그램 총원가	4,899,111	4,346,823	552,288	12.7
2. 프로그램 수익	1,818,684	1,928,417	△109,733	△5.7
II. 관리운영비	212,133	225,460	△13,327	△5.9
III. 비배분비용	525,701	586,842	△61,141	△10.4
IV. 비배분수익	1,575,147	743,926	831,221	111.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243,114	2,486,782	△243,668	△9.8
VI. 비교환수익 등	5,563,351	5,336,586	226,765	4.2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320,238	△2,849,804	△470,434	△16.5

(자료: 금융위원회)

□ 프로그램순원가는 주로 신용보증금융지원 순원가 9,221억 7,500만원 증가 등으로 전기 대비 6,620억 2,100만원 증가함.

2)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냄.

□ 관리운영비³⁾는 인건비가 82억 9,800만원 증가하였으나 경비가 216억 2,500만원 감소하여 전기 대비 133억 2,700만원 감소함.

□ 비배분비용⁴⁾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등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611억 4,100만원 감소함.

□ 비배분수익⁵⁾은 투자증권처분이익 등이 증가하여 전기 대비 8,312억 2,100만원 증가함.

□ 비교환수익⁶⁾ 등은 부담금수익이 1,094억 8,000만원 증가하고 정부외 기부금 등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이 1,172억 8,500만원 증가하여 전기 대비 2,267억 6,500만원 증가함.

3)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관련 비용

4) 프로그램과 직접적 대응이 어려운 비용

5) 재화 및 용역 등 반대급부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중 프로그램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수익

6)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

3) 순자산변동표⁷⁾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기말순자산은 6조 2,667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순자산 △4,978억 7,100만원 대비 6조 7,646억 1,200만원 증가함.

〈금융위원회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497,871	△7,430,680	6,932,809	93.3
II. 재정운영결과	△3,320,238	△2,849,804	△470,434	△16.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292,640	1,199,525	2,093,115	174.5
IV. 조정항목	151,735	2,883,479	△2,731,744	△94.7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6,266,741	△497,871	6,764,612	1,358.7

(자료: 금융위원회)

□ 기초순자산은 △4,978억 7,100만원으로 전기 대비 6조 9,328억 900만원 증가하였는데 주로 직전연도 재정운영결과와 재원의조달및이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순자산의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3조 3,202억 3,800만원으로 전기 재정운영결과 △2조 8,498억 400만원 대비 4,704억 3,400만원 감소함.

□ 순자산의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3조 2,926억 4,000만원으로 전기 대비 2조 931억 1,500만원 증가함.

7)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국가의 재정건전성 분석과 현황파악을 위해 순자산의 크기와 변동내역을 표시함.

-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은 4조 1,572억 5,600만원으로 국고수입의 증가 등으로 전기 대비 2조 1,335억 4,900만원 증가함.
- 차감항목인 재원의 이전은 8,646억 1,600만원으로 출자금의 증가로 전기 대비 404억 3,400만원 증가함.
- 순자산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거래 중 비교환수익 또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하는 조정항목은 1,517억 3,500만원으로 출연금 감소로 전기 대비 2조 7,317억 4,400만원 감소함.

3. 성과보고서

□ 금융위원회는 “① 경제활력 뒷받침 ② 금융산업 혁신 ③ 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④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4대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4년도 정책비전을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4대 전략목표를 설정·추진하였음.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



□ 금융위원회의 ‘2024년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달성도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도는 총 14개 지표 중 11개를 달성하여
78.6%를 기록하였음.

〈금융위원회 성과 달성도 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도			
	성과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I.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4	-	3	1
II.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 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5	-	3	2
III.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 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4	1	3	-
IV.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행 정시스템을 구축한다.	1	-	1	-
합 계	14	1	10	3

주: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 이상~130% 미만, 미달성 100% 미만

(자료: 금융위원회)

□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는 ‘I-(2)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의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 지원’, ‘II-(3)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화
한다’의 ‘주택연금지원실적(지급액)’, ‘II-(4)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의 ‘전체햇살론 공급금액 대비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공급금액 비중’임.

〈프로그램목표별 성과 미달성 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
I-(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 지원(건)	청장년 귀농어창업우대 순신규보증 지원 건수	1,224	1,171	95.7
II-(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주택연금 지원 실적(조원)	연간 주택연금 지급액	2.77	2.64	95.3
II-(4)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전체 햇살론 공급금액 대비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공급금액 비중(%)	서민금융활성화 지원사업 수혜자 중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금액 비중 * 신용등급 하위 20%이하 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자	22.6	20.4	90.4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 ‘2024년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목표관리 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2024년도 결산실적은 예산 대비 90.0%인 6조 6,714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이 높고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점정책부문의 기업이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 ‘산업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사업이 예산 4조 1,001억원 대비 83.0%인 3조 4,039억원에 그치는 등의 사유에 기인하고 있음.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년 예산	'24년 결산	집행률
총 계					74,099	66,714	90.0
전략목표 I: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53,776	46,659	86.8
프로그램목표 I - 1: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					8,040	8,040	100.0
산업금융지원	산업은행출자	일반회계	2400-2414		3,400	3,400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일반회계	2400-2432		3,800	3,800	100.0
저탄소생태계조성	녹색금융	기후대응기금	6200-6232	타부처소관	500	500	100.0
	녹색금융	기후대응기금	6200-6232	타부처소관	340	340	100.0
프로그램목표 I -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4,567	4,415	96.7
농림수산업금융지원	농어민금융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400-2432		4,567	4,415	96.7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년 예산	'24년 결산	집행률
프로그램목표 I - 3: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국민 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점정책부문의 기업이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1,169	34,204	83.1
신용보증 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2400-2431		41,001	34,039	83.0
	신보IT운영	신용보증기금	2400-2434		168	165	98.0
전략목표 II: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19,726	19,463	98.7
프로그램목표 II - 1: 금융소비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6,813	6,807	99.9
금융소비 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일반회계	1800-1831	조세 지출 병행	6,801	6,800	100.0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일반회계	1800-1833		13	6	50.0
프로그램목표 II - 2: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624	624	100.0
저축장려	저축장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1600-1631	조세 지출 병행	624	624	100.0
프로그램목표 II -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10,169	9,913	97.5
주택금융 지원	주신보운영 (주신보계정)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2600-2631		9,412	9,214	97.9
	주신보IT운영 (주신보계정)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2600-2632		63	57	90.4
	주연보운영 (주연보계정)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2600-2631	조세 지출 병행	674	625	92.7
	주연보IT운영 (주연보계정)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2600-2632		20	16	82.7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년 예산	'24년 결산	집행률
프로그램목표Ⅱ- 4: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120	2,120	100.0
복권기금 운영(취약 계층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복권기금	6300-6346	타부처 소관	2,120	2,120	100.0
전략목표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207	206	99.4
프로그램목표Ⅲ- 1: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123	123	99.4
금융정책	핀테크 지원 사업	일반회계	1100-1134		123	123	99.4
프로그램목표Ⅲ- 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74	74	99.5
자금세탁 방지시스 템선진화	자금세탁방지추진	일반회계	1300-1331		28	28	99.0
	FIU 전산망 구축 운영	일반회계	1300-1332		46	46	99.8
프로그램목표Ⅲ- 3: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9	9	98.6
금융산업 글로벌화	금융관련국제협력	일반회계	1400-1431		9	9	98.6
전략목표Ⅳ: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390	386	99.0
프로그램목표Ⅳ- 1: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390	386	99.0
금융행정 효율화	행정정보화	일반회계	7100-7132		36	35	97.0
	금융행정지원	일반회계	7100-7135		354	351	99.2

(자료: 금융위원회)

제2장 일반회계

I. 개 요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96억 2,900만원이며, 2,228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4.9%인 1,446억 1,700만원(예산대비 161.3%)을 수납하고, 781억 5,100만원은 미수납됨.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 현액 (A)	누적징수 결정액(B)		수납액(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2024년 징수결정액		2024년 수납액			2024년 미수납액
기타 재산수입	-	175	175	175	175	-	-	-
과태료	36,135	41,837	30,788	29,230	29,230	27	12,580	1,679
과징금	49,532	170,661	118,857	113,736	113,736	-	56,926	41,055
가산금	150	8,949	2,355	322	322	21	8,606	2,163
기타경상 이전수입	3,812	1,193	1,190	1,152	1,152	3	39	39
기타 잡수입	-	2	2	2	2	-	-	-
합 계	89,629	222,817	153,367	144,617	144,617	51	78,151	44,936

(자료: 금융위원회)

□ 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429억 6,600만원, 과징금 등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3억 2,2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1억 5,200만원, 기타재산수입 1억 7,500만원, 기타잡수입 200만원임.

□ 미수납액 781억 5,100만원은 납기 미도래(350억 9,100만원) 및 폐업·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납부능력 부족(405억 3,800만원), 납부기간 연장 등 징수유예(25억 2,200만원) 등에 따른 것임.

〈최근 3년간 세입 미수납 사유 총괄표〉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납기미도래	3,598	34,383	34,533	473	2,033	557	-	-	0.4	-	-	-
납부능력 부족	14,438	16,838	20,022	9,001	11,084	11,920	5,125	6,534	8,596	3	3	-
징수유예	76	584	2,371	40	45	102	9	65	10	-	-	39
합 계	18,113	51,804	56,926	9,514	13,163	12,579	5,134	6,599	8,606	3	3	39

(자료: 금융위원회)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조 35억 6,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99.9%에 해당하는 3조 9,994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 9,600만원을 불용처리함.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증감액	예비비				
합 계	4,003,018	548	615 △615	-	4,003,566	3,999,429	40	4,096
인건비	33,037	-	△153	-	32,884	31,001	-	1,883
기본경비	9,518	-	536 △384	-	9,671	8,616	-	1,054
주요사업비	1,460,463	548	78 △78	-	1,461,011	1,459,812	40	1,158
내부거래 (회계기금간 거래)	2,500,000	-	-	-	2,500,000	2,50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310억 100만원, 기본경비 86억 1,600만원, 주요사업비 1조 4,598억 1,200만원임.

1) 인건비

□ 2024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28억 8,400만원
에서 94.3%인 310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8,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4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예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등				
합 계	33,037	-	-	△153	32,884	31,001	-	1,883
본부 인건비	26,747	-	-	△153	26,594	25,504	-	1,091
FIU 인건비	6,290	-	-	-	6,290	5,497	-	792

(자료: 금융위원회)

2) 기본경비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6억 7,100만원 중 89.1%인 86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5,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본경비 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목)	2024 예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합 계	9,518	-	-	536 △384	9,671	8,616	-	1,054
인건비(110)	2,057	-	-	△291	1,767	1,721	-	45
운영비(210)	4,674	-	-	9 △41	4,643	3,898	-	745
여비(220)	655	-	-	11 △9	657	533	-	123
업무추진비(240)	691	-	-	△3	691	676	-	15
직무수행경비(250)	732	-	-	-	732	631	-	101
보전금(310)	68	-	-	-	68	48	-	21
민간이전(320)	378	-	-	443	821	818	-	3
건설비(420)	60	-	-	73 △9	124	124	-	-
유형자산(430)	202	-	-	△34	167	167	-	-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사업비

□ 2024회계연도 주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4,610억 1,100만원 중 99.9%인 1조 4,598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연내 완료하지 못한 연구용역 2건에 대해 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주요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2024 예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합 계	1,460,463	548	-	±78	1,461,011	1,459,812	40	1,158
핀테크 지원 사업	12,330	-	-	-	12,330	12,252	-	78
자금세탁방지추진	783	-	-	-	783	756	-	27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1,998	-	-	-	1,998	1,998	-	-
FIU전산망구축운영 (정보화)	4,635	-	-	-	4,635	4,626	-	9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937	-	-	-	937	925.5	-	11.5
금융소비자보호	101	-	-	-	101	94	-	7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38	-	-	-	38	37	-	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165,738	-	-	56,050	221,788	221,788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	-	-	56,000	56,000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8,211	-	-	△56,050	312,161	312,120	40	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90,000	-	-	-	90,000	90,000	-	-

주요사업	2024 예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55	-	-	-	1,255	628	-	627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240,000	-	-	-	240,000	240,000	-	-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	-	-	100,000	100,000	-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00	-	-	-	330,000	330,000	-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	-	-	50,000	50,000	-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1,058	493	-	-	1,551	1,548	-	3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 (정보화)	1,585	-	-	-	1,585	1,499	-	86
자본시장조사인프라 운영(정보화)	323	-	-	-	323	318	-	5
금융위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117	-	-	-	117	103	-	1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834	-	-	-	834	672	-	162
정책연구개발	665	55	-	-	720	632	-	88
금융정책알리기	844	-	-	-	844	821	-	23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07	-	-	-	407	407	-	-
회계의 날	65	-	-	-	65	60	-	5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200	-	-	-	200	194	-	6
금융의 날 행사	76	-	-	-	76	74.5	-	1.5
소송 수행 비용	800	-	-	-	800	799.4	-	0.6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31,463	-	-	-	31,463	31,463	-	-

(자료: 금융위원회)

□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3억 3,000만원 중 122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자금세탁방지 추진 사업은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 국제기구 활동 등의 국제협력과 고액현금거래(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7억 8,300만원 중 7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사업은 FATF 교육연구기구(TRAIN)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9억 9,800만원 전액을 집행 하였음.

□ FIU전산망구축운영 사업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보호 및 보안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6억 3,500만원 중 46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사업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다양한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금융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금융중심지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추진과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치 및 필요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3,700만원 중 9억 2,550만원을 집행하고 1,1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소비자보호 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00만원 중 9,4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사업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융그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그룹 감독제도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800만원 중 3,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17억 8,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연체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6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121억 6,100만원 중 3,12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이월하고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은 불법사금융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0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지원을 통해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 가혹한 채무독촉으로부터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5,500만원 중 6억 2,75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7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산업은행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은 국가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중견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4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산업은행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3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및 기업 부실 대응을 위해 구조조정 투자 목적의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금 유치에 위한 최소한의 후순위 출자목적 예산현액 5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전자정부 구현 및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금융위원회 정보시스템을 개선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5,100만원 중 15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정보화) 사업은 개인사업자 정보 등 금융분야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금융혁신, 창업 및 데이터

기반 금융 산업 선진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8,500만원 중 14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자본시장조사인프라운영(정보화) 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수사를 위한 인프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및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2,300만원 중 3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사업은 금융위원회 국·영문 대표 홈페이지의 국민 이용 편의 향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으로 금융정책의 효과적 전달과 대국민 소통 활성화, 홍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700만원 중 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은 조직의 비전 공유를 위한 다양한 창의혁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창의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행정효율성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3,400만원 중 6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금융관련 주요 정책과제와 정책현안에 대한 용역 수행을 통하여 금융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7억 2,000만원 중 6억 3,154만원을 집행하고 8,84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정책알리기 사업은 금융시장 참여자·금융소비자·언론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4,400만원 중 8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사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시행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회계의 날 사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회계의날)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회계의 날’(매년 10월 31일)을 맞이하여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500만원 중 6,0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제7항,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의 날 행사 사업은 2016.3.22.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기존 ‘저축의 날’이 ‘금융의 날’로 개편되어, 저축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과 자본시장 육성 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600만원 중 7,45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소송 수행 비용 사업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원 중 7억 9,94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장려금의 지급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14억 6,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4)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2024년도 회계기금간 거래(전출금)는 예산현액 2조 5,000억원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내부거래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2024 예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합 계	2,500,000	-	-	-	2,500,000	2,500,000	-	-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으로 전출금	2,500,000	-	-	-	2,500,000	2,50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5) 프로그램별 지출내역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프로그램(항)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2024회계연도 프로그램(항)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항) 별	2024 예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합 계	4,003,018	548	-	±615	4,003,566	3,999,429	40	4,096
금융정책(1100)	12,330	-	-	-	12,330	12,252	-	78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선진화 (1300)	7,416	-	-	±41	7,416	7,379	-	37
금융산업 글로벌화(1400)	937	-	-	±29	937	924	-	13
금융소비자보호 (1800)	681,343	-	-	-	681,343	680,667	40	636
산업금융지원 (2400)	720,000	-	-	-	720,000	720,000	-	-
금융행정효율화 (7100)	80,992	548	-	±545	81,540	78,207	-	3,332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8400)	2,500,000	-	-	-	2,500,000	2,50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 사업(1100)은 세출예산현액 123억 3,000만원 중 99.4%인 122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0.6%인 7,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는 세출예산현액 74억 1,600만원 중 99.5%에 해당하는 73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0.5%인 3,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산업글로벌화(1400)는 세출예산현액 9억 3,700만원 중 98.6%인 9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1.4%인 1,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소비자보호(1800)는 세출예산현액 6,813억 4,300만원 중 99.9%인 6,806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0.01%인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6억 3,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산업금융지원(2400)은 세출예산현액 7,200억원 중 100.0%인 7,2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금융행정효율화(7100)는 세출예산현액 815억 4,000만원 중 95.9%에 해당하는 782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4.1%인 33억 3,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400)는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2조 5,000억원 중 100.0%인 2조 5,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6) 이용 내역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액은 없음.

〈2024회계연도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세목	금액	이용사유
------	----	----	------

해당사항 없음

(자료: 금융위원회)

7) 전용 내역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6억 1,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전용 증액			전용 감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 (비충액) (7118-252)	공사비 (420-03)	8.8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비충액) (7111-251)	공사비 (420-03)	8.8	FIU 가상자산검사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네트워크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비 (420-03) 증액 필요
금융관련 국제 협력 및 금융 중심지 추진 (1431-301)	국제부담금 (340-02)	14.3	금융관련 국제 협력 및 금융 중심지 추진 (1431-301)	일반수용비 (210-01)	14.3	환율 상승 및 연회비 인상 등에 따라 국제 기구 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 부족분 발생
자금세탁방지 추진(1331-303)	국제부담금 (340-02)	40.6	자금세탁방지 추진(7111-257)	일반수용비 (210-01)	1.5	환율증가 및 부담금 증가로 국제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 부족분 발생.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0.3	
				국외업무 여비 (220-02)	28.8	
금융관련 국제 협력 및 금융 중심지 추진 (1431-301)	국제부담금 (340-02)	5	금융관련 국제 협력 및 금융 중심지 추진 (1431-301)	일반수용비 (210-01)	5	환율 상승 및 연회비 인상 등으로 인해 국제기구 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 부족분 발생. 국제 부담금 전용 승인을 통보(5.30일) 받았 으나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추가 전용 필요

전용 증액			전용 감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 (비충액) (7118-252)	공사비 (420-03)	29.7	금융정보분석원 기 본 경 비 (비충액) (7118-252)	임차료 (210-07)	29.7	FIU 조직확충시 청사 내 공간 부족으로 광화문빌딩을 임차 하였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부서울 청사 내 사무실 확보 및 입주자 완료되어 청사 내 네트워크 환경 구성 및 광화문 빌딩 원상회복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전용 필요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충액) (7111-251)	공사비 (420-03)	34.2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충액) (7111-251)	자산취득비 (430-01)	34.2	과 신설에 따른 신규 사무실 설치, 대회의실 공사 등 대금 지급을 위한 공사비(420-03) 증액 필요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1431-301)	국외업무 여비 (220-02)	10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1431-301)	사업추진비 (240-01)	10	환율 상승 및 추가 국외출장 수요 발생 으로 인해 국외여비 (220-02)예산 부족분 발생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충액) (7111-251)	국외 교육 여비 (220-03)	11.2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비충액) (7111-251)	일반수용비 (210-01)	11.2	기획조정관실 기본 경비 중 국외교육 여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대변인실 기본경비(비충액) (7111-252)	일반수용 비 (210-01)	6.4	대변인실 기본경비 (비충액) (7111-252)	국내여비 (220-01)	6.4	①출입기자단 대상 기념품 제작(5,000 천원), ②신문사 초판 서비스 대금 지급 (4,260천원), ③부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5,302천원) 을 위한 일반수용비 (220-01) 증액 필요

전용 증액			전용 감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7111-201)	고용부담금 (320-09)	405.6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보수 (110-01)	152.6	12월 4대보험료(기관 부담금) 및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인건비(110목)에서 고용부담금(320-09) 으로 전용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7111-201)	상용임금 (110-03)	247.8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7111-201)	일용임금 (110-04)	5.2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 (7118-202)	고용부담금 (320-09)	37.6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 (7118-202)	상용임금 (110-03)	37.6	12월 4대보험료(기관 부담금) 및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인건비(110목)에서 고용부담금(320-09) 으로 전용
금융정책알리기 (7135-303)	고용부담금 (320-09)	8.5	금융정책알리기 (7135-303)	상용임금 (110-03)	8.5	12월 4대보험료(기관 부담금) 및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인건비(110목)에서 고용부담금(320-09) 으로 전용
자본시장국 기본경비(비총액) (7111-255)	일반수용비 (210-01)	3	자본시장국 기본경비(비총액) (7111-255)	국내여비 (220-01)	3	자본시장조사단 불 공정거래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 내 기술 평가위원수당 지급 등 연말에 갑작스러운 지출증가로 일반 수용비 부족분 발생

(자료: 금융위원회)

8) 이월 내역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4,000만원
이며, 연내 완료하지 못한 연구용역 2건에 대한 대금 사고이월임.

〈2024회계연도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세 목	이월액	이월 사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정책연구비	40	연내 미완료 정책연구용역 2건에 대한 용역대금 차년도 이월
합 계		40	

(자료: 금융위원회)

9) 불용 내역

□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40억 9,6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집행잔액 18억 8,3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0억 5,400만원,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11억 5,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주요사업별 불용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 인 건 비	32,884	1,883	5.7	집행잔액
○ 기본경비	9,671	1,054	10.9	집행잔액
○ 주요사업비	3,961,011	1,158	0.0	
핀테크 지원 사업	12,330	78	0.6	집행잔액 등
자금세탁방지추진	783	27	3.0	집행잔액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1,998	-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635	9	0.2	집행잔액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937	13	1.2	집행잔액
금융소비자보호	101	7	6.9	집행잔액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38	1	2.6	집행잔액
서민금융진흥원출연(청년희망적금)	221,788	-	-	
서민금융진흥원출연(최저신용자한시특례보증)	56,000	-	-	
서민금융진흥원출연(청년도약계좌)	312,161	1	0.0	집행잔액
서민금융진흥원출연(햇살론15)	90,000	-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55	627	50.0	선임실적 저하 등
산업은행출자(혁신성장펀드)	240,000	-	-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산업은행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소상공인지영업자 채무조정)	330,000	-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	-	
금융위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551	3	0.2	집행잔액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정보화)	1,585	86	5.4	낙찰차액, 집행잔액
자본시장조사인프라 운영(정보화)	323	5	1.5	집행잔액
금융위대표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117	14	12.0	낙찰차액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834	162	19.5	집행잔액
정책연구개발	720	89	12.2	집행잔액
금융정책알리기	844	23	2.7	낙찰차액, 집행잔액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07	-	-	
회계의 날	65	5	7.7	집행잔액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200	6	3.0	집행잔액
금융의 날 행사	76	1.5	2.0	집행잔액
소송수행비용	800	1	0.0	집행잔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31,463	-	-	
○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2,500,000	-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500,000	-	-	
합 계	4,003,566	4,096	0.1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핀테크 지원 사업⁸⁾: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하여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3억 3,000만원 중 122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 되고,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핀테크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핀테크 지원 사업	12,330	-	-	12,330	12,252	-	78	12,933

(자료: 금융위원회)

8) 세부사업: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2) 검토의견

(1)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필요

- “핀테크 지원 사업”은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핀테크 기반구축’, ‘사업 운영 지원’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1항⁹⁾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핀테크 지원 사업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비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일반수용비 (210-01)	165	108	57
	사업추진비 (240-01)	19	18	1
	민간경상보조 (320-01)	6,858	6,858 [6,765]	-
	소계	7,042	6,984 [6,891]	58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320-01)	2,374	2,374 [2,337]	-
	소계	2,374	2,374 [2,337]	-
핀테크 기반구축	일반수용비 (210-01)	9	3	6
	국외업무여비 (220-02)	39	30	9
	사업추진비 (240-01)	5	1	4
	정책연구비 (260-02)	30	30	-
	민간경상보조 (320-01)	1,661	1,661 [1,661]	-
	소계	1,744	1,725 [1,724]	19
사업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320-01)	1,060	1,060 [1,024]	-
	민간자본보조 (320-07)	110	110 [110]	-
	소계	1,170	1,170 [1,134]	-
합계		12,330	12,252 [12,087]	78

(자료: 금융위원회)

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까지는 핀테크 지원 사업 전체에 대해 보조사업자를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해왔으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단독으로 신청·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음.
- 그러나 2024년도부터는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내역사업 중 ‘핀테크 보안’(5억 1,400만원) 및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내역사업 중 ‘핀테크 교육’(5억 5,000만원)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로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였음.
- 그 결과, ‘핀테크 보안’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보안원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핀테크 교육’ 및 나머지 핀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음.

〈핀테크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경과〉

2019년 ~ 2023년		2024년	
대상 사업	보조사업자	대상 사업	보조사업자
핀테크 지원 사업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보조사업자 통합 선정)	핀테크 지원 사업 (교육, 보안 제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교육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내역사업)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보안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내역사업)	금융보안원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핀테크 보안 및 핀테크 교육 사업을 분리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채택한 ‘시정 요구사항’에 근거한 것이나, 이와 같은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는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부터 법령에 따른 투명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최적의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편성, 사업자 선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2024년도부터 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고, 최적의 보조사업자가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에 대한 분할공모를 시행하였다는 조치 완료 결과를 보고하였음.
- 그러나 분할 공모한 ‘핀테크 교육’ 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선정되었고, ‘핀테크 보안’ 사업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사업자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핀테크 보안 사업을 수행한 금융보안원이 선정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가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할 공모 방식이 실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의문임.

□ 동 사업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¹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공모에 의한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¹¹⁾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공모에 의하여 제출받도록 하되,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외방식(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¹²⁾에서는

10)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이하,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보조사업자를 지정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공모방식 및 2024년부터 진행한 분할 공모방식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¹³⁾ 보고서에서도 현행과 같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므로, 사업의 지속성과 노하우 축적 측면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을 지정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컨설팅 용역 계약 방식 부적정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¹⁴⁾를 운영하고 있음.

○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초기(2019. 7.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하길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약식 사전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컨설팅을 하는 절차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별한 후 해당 기업들에 대해 정식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요조사’ 절차를 운영해왔음.

○ 이러한 ‘수요조사’ 절차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¹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¹⁶⁾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수요조사’ 절차를 종료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1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1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관련 기관의 동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음.

16)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금융위원회 담당 부서가 사전 검토하는 ‘수요조사’ 절차를 신설한 것은 법률 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임.

- 그 결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지정 건수는 과거 대비 202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지정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청 건수	84	60	48	52	57	400	701
지정 건수	77	60	48	52	56	315	608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내역사업에는 중·소 핀테크 기업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률·회계·기술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핀테크 종합지원실 운영 및 전문지원단 운영 등을 위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는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용역’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컨설팅 용역은 크게 ① 핀테크 종합지원실 행정인력 운영, ② 전문지원단 운영 및 수당 지급, ③ 중·소 핀테크기업 컨설팅 관련 법률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의 경우 컨설팅 용역 편성액 3억 5,000만원은 용역사업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1억원, 전문지원단 수당 1억

4,000만원, 기타 컨설팅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위한 용역비 1억 1,0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음.

□ 2024년 5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지정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위 용역을 통해 수행한 전문지원단 컨설팅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음.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은 크게 ① 일반 컨설팅, ② 전문지원단 컨설팅, ③ 현장자문단 컨설팅으로 구분됨.

- 이 중 전문지원단은 핀테크 기업 컨설팅과 관련한 4개 분야(디지털금융, 데이터, 금융기술, 경영 전략·관리) 전문가 6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 핀테크 기업만을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청서에 심사기준 관련 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었는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전문지원단의 컨설팅은 건당 최대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전문지원단 컨설팅은 2023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총 90회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나, 제도가 개편된 2024년의 경우 오히려 80건으로 컨설팅 건수가 감소하였음.

〈컨설팅 종류 별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일반상담	전문지원단 상담	현장자문단
2022	76	-	-
2023	199	90	48
2024	379	80	7
2025. 7.	354	47	2

(자료: 금융위원회)

- 그 결과 2024년 컨설팅 용역이 종료된 이후 용역사업자가 보조사업자에게 정산한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과 달리 행정인력 인건비로 6,600만원, 전문지원단 수당 8,900만원, 법률검토 등으로 1억 9,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용역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항목	편성액	집행액
2023년	· 인건비(행정인원 1명)	50	30
	· 전문지원단 컨설팅 수당	150	91
	· 법률 검토 등	50	129
	합계	250	250
2024년	· 인건비(행정인원 2명)	100	66
	· 전문지원단 컨설팅 수당	140	89
	· 법률 검토 등	110	195
	합계	350	350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지정 건수의 증가로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과 같은 컨설팅 용역 대가 산정 방식은 효율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현행 컨설팅 용역 대가 산정 방식은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배정된 예산을 총액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업자는 이 중 행정인력 인건비와 전문지원단 컨설팅 건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당사자에게 지급한 이후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용역비로 처리하는 방식임.
 - 이러한 방식은 용역사업자가 중소 핀테크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전문지원단 컨설팅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법률 검토 등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성과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중·소 핀테크 업체가 양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온라인 교육 방식 변경 필요

-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내역사업에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지원에 필요한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핀테크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는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교육’ 용역 계약을 발주하여 용역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핀테크 교육 용역은 크게 ① 핀테크 인턴 과정, ② 핀테크 전문가 과정, ③ 핀에듀 과정(온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온라인 교육인 핀에듀 과정은 핀테크 실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수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총 23종의 강의가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음.

〈핀에듀 과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구분	과정명	구분	과정명
헬로, 핀테크	1. 입문	인슈어테크 I	13. 보험업의 이해
	2. 지급결제·송금	인슈어테크Ⅱ	14. 인슈어테크 인사이트
	3. 자산관리·보험	핀테크 기술 분석	15. 인공지능의 이해
	4. 금융플랫폼·금융데이터		16. 블록체인 이해
	5. 보안인증·블록체인		17.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해
	6. 개인신용정보관리 및 활용		18. OpenAPI
	7. 핀테크 기반기술		19. IoT의 이해
금융규제 및 정책방향	8. 핀테크 컴플라이언스	20. 빅데이터의 이해	
지급결제· 송금 I	9. 은행업의 이해	21. 마이데이터의 이해	
지급결제· 송금Ⅱ	10. 지급결제·송금 인사이트	22. 핀테크 프로덕트 기본과 서비스 기획	
자산관리 I	11. 금융투자의 이해	23. 핀테크 소액지급결제 시장의 변화	
자산관리Ⅱ	12. 자산관리 인사이트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 핀에듀 과정의 성과를 살펴보면, 개설된 강좌 1회 당 수강을 신청한 인원과 실제 수료까지 마친 인원이 평균 3명에 미달하는 등 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교육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24년 핀테크 교육 용역을 발주하면서 목표 수료인원을 97명으로 설정하였고, 실제 수강신청을 한 인원은 213명, 수료인원은 183명임.

- 구체적으로 보면, 23개 강좌가 총 77회 개설되었는데, 입문 강좌를 제외하고는 강좌별로 개설횟수 1회 당 평균 0.7명에서 5.3명이 수료하였고, 전체 강좌 기준으로는 개설횟수 1회 당 평균 2.4명이 수료하는 등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음.

〈핀에듀 과정 개설 현황〉

(단위 : 건)

구분	과정명	제작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설 횟수	수강 신청 인원	수료 인원	개설 횟수	수강 신청 인원	수료 인원	개설 횟수 (A)	수강 신청 인원 (B)	수료 인원 (B)	B/A
헬로, 핀테크	입문	2022	1	73	57	1	70	58	1	32	24	24.0
	지급결제·송금	2020	2	41	35	3	33	29	4	10	7	1.8
	자산관리·보험	2020	2	7	6	3	4	4	3	5	5	1.7
	금융플랫폼금융데이터	2022	2	15	9	3	33	32	4	9	8	2.0
	보안인증·블록체인	2020	2	22	19	3	12	11	3	3	2	0.7
	개인신용정보관리 및 활용	2022	2	18	16	3	28	26	4	10	10	2.5
	핀테크 기반기술	2022	2	24	21	3	28	25	4	5	5	1.3
금융규제 및 정책방향	핀테크 컴플라이언스	2022	2	15	14	3	13	10	3	9	8	2.7
지급결제송금I	은행업의 이해	2022	2	11	8	3	8	6	4	5	4	1.0
지급결제송금II	지급결제송금 인사이트	2022	2	14	11	3	16	14	3	11	10	3.3
자산관리 I	금융투자의 이해	2022	2	16	14	3	10	7	4	5	4	1.0
자산관리 II	자산관리 인사이트	2022	2	12	11	3	13	11	4	5	5	1.3
인슈어테크 I	보험업의 이해	2022	2	8	8	3	6	5	3	6	5	1.7
인슈어테크II	인슈어테크 인사이트	2022	2	9	6	3	13	12	3	4	4	1.3
핀테크 기술 분석	인공지능의 이해	2022	2	9	7	3	9	5	3	6	6	2.0
	블록체인의 이해	2022	2	12	10	3	15	14	3	7	6	2.0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해	2022	2	6	6	3	4	3	4	7	5	1.3
	OpenAPI	2022	2	22	18	3	30	27	4	10	9	2.3
	IoT의 이해	2022	2	9	9	3	6	2	4	7	4	1.0
빅데이터의 이해		2023	-	-	-	1	8	7	3	13	13	4.3
마이데이터의 이해		2023	-	-	-	1	8	8	3	16	16	5.3
핀테크 프로젝트 기본과 서비스 기획		2023	-	-	-	-	-	-	3	17	13	4.3
핀테크 소액지급결제 시장의 변화		2023	-	-	-	-	-	-	3	11	10	3.3
합계			55	343	285	57	367	316	77	213	183	2.4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은 2024년 수강 실적은 2023년 목표 수료인원 340명, 수강 신청 인원 467명, 수료인원 380명 대비 각각 약 30~50% 수준에 불과한 수치임.

〈핀에듀 과정 수료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목표인원(명)	수강신청인원(명)	수료인원(명)
2023년(A)		340	467	380
2024년(B)		97	213	183
차이	(B-A)	-243	-254	-197
	(B/A)	28.5%	45.6%	48.2%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핀에듀 과정의 목표인원 및 수강신청·수료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2024년 감소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24년 핀에듀 과정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핀에듀 과정에 배정된 예산은 2023년 6억 1,700만원에서 2024년 2억 400만원으로 4억 1,700만원 감액 배정된 바 있음.

〈핀에듀 과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항목	예산액 및 집행액
2023년		· 대학연계과정	161
		· 콘텐츠 개발 / 교육과정 운영	195
		· 기능개발 / 유지보수	195
		· 클라우드 사용료	66
		합계(A)	617
2024년(B)		· 교육과정 운영	120
		· 유지보수	22
		· 클라우드 사용료	58
		합계(B)	200
차이		(B-A)	△417

(자료: 금융위원회)

□ 핀테크 교육 사업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핀테크 종사자 및 종사 예정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핀에듀 과정과 같은 온라인 교육과정은 이러한 핀테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
에 해당함.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교육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한편, 확보된 예산 하에서 핀에듀 과정의 교육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금세탁방지추진¹⁷⁾: 분담금 납부액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금세탁방지추진”은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국제기구 활동 등 국제협력과 CTR(고액현금거래 보고)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억 8,300만원 중 7억 5,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5%)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자금세탁방지추진	783	-	-	783	756	-	27	846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내역사업에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국제부담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예산에서는 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4,100만원을 전용하여

17) 세부사업: 자금세탁방지추진(1331-303)

예산현액은 5억 9,3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이 중 5억 9,200만원을 집행함.

- 금융위원회가 동 사업을 통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APG), 에그몽그룹(Egmont) 등 총 3개로, 모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함.

〈분담금 납부 국제기구 현황〉

구분	국제기구명	납부기간	주요 역할
FATF	자금세탁방지기구	2009년~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상호평가를 통해 회원국의 기준 이행을 감독
APG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1998년~	· 역내 국가들의 FATF 기준 이행을 점검하고, 후발국들의 기준 이행을 지원
Egmont	에그몽그룹	2002년~	· 각국 FIU간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정보 교환 체계화·활성화 및 비밀 보호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과 2025년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금액 대비 각각 약 4,000만원, 4,800만원이 부족하여,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2024년의 경우에는 국외업무여비에서 2,800만원, 일반수용비 등에서 1,200만원을 각각 전용하여 분담금 부족분으로 활용하였고, 2025년

의 경우에는 국외업무여비에서 3,700만원, 일반수용비 등에서 1,100 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음.

〈분담금 부족분 총당을 위한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전용 감액		전용 증액	
2024년	일반수용비	△2	국제부담금	40
	국외업무여비	△28		
	공공요금 및 제세	△10		
	계	△40	계	40
2025년	상용임금	△6	국제부담금	48
	일반수용비	△6		
	국외업무여비	△36		
	계	△48	계	48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분담금 증가율보다 실제 증가율이 높았고, 실제 납부 시 환율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분담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연도	기관	편성액			집행액			(B-A) (천원)
		원화(A) (천원)	납부화폐 기준	기준 환율	원화(B) (천원)	납부화폐 기준	기준 환율	
2024	FATF	301,024	EUR 211,989	1,420	330,256	EUR 222,123	1,486	△29,232
	APG	226,926	AUD 260,835	870	229,228	AUD 260,835	878	△2,302
	Egmont	25,292	USD 19,455	1,300	32,830	USD 23,754	1,382	△7,538
	소계	552,420			592,313			△39,893
2025	FATF	342,908	EUR 236,000	1,453	385,228	EUR 242,827	1,586	△42,320
	APG	251,834	AUD 286,500	879	259,262	AUD 279,974	920	△7,428
	Egmont	35,880	USD 26,000	1,380	32,817	USD 23,645	1386.5	3,063
	소계	630,388			678,388			△48,000

(자료: 금융위원회)

□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의 실제 규모가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이후에 결정되고 있고, 납부 당시의 환율과 편성 당시의 기준환율의 차이로 인해 분담금의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부족한 분담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계획한 국외출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동 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는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공조를 위해 계획된 후발국 컨설팅 및 현장지도, 상호평가자 교육, 현지실사 등을 위한 예산이나, 2024년의 경우 3,600만원 중 2,800만원, 2025년의 경우 3,600만원 전액이 분담금 납부를 위해 전용되었음.

○ 그 결과 2024년에 계획된 4건의 국외출장 중 1건만 집행되었고, 2025년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전액이 국제부담금으로 전용되어 동 사업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임.

〈2024년도 국외출장 계획 및 실제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국외출장 계획			실제 집행액
	출장목적	출장지역	예산편성액	
2024년	후발국 컨설팅 및 현장지도	파푸아뉴기니	8	미집행
	FATF 상호평가자 교육	프랑스 파리	7	미집행
	FATF 현지실사	프랑스 파리	10	미집행
	FATF 실무회의	프랑스 파리	11	8
2025년	후발국 컨설팅 및 현장지도	필리핀	8	미집행
	FATF 상호평가자 교육	프랑스 파리	12	미집행
	FATF 현지실사	프랑스 파리	11	미집행
	FATF 실무회의	프랑스 파리	6	미집행

(자료: 금융위원회)

□ 위와 같이 국제 분담금 납부 규모가 과소 추계 및 편성됨에 따라 자금
세탁과 관련한 국제 공조를 위한 필수적인 국외출장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정보분석원은 분담금 납부액 추계
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¹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기존 햇살론15 보증을 거절당한 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560억원 전액을 진흥원에 교부하였음.

〈2024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	-	56,000	56,000	-	-	9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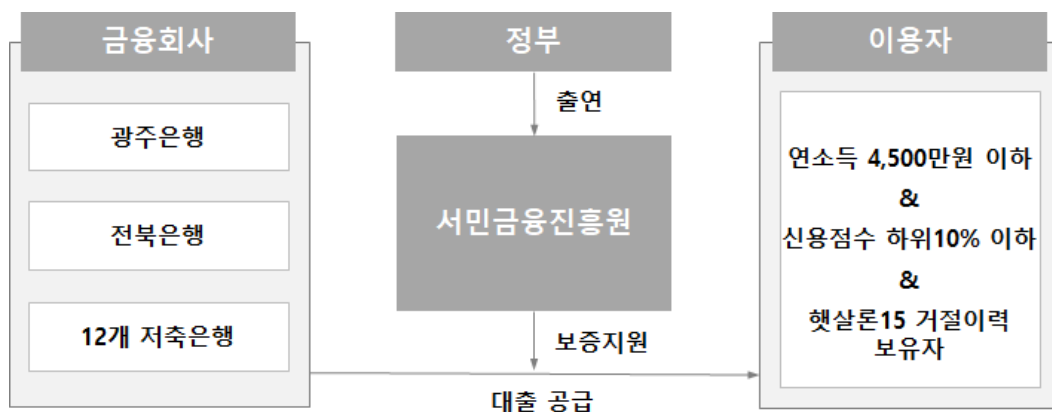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 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이로써 불법 사금융 유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출시하였음.

18)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¹⁹⁾이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중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¹⁵ 보증²⁰⁾이 거절된 자임. 대출한도는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이고,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500만원 한도) 이용자격을 부여하여 최대 총 1,000만원 이내임.
- 대출금리는 최초 15.9%이고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방식인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차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최종금리가 9.8%~9.9% 수준까지 인하되도록 설계되었음.
- 대출을 원하는 최저신용자가 진흥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진흥원 심사 결과 보증이 승인되면, 최저신용자는 이를 근거로 시중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시중은행은 동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함.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집행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19) KCB와 NICE 중 더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

20) 햇살론15 기본 이용요건: ① 신용점수 하위 20%면서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②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인 자

2) 검토의견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최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의 보증²¹⁾을 받아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후 차주에 대한 구상권을 획득함.

○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동 사업의 보증공급 목표는 연간 2,800억원 규모로 설정되었으나, 실제 보증공급 실적은 1,935억원에 그쳐 당초 계획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였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 현황〉

(단위: 억원, 건)

구분	2022년 ¹⁾	2023년	2024년	2025년(7월말)
예산편성액 (집행액)	480 (200 ²⁾)	280 (560 ³⁾)	560 (560)	925 ⁴⁾ (925)
대위변제액	0.1	575	1,039	560
지원건수	34,208	112,009	70,636	55,274
편성 당시 보증공급 목표	600	2,800	2,800	2,800 ⁵⁾
보증공급액	1,002	2,924	1,935	1,968

주1) 2022년 9월 보증 공급 첫 실시

주2) 2022년도 보증공급액이 1,002억원에 불과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 및 준비금 총 200억원만 집행

주3) 본예산 280억원과 2022년 미활용분 280억원을 합산한 총 560억원 집행

주4) 2025년 당초예산 560억원 → 1차 추경 925억원 (365억원 순증)

주5) 2025년 당초목표 1,700억원 → 1차 추경 2,800억원(1,100억원 확대)

(자료: 금융위원회)

21) 보증비율: 100%

○ 동 사업의 예산액은 목표 보증공급액에 사업손실률과 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신청 당시 예상사업손실률 20%를 반영하여 2,800억원을 공급목표로 설정하였으나 급격한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인해 예상사업손실률을 33%로 상향한 결과 보증공급액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임.

〈2024년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 편성 산식〉

[변경 전]

$$560\text{억원(보증재원)} = 2,800\text{억원(보증공급액)} \times 20\%(\text{사업손실률}^{1)}) \times 100\%(\text{보증비율})$$

[변경 후]

$$560\text{억원(보증재원)} = 1,700\text{억원(보증공급액)} \times 33\%(\text{사업손실률}) \times 100\%(\text{보증비율})$$

주1) 사업손실률(예상) = 대위변제율 - 구상채권회수율 - 보증료 수입 + 사업운영비

(자료: 금융위원회)

〈예상사업손실률 산출 근거 변경 내역〉

구 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변경 전	변경 후
① 대위변제율 (+)	40%	53.5%
② 구상채권회수율 (-)	9.6%	11.1%
③ 보증료수입률 (-)	12.8%	12.4%
④ 운영비율 (+)	3.0%	3.0%
⑤ 사업손실률	20.6% ¹⁾	33.0%

① 대위변제금액 / 보증공급액

② 구상채권회수금액 / 보증공급액

③ 조기상환비율, 대위변제율 등을 감안하여 추정

④ 운영비는 공급액의 3%로 추정: 운영비율 1.2% × 5년 × 0.5(평균)

주1) 사업손실률은 약 20.6%로 추정하였으나 출연금 예산 편성 시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고 20%만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지원 대상이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면서 연체 경험 등을 사유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로서,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낮기에 대출 실행 이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해당 차주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다중채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연체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가능성이 높고 구상채권 회수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유사 보증상품 대비 대위변제율이 높고 회수율이 저조한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보증상품별 대위변제 등 현황〉

(단위: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근로자햇살론 ¹⁾ (2016년~)	순대위변제율 ³⁾	10.4	12.1	12.7
	회수율 ⁴⁾	20.9	20.7	22.3
햇살론15(17) ²⁾ (2019년 9월~)	순대위변제율	15.5	21.3	25.5
	회수율	6.6	7.7	9.6
햇살론유스 (2020년 1월~)	순대위변제율	4.8	9.4	12.7
	회수율	5.0	5.3	7.2
햇살론뱅크 (2021년 7월~)	순대위변제율	1.1	8.4	16.8
	회수율	0.5	1.5	3.9
햇살론카드 (2021년 10월~)	순대위변제율	6.1	12.3	17.8
	회수율	2.8	4.7	6.9
최저신용자특례보증 (2022년 9월~)	순대위변제율	0.01	14.5	26.8
	회수율	—	0.7	2.8

주1) 근로자햇살론Ⅱ(2016년~현재 공급)

주2) 국민행복기금 보증 햇살론15(17),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햇살론15 합산

주3) 순대위변제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주4) 회수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동 사업은 보증부 대출 지원 사업으로서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 수혜 제공 사업이 아닌바, 매년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진흥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공급실적 및 대위변제 등〉

(단위: 억 원)

구분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공급목표	600	2,800	2,800
공급실적	1,002	2,924	1,935
누적순대위변제율 ¹⁾	0.01%	14.5%	26.8%

주1) 누적순대위변제율 = (누적대위변제 발생액 - 누적대위변제 회수액) / 누적보증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연도 중 보증공급 목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당초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사업 성과가 창출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보증 심사 신청 시기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리 적용²²⁾될 수도 있는 등 정책수혜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향후 금융위원회와 진흥원은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동 보증 지원 사업의 예산액 산출 근거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한 만큼의 보증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2) 연중 보증잔액이 계획 대비 빠르게 소진될 경우, 보증공급 목표를 축소함에 따라 연도말 보증 신청자에 대하여는 보다 강화된 수준의 상환능력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²³⁾: 진흥원 내 과다한 이월·유보잔액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하여 본인 납입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3,682억 1,100만원 중 560억 5,000만원(15.2%)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으로 내역변경²⁴⁾하고 남은 예산현액 3,121억 6,100만원 전액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8,211	-	△56,050	312,161	312,120	40	1	347,015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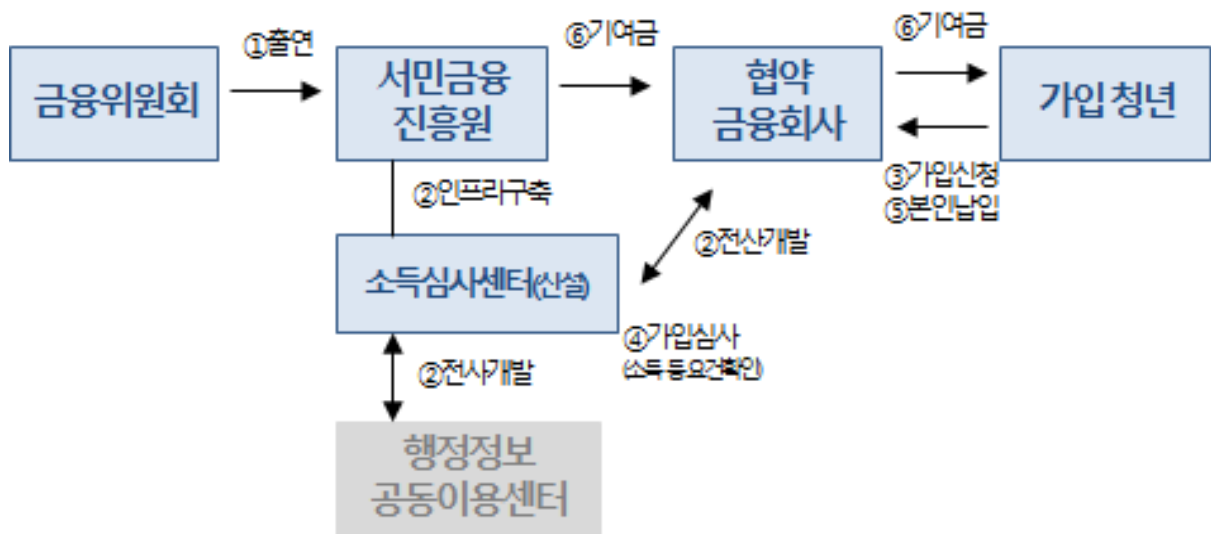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상품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납입금을 납입(월 70만원 한도)하면,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더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연을 받은 진흥원이 매월 본인 납입액의 3.0%~6.0%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23)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24) 청년희망적금 사업(2024년도 종료사업)의 저축장려금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청년도약계좌 사업 총 예산현액의 15.2%에 해당하는 560억 5,000만원을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으로 내역변경함.

- 동 상품의 기본구조는 ①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② 협약은행²⁵⁾ 중 한 곳에서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③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가입자의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납입액의 3.0%~6.0%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매칭 지급하고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²⁶⁾을 제공하는 것임.

〈청년도약계좌 사업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25)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11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26)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024년¹⁾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총급여	종합소득	매칭 한도	매칭비율	지급 한도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		

주1)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소득과 무관하게 매칭한도를 70만원(납입한도)까지 상향하여 추가한도에 대하여는 3.0%의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급함 - (예)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한도 30만원에 대한 정부기여금(3%)인 9천원을 추가로 매칭 지급(→최대 지급한도 33,000원)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동 상품은 만기가 5년으로, 만기 도래 전 중도해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미적용하고 既지급된 정부기여금을 환수²⁷⁾하게 되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등의 특정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보아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대상이 됨.

-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기(5년) 도래 이전이고 별도의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계좌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정부기여금을 일부(60%)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음.

□ 참고로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2022년 2월 출시되어 2024년 초 종료된 청년희망적금 사업과 사업목적 및 사업방식 등에 있어 유사성이 있으며, 소득기준, 기여금 매칭비율, 만기, 월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방식 등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음.

27) 정부기여금은 진흥원 출연예산으로 매월 협약은행 계좌에 매칭 지급되기는 하나,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전까지는 해당 금액을 이용자가 인출(현금화)할 수 없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없음	중위소득 250% 이하			
기여금		1년차 2% 2년차 4%	개인소득		산출식	기여금
			총급여	종합소득	(매칭한도×비율)	한도
			2,400만	1,600만	월40만원×6.0%	2.4만원
			3,600만	2,600만	월50만원×4.6%	2.3만원
			4,800만	3,600만	월60만원×3.7%	2.2만원
			6,000만	4,800만	월70만원×3.0%	2.1만원
			7,500만	6,300만	기여금×, 비과세만	
특징	만기	2년	5년			
	납입한도	월 50만원	월 70만원			
	기여금 지급	만기 시	매월			

주: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2024. 8. 29.)에 따라 2025년부터는 기존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7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3.0% 기여금 추가 지급 중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사업시행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인프라 구축비용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비용을 출연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출연금으로 전산시스템 운영, 민원상담 용역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약은행을 통하여 매월 가입자에게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또한 진흥원에 출연되는 출연금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등 청년도약계좌 운영비용 5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운영협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

2) 검토의견

-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내역사업 ‘기여금 지원’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용자가 매월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매칭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진흥원이 이를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됨.
- 구체적으로, 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이 매월 이용자의 본인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을 해당 은행의 계좌²⁸⁾에 입금한 후 이를 매월 정산하여 진흥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
- 그런데 2024년도 기여금 지원 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총 3,029억 9,300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진흥원에 교부하였고²⁹⁾, 진흥원은 전년도 이월액 3,008억 1,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 6,038억 900만원 중 2,843억 2,900만원을 협약은행에 지급하였는바,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7.1%에 불과함.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사유로, 2023~2024년 고금리 상황의 지속 등에 따라 시중 일반적금상품 금리가 오르면서 예산 편성 시 가입 목표에 비해 가입자 수가 충분히 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28)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를 위한 별도 개인계좌 개설

29) 1차: 19,336백만원('24.2.6.) / 2차: 58,000백만원('24.2.28.) / 3차: 138,000백만원('24.3.29.) / 4차: 52,000백만원('24.7.1.) / 5차: 33,000백만원('24.8.8.) / 6차: 1,650백만원('24.10.18.) / 7차: 1,007백만원('24.11.27.)

〈2023회계연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내역사업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서민금융진흥원	
				실집행액	실집행잔액 (진흥원 유보금)
출연	기여금 지원	344,037	344,037 (100%)	43,221 (12.6%)	300,816 (87.4%)
	인프라 구축	23,610	23,610 (100%)	21,059 (89.2%)	2,551 (10.8%)
직접 수행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154 (100%)	147 (95.5%)	-	-
합계		367,801	367,794 (100%)	64,427 (17.5%)	303,367 (82.5%)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2024회계연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내역사업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내역변경 (창년화명적금)	집행액 (교부액)	서민금융진흥원		
					이월액 포함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잔액 (진흥원 유보금)
출연	기여금 지원	359,043	△56,050	302,993	603,809 (이월액: 300,816) (100%)	284,329 (47.1%)	319,480 (52.9%)
	인프라 구축	8,664 (100%)	-	8,664	9,924 (이월액: 1,260) (100%)	9,181 (92.5%)	743 (7.5%)
직접 수행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504 (100%)	-	463 (91.9%)	-	-	-
합계		368,211	△56,050	312,120	613,733 (100%)	293,510 (47.8%)	320,223 (52.2%)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진흥원은 2023년도 기여금 지원 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 중 집행되지 못한 잔액(3,008억 1,600만원)만큼을 이월하여 진흥원 내 계정에 유보하고 있었는데, 2024년도 실집행액(2,843억 2,9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3,008억 1,60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는바 2024년에 금융위원회가 진흥원에 별도로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진흥원 내부에 유보된 이월액만으로 2024년도 정부기여금 소요를 전부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7회에 걸쳐 진흥원에 총 3,029억 9,300만원의 출연금을 교부하였는바, 진흥원 내 이월·유보 잔액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출연금을 집행함에 따라 진흥원 내 3,000억원대 규모의 잔액이 유보된 상태가 지속되어 재정운용 및 국고금관리상의 비효율을 야기하였음.

〈2024년도 기여금 지원 사업 출연금 교부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교부	-	77,336	138,000	-	-	-	52,000	33,000	-	1,650	1,007	-	302,993
집행	8,690	44,819	62,467	29,172	18,123	16,201	17,081	17,294	17,646	18,231	17,554	17,051	284,329
잔액	292,126 ¹⁾	324,643	400,176	371,004	352,880	336,679	371,598	387,304	369,659	353,078	336,530	319,479	319,479

주1) 이월금액(300,815백만원)에서 집행 후 잔액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고자금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월별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 집행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나,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출연금의 일괄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관련 내용〉

1-7. 국고금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고자금 집행지침 준수

-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자금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금배정 및 지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내에서 자금 지출순기에 맞게 자금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월별로 과다하게 신청하거나 지출시기와 상관없이 월초에 집중하여 자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한다.

〈「국고자금 집행지침」 중 관련 내용〉

1. 국고자금 배정 요구 기준

- 1-1 (월별 자금배정 요구의 원칙)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별 특성, 월별 집행 소요, 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자금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1-1-1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전예측이 가능한 자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1-1-2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소요 보다 과다하게 자금을 신청하거나 불가능한 사업 또는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1-3 중앙관서의 장은 월중 자금의 지출시기와 관계없이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자금배정을 요구해서는 아니되며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월초에 집중하여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고자금의 경비별 지출기준

3-6 (출연금)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지출되지 않고 출연기관 주거래 은행에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6-1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금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 D-Brain시스템을 통해 최종 수요자에게 지출한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3-6-2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금 지출실적을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출연하여야 한다.

3-6-3 기관운영 경비성 출연금은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 출연금은 최종 수요자에게 지급하는 시기에 맞추어 분할하여 교부해야 한다.

□ 한편, 진흥원 내규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출연금 관리규정」³⁰⁾은 출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하는 해의 다음 연도 내에 정산하여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잔액을 미리 반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출연사업 종료연도 이전에 집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출연금 교부액의 미집행잔액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사업이 종료된 차년도에 출연금 집행잔액을 정산·반납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2023년도~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과 같이 교부액 대비 미집행잔액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에는 국고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차원에서 해당 잔액을 사업 종료연도 이전에 국고에 반납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30) 「자산형성 지원사업 출연금 관리규정」(서민금융진흥원내규, 2024. 12. 13. 제정) 제7조(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① 사업부서는 출연사업의 출연금 환수액, 이자 등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해당사업의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② 사업부서는 출연사업이 종료하는 해의 다음 연도 내에 환수액, 이자 등의 수입을 고려한 최종 집행잔액을 정산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국고에 반납한다. 다만, 출연사업이 종료하는 해의 다음 연도 내에 집행잔액의 정산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반납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미리 반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출연사업이 종료하는 해 이전에 집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반납할 수 있다.

○ 참고로, 2025년도에는 기여금 지원 예산 3,368억원 중 6월말 기준 총 1,761억원을 집행하였는데³¹⁾, 연말까지 그 두 배인 3,522억원을 집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4년도말 진흥원 유보잔액인 3,195억원에 더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이 327억원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2025년도에도 대규모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임.

□ 나아가, 이러한 출연금 과다 교부 또는 미정산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 예산안 편성 시 연간 집행소요를 면밀하게 산출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위원회와 진흥원은 향후 동 사업의 이월·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진흥원 내 과다한 이월·유보잔액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청년도약계좌 사업 및 청년희망적금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또는 출연규모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관련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³²⁾, 최근 정부기여금 지급 등 기본적인 상품구조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미래적금” 상품의 신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바, 신규 사업 추진 시 정부기여금 지원 방식 및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1) 금융위원회는 7월말 기준 총 5회에 걸쳐 기여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총 1,745억 4,900만원을 교부하였음(그 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출연금 97억 700만원 교부).

32) 정부위 검토보고(2022년도·2024년도·2025년도 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예결특위 검토보고(2023~2025년도 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2022년도·2024년도·2025년도 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5.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³³⁾: 실적이 부진한 내역사업 추진 재검토 및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 집행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관계인에게 채무자대리인(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2억 5,500만원 중 6억 2,800만원을 집행(집행률: 50%)하고, 6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55	-	-	1,255	628	-	627	1,205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크게 ①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채무자(본인 또는 관계인)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거나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대리인 선임” 사업과 ②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 수행을 위한 “부수사건 소송대리” 사업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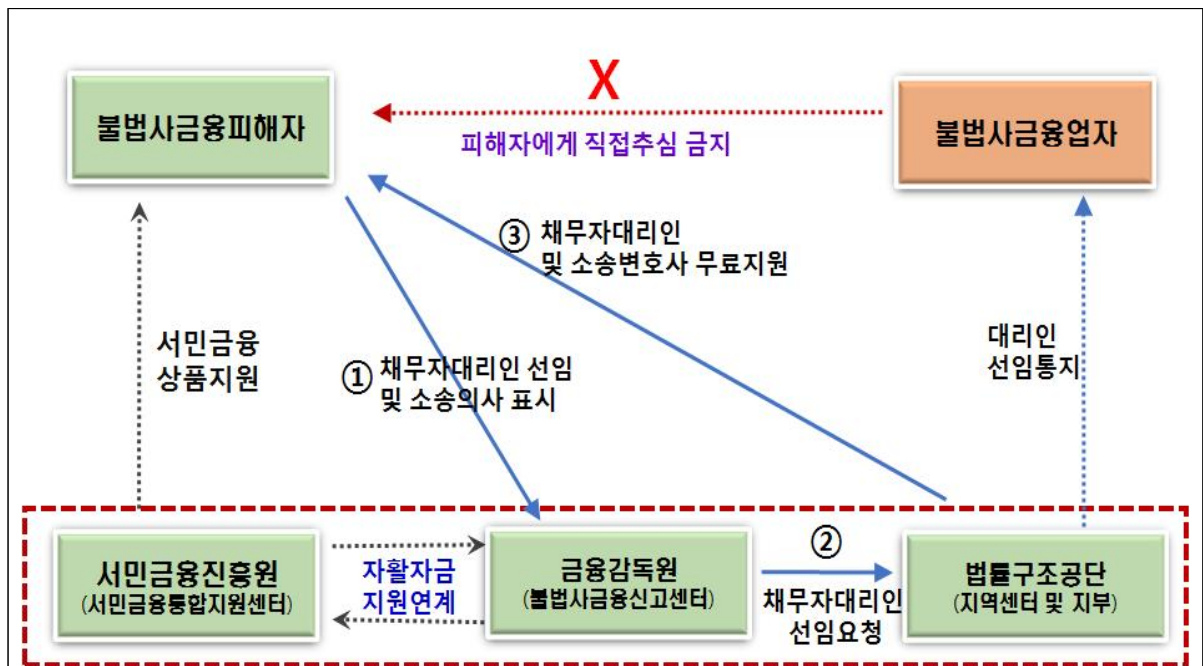
33) 세부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³⁴⁾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도에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등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2020년부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2024년 7월부터는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3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리인 선임” 사업과 함께,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는 “부수사건 소송대리”도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해오고 있음.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면,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소요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 검토의견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채무자 및 관계인의 불법추심 등 피해 예방·구제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8억 8,600만원) 대비 총 3억 6,900만원(+41.6%)이 증액된 예산액 총 1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예산현액의 50%인 6억 2,800만원만을 공단에 교부하였고, 공단은 교부받은 금액 중 5억 7,199만원만을 실제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에 집행한바, 2024년도 동 사업의 실효행률은 45.5% 수준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604	604	-	-	604	604 [604]	100.0	100.0	-	-
2022	1,144	1,144	-	-	1,144	1,144 [1,144]	100.0	100.0	-	-
2023	886	886	-	-	886	886 [886]	100.0	100.0	-	-
2024	1,255	1,255	-	-	1,255	628 [571]	50.0	50.0	-	627
2025 (7월 말)	1,205	1,559	-	-	1,559	1054 [908]	67.6	58.2	정산 전	정산 전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동 사업의 경우 2021년도 이후 2024년도까지 대리인 선임 및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지원실적〉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7월말기준)
신청건수(a)	1,252	5,657	5,225	3,760	3,489	5,946
지원건수 ¹⁾ (b)	919	4,841	4,510	3,249	3,096	5,241
지원비율(b/a)	73.4	85.6	86.3	86.4	88.7	88.1

주1) 대리인 선임 및 부수사건 소송대리 건수 합산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① 불법추심의 양상 다변화 등으로 인한 신청요건 불비 문제³⁵⁾, ② 신청창구 부족, 전담인력 미비 등 행정적 요인 ③ 홍보예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화번호 특정이 어렵더라도 SNS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³⁶⁾, 신청창구를 확대하고 금융감독원 내 전담직원을 충원 하였으며³⁷⁾,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25년도 상반기부터는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음.

35) 기존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기 위하여는 선임 사실 통지를 위하여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건화하고 있었으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본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추심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해 신청요건 불비로 접수가 취하되는 사례가 많았음.

※ 접수 후 취하 건수(금감원, 건): (2021년) 619 → (2022년) 962 → (2023년) 1,324 → (2024년) 2,677

36) 2024년 11월

37) (창구 확대) 기존에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유선·인터넷·방문접수)하였으나, 이를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사이트(2024년 12월 개설),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2026년 1월 개설 예정)까지 확대함.

(인력 충원) 금융감독원 내 전담직원 충원(1명→3명, 2025년 5월)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사업내용을 변경³⁸⁾하여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에 대하여도 대리인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배분을 조정하고, 2024년 7월부터 관계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 사업을 수행하였음.

○ 이는 최근 SNS·인터넷을 활용하여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연체 시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사금융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마련된 것임.

〈2024년도 사업 산출내역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물량	단가	사업비	구분	물량	단가	사업비
채무자대리인 변호사보수	5,965건	208,000원	1,241	채무자대리인 변호사보수	4,430건	208,000원	922
				채무자의 관계인지원 변호사보수 (신설)	4,560명	70,000원	319
부수사건 소송대리	28건	497,000원 (평균비용)	14	부수사건 소송대리	28건	497,000원 (평균비용)	14
				합계	합계		1,241

(자료: 금융위원회)

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런데 2024년도 동 사업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관계인에 대한 지원 실적이 연간 총 10건에 불과해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024년도 내역사업별 지원 실적〉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채무자(본인) 대리인선임	120	127	150	455	162	261	348	154	150	278	271	448	2,924
부수사건 소송대리	-	2	3	-	2	-	-	2	8	61	81	3	162
채무자관계인 대리인선임	-	-	-	-	-	-	-	-	3	2	5	-	10
합계	120	129	153	455	164	261	348	156	161	341	357	451	3,096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관계인 지원을 위해서는 채무당사자가 불법추심 피해 사실을 가족·지인 등에게 알려야 하는데 채무당사자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관계인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 시행 초기 단계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2024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단계에서부터 관계인 지원도 가능한 점을 안내하고, 동 사업 홍보 시 관계인 지원 내용도 계속 강조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2025년도에도 채무자 관계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 실적은 7월말 기준 3건으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며,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채무자(본인) 대리인 선임 예산을 증액 요청하면서 관계인 지원 예산의 경우 2025년도 신청건수가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본인 대리인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음.

〈2025년도 내역사업별 지원 실적〉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채무자(본인) 대리인선임	463	442	412	736	902	896	1,344	5,195
부수사건 소송대리	-	42	-	-	1	-	-	43
채무자관계인 대리인선임	3	-	-	-	-	-	-	3
합계	466	484	412	736	903	896	1,344	5,241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산출근거 비교〉

구 분		산출근거	
		본 예산(1,205백만원)	제2회 추경(1,559백만원) (+354백만원)
대리인 선임	본인	772백만원=3,711건*×208천원** * 연평균 신청건수 ** 변호사보수(200천원)+송달료(8천원)	1,126백만원=5,411건×208천원 <u><1,700건 추가 지원></u>
	관계인	319백만원=4,560건*×70천원** * 연평균 지원인원(950명)×채무자 1인당 관계인 4.8명 추정 ** 파산·회생 관련 보전사건 등 변호사보수 최저단가	
부수사건 소송대리		14백만원=28건*×497천원** * 연평균 구조건수 ** 연평균 구조단가	
홍보비		100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채무자 본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2024년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예산액 대비 45.5%에 그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바 있고, 최근 몇 년간 전체 지원실적이 감소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4년도 신설된 내역사업인 ‘채무자 관계인 대리인 선임’ 집행은 사업 출시 이래로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임.

○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³⁹⁾에 따라 관련 법률적 분쟁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사업을 통한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이 반복적으로 편성 당시의 내역사업별 산출근거과 달리 운영·집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고 필요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9)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

6.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⁴⁰⁾: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⁴¹⁾ 및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와 민간,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펀드를 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000억원은 전액 산업은행에 출자되었음.

〈 2024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	-	100,000	100,000	-	-	100,000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2023년 7월 발표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2024년~2028년)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⁴²⁾과 한국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을 모

40)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41) 지방자치단체 공동기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의미함.

42)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낙후지역 등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펀드에 출자하고 있음.

□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구조를 살펴보면,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하되⁴³⁾,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성된 자펀드는 광역시 또는 도의 지역개발 프로젝트⁴⁴⁾에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투자(출자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때,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시행사, 건설사 등) 및 금융기관 등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설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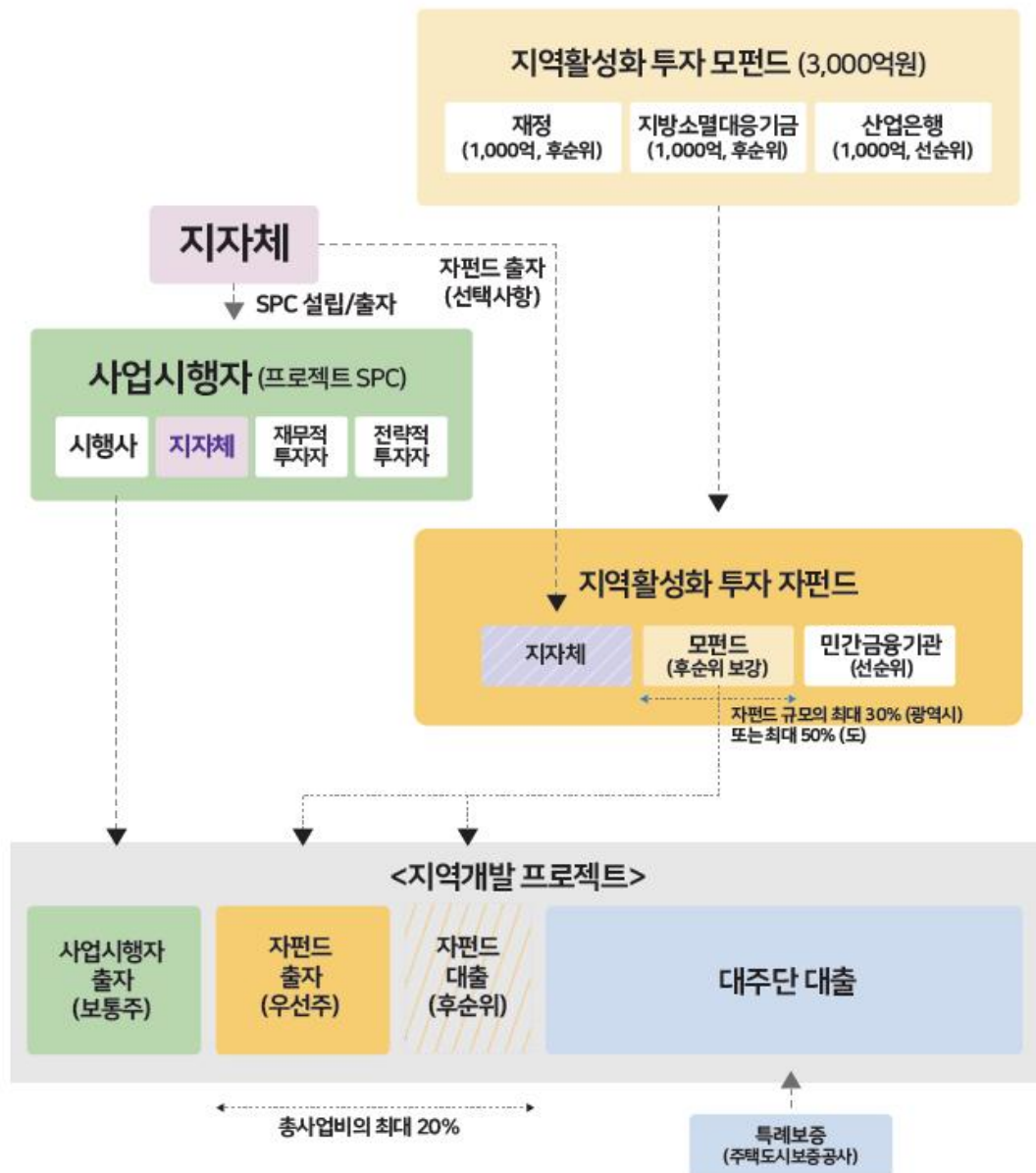
○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SPC의 출자금과 자펀드 투자금(출자,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PF 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례 보증을 제공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신설된 기금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됨.

43)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음(「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44) 펀드의 취지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 조치 주요내용」)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구조도〉



(자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종합안내, 기획재정부)

- 사업 첫해인 2024년에는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한국산업은행 자체 자금 각 1,000억씩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최소 6,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역개발프로젝트에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음⁴⁵⁾.

45) 각 자펀드가 도(道)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비의 20%를 투자한 경우

2) 검토의견

(1)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2024년 동 사업을 통해 아래와 같이 5개의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음. 선정된 프로젝트의 자펀드에 대한 모펀드 약정액은 약 2,500억원 수준으로, 당초 계획액 3,000억원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선정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개요 >

지역개발 프로젝트명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충남글로벌 홀티콤플렉스 ^{주1)}
위치	단양군 단양읍	경북 구미시 공단동 일원	전남 여수 묘도	경북 경주	충남 서산
참여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구미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투자기간	'25년~'27년	'25년~'28년	'24년~'28년	'25년~'28년	'25년~'25년
프로젝트 내용	단양역 역세권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호텔 및 어 드벤처 시설 개 발)	노후화된 구미 1 국가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임직원 등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건립	연간 300만톤 규 모의 LNG를 여 수·광양 국가산단 에 공급하기 위 한 접안시설, LNG 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 구축	국내 최대 107.9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 전소 건설 및 운 영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 및 농업용 복합단지 건설
총사업비	1,133억원 →680억원	1,239억원 →925억원 →876억원	1조 4,362억원	7,716억원	1,300억원
모펀드 약정액	68억원	39억원	1,435억 5,500만원	771억 5,700만원	130억원
선정일	1차 2024. 2. 2차 2024. 11.	1차 2024. 2. 2차 2024. 11. 3차 2025. 1.	2024. 8.	2024. 11.	2024. 12.

주1) 서산 프로젝트는 자펀드 운용사의 내부사정으로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20'25년 3분기 중 재심사 추진 중이며, 상기 표의 내용은 2024년 12월말 기준 제안 철회 이전 현황으로, 총사업비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재심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그러나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연도 내 자펀드 결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각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① 2024년 2월,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사업(이하 ‘단양’)’의 자펀드는 2024년 12월이 자펀드 결성 최종 기한⁴⁶⁾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급등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 규모를 1,133억원에서 68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모펀드 운용사(한국성장금융)가 변경된 내용으로 2024년 11월 26일 해당 자펀드를 재선정함.

- 재선정된 자펀드는 최초 펀드 결성기한(3월말) 및 1차 연장기한(6월말)을 도과하여 2025년 7월말까지 결성되지 못한 상황으로, 자펀드 결성 최종 기한은 2025년 9월 29일임.

○ ② ‘구미 국가산단구조고도화 사업(이하 ‘구미’)’의 자펀드도 2024년 12월이 자펀드 결성 최종 기한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주거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을 2차례 변경함에 따라 모펀드 운용사가 변경된 내용으로 2024년 11월 26일과 2025년 1월 23일 해당 자펀드를 두 차례 재선정함.

- 재선정된 자펀드는 결성기한(5월말)을 도과하여 2025년 7월말까지

46) 펀드 결성기한은 원칙적으로 최종 선정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총 10개월)이 가능함. 기한 내 결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자펀드는 미결성된 것으로 하여 자펀드 결성이 취소될 수 있음.

조성되지 못한 상황으로, 자펀드 결성 최종 기한은 2025년 11월 24일임.

- ③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이하 ‘여수’)’의 자펀드는 2024년에 선정된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2025년 2월 28일 결성이 완료되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자펀드 투자가 집행되고 있음.
- ④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이하 ‘경주’)’의 자펀드는 최초 펀드 결성기한(3월말) 및 1차 연장기한(6월말)을 도과하여 최종 결성기한(9월 29일)을 앞두고 있음.
- 2025년 12월 24일 선정된 ⑤ ‘충남글로벌 홀티콤플렉스(이하 ‘서산’)’의 자펀드는 자펀드 운용사가 사업 제안을 철회한 상황임⁴⁷⁾.

〈 자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 경과 〉

자펀드명	(①단양) 코레이트 충북단양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②구미) 코람코 일반사모 투자신탁제153호	(③여수) 신한 동북아 LNG허브터미널 일반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1호	(④경주) NH-Amundi 강동그린에너지 일반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⑤서산) 하나대체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000호*
자펀드 선정일	(1차) '24. 2. 16 (2차) '24. 11. 26	(1차) '24. 2. 22 (2차) '24. 11. 26 (3차) '25. 1. 23	'24. 8. 29	'24.11.26	'24.12.24
자펀드 결성일	-	-	'25. 2. 28	-	-
자펀드 결성 최종 기한	(1차)~'24.12.19 (2차)~'25.9.29	(1차)~'24.12.24 (2차)~'25.9.29 (3차)~'25.11.24	~'25. 7. 2	~'25.9.29	-
프로젝트 착공일	-	-	'24. 10. 3	-	-
투자액 (2024. 12월 기준)	0	0	0 ('25.5 기준 25억원)	0	0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47)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펀드 운용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 이와 같이 자펀드 결성이 부진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재정모펀드계정에 과도한 유보금이 발생하였으며,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도 자펀드에 대한 투자 성과가 없어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납입된 재원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 2024년도 재정 투입분(①) 1,000억원은 2024년 4월(400억원)과 7월(600억원)에 각각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되었고⁴⁸⁾, 한국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산업은행 자체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재정모펀드계정(②)에 보유하고 있음. 한국산업은행은 2024년 해당 계정에서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③)에 2차례(2024년 8월 및 9월)에 걸쳐 총 28억원 출자하였음.

〈 재원 흐름 (2024.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①정부재정	②산업은행 모펀드계정	③지역활성화 투자모펀드	④각 자펀드
투입액	100,000	100,000	2,800	0
잔액(연도말)	0	97,200	2,800 ^{주1)}	0

주1) 모펀드 운영비용 및 이자발생액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에 따라 2025년 6월말까지도 2024년 재정출자금 1,000억원 중 28억원만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된 상황이며, 나머지 972억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재정모펀드계정에 유보⁴⁹⁾되어 있음.

48) 2025년도 예산은 2025년 6월(400억원)과 7월(100억원)에 정부에서 산업은행으로 출자되었음.

49)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2025년도 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도 추가로 보유하고 있음.

○ 또한,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에서 자펀드로 투자된 금액은 없으며⁵⁰⁾, 모펀드 운용사는 약 84억원⁵¹⁾을 미투자자산으로 운용⁵²⁾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2024년 동 사업 예산에서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 운용비용을 제외한 부분이 전혀 집행되지 않아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음.

□ 새로운 방식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첫해이고, 모펀드 조성 및 프로젝트 선정, 자펀드 결성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의 집행 부진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 그러나 선정된 프로젝트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1차 결성 기한(4개월) 내에 자펀드를 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펀드가 최종 결성기한(10개월)까지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최종 결성기한에도 자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프로젝트 선정 시

50) 이에 따라 2024년말 기준, 자펀드의 투자금 집행실적은 없으며, 2025년 5월말 기준으로도, 여수 자펀드만 2억 5,000만원 규모의 자펀드 대출만을 실행하여, 사업 첫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투자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51) <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 재원 납입 내역 >

(단위: 백만원)

납입시기	합 계	재정	산은 자체출자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 8.	150	50	50	50
2024. 9.	8,250	2,750	2,750	2,750
합계	8,400	2,800	2,800	2,800

52) 금융기관에 예치(이자율 2.53%)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한국산업은행 재정모펀드 유보금으로 남았으며, 실제 프로젝트 투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을 위해 향후 지역개발 프로젝트 선정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성과계획

□ 동 사업은 자펀드 조성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2024년과 2025년 각 7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의 자펀드 조성실적은 3,086억원으로, 411.5%의 달성도를 보이는 것으로 제출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성과지표 및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펀드 조성실적 (단위: 억원)	목표	-	-	-	750	750	모펀드의 자펀드 앞 출자비율, 펀드 결성기간 등 감안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 펀드 결성금액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주) 제출자료
	실적	-	-	-	3,086	-			
	달성도	-	-	-	411.5	-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 금융위원회는 모펀드의 투자기간이 2년이고, 매년 최초 자펀드 선정 가능 시점과 펀드 결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각 년도 예산

으로는 매년 4분기부터 자펀드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 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3,000억원의 모펀드로 조성할 수 있는 자펀드의 최소 규모가 2년(8분기)⁵³⁾간 6,000억원(도 프로젝트 기준)이므로, 매분기 750억원의 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4분기 조성가능금액 750억원을 목표로 설정함.

- 매년 성과 측정대상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에 조성된 모펀드로 연도 내에 조성할 수 있는 자펀드 규모를 설정한 것임

- 그러나 이와같이 성과목표를 설정할 경우, 동 사업의 성과는 매년 4분기의 자펀드 조성실적만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모펀드의 투자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여 펀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사업의 2차년도부터는 1차년도에 조성되는 모펀드의 자펀드 조성 가능금액을 합산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2025년 성과목표는 3,750억원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53) 모펀드의 투자집행 기간이 2년임.

- 한편, 동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것과 달리, 동 사업의 자펀드 조성 실적은 3,086억원으로 기록되어 성과목표(750억원)을 크게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2024년말 기준으로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지 않은 단양(136억원), 구미(78억원), 여수(2,872억원)의 자펀드 결성 ‘예상’ 규모를 합산하여 성과를 산출함에 따른 것임.
- 즉, 동 사업은 연도내 발생한 실적이 아닌 향후 기대치에 기반하여 성과를 산출함에 따라 동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7.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⁵⁴⁾:
저조한 사업 실적을 고려해 국가 재정 출자 속도를 조절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부실(우려)차주⁵⁵⁾ 관련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3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추경	이전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00	330,000	-	330,000	330,000	-	-	500,000	1,200,000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22년 제2회 추경안을 통해 신규 편성된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새출발기금’을 신설하였음.

54)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55)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대상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1개 이상의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채무자를 말하며, “부실우려차주”는 단기(3개월 미만) 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말함.

□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은 두 가지인데, ①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매입형’(원금 감면) 방식을, ② 부실차주의 담보채무 및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보증·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중개형’(금리 인하) 방식을 적용함.

‘매입형’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새출발기금이 협약가입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⁵⁶⁾을 매입한 후 동 기금이 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순부채를 감면해주는 방식임.

‘중개형’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금리 인하 등 채무조정을 약정하는 방식인데,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 참여하게 됨.

□ 2025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 현황을 보면, 총 약정 체결 채무액은 6조 5,061억원인데,

매입형의 경우 원금의 평균 70%, 이자의 100%가 감면되었으며, 중개형의 경우에는 평균 4.8%p의 금리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남.

56)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이며, ①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과 ②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불가. 단,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총 채무 30% 이하의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 및 채무조정 약정 현황〉

(2025. 6. 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신청		약정체결		
	신청자	채무액	약정자	채무액	평균 감면율
매입형 (원금감면 방식)	136,915	220,875	37,950	33,988	70%(원금) 100%(이자)
중개형 (금리인하 방식)			41,619	31,073	4.8%p(금리)
합 계			79,569	65,061	-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저조한 사업 실적을 고려해 국가 재정 출자 속도를 조절할 필요

- ☐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운영을 위해 부실(우려) 채권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주된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되, 채권매입 소요 재원 중 예상되는 손실분만큼은 국가 재정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 ☐ 그런데, 새출발기금의 사업계획이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변경됨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분도 이에 연동하여 변화하고 있음.

〈새출발기금 사업계획 변경 현황〉

	종전	2024년 9월 계획변경	2025년 3월 계획변경	2025년 7월 추경
지원 대상	2020. 4.-2023. 11.	2020. 4.-2024. 6.	2020. 4.-2024. 11.	2020. 4.-2025. 6.
	위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5. 10.까지	2026. 12.까지		
채무 감면	순부채의 60~80%, (취약계층은 90%까지)	취업·재창업 교육이수 시 최대 10%p상향		저소득층(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은 90% 일괄 감면
대상 채무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로서 최대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			
제외 채무	영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및 대한 대출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대한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단, 부실차주의 총 채무 30%이하 신 규대출은 가능	단, 모든 차주의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만기 연장	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는 3년), 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는 20년)			저소득층은 최대 20년 분할상환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자원 계획 변화〉

구 분	종전	2024년 9월 계획변경	2025년 7월 추경
부실채권 매입규모	30조원	33.4조원	
채권매입 기한	2025. 10.까지	2026. 12.까지	
채권매입 소 요자원	18조원 = 30조원×60%(매입가율)	13.6조원 = 33.4조원×40.7%(매입가율)	
국가재정 부담분(출자)	3.6조원 = 18조원×20%(손실률)	4.01조원 = 13.6조원×29.5%(손실률)	4.48조원 = 13.6조원×33%(손실률)
공사 부담분(공사채)	14.4조원 = 18조원-정부출자금	9.59조원 = 13.6조원-정부출자금	9.12조원 = 13.6조원-정부출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새출발기금 신설 시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
까지 최대 3년간 총 30조원의 채권매입을 계획하고, 채권 매입가율
60%를 적용하여 18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 총 소요재원 18조원 중 14조 4,000억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예상 손실률 20%를 적용하여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3조 6,000억원은 정부가 자본금 출자를
통해 보충하는 계획을 세웠음.
- 그러나, 2024년 9월, 금융위원회는 신정기한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채권 매입 목표를 종전 30조원에서 33.4조원으로 늘렸으
며, 사업 손실률 현실화를 위해 종전 손실률 20%를 29.5%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분은 종전 3.6조원에서
4.01조원으로 증가하였음.
-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자영
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출발
기금제도 개선사항⁵⁷⁾이 발표됨에 따라 새출발기금 사업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가 재정 부담분은 다시 한번 증가하여 총
4.48조원을 부담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음.

57) ① 90% 원금감면 대상 확대(취약계층 → 취약계층·저소득층)

② 지원대상 사업기간 연장(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 그런데, 2025년 6월 기준 채권매입 재원 투입 현황을 보면, 국가 재정 부담분은 계획액 4.48조원 중 2.21조원이 투입되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0.7조원까지 포함하면 2025년 말까지 총 2.91조원의 출자가 이루어져 계획대비 65%의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담분은 계획액 9.12조원 중 2025년 6월 기준 총 2.86조원이 집행되어 계획대비 31.4%만 투입된 상황임.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재원 조달 계획 및 실적〉

(2025. 6.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		실 적						계획대비 실적
	부담액	비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비율	
국가재정 (출자)	44,800	32.9	11,000*	2,800	3,300	12,000	29,100	50.4	65.0
공사 (공사채)	91,200	67.1	-	3,600	15,600	9,400	28,600	49.6	31.4
합 계	136,000	100	11,000	6,400	18,900	21,400	57,700	100	42.4

* 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또한,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을 살펴보면, 총 51개월 동안 신청을 받아 총 33.4조원의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시작 이후 33개월이 경과한 2025년 6월 기준 총 10.4조원의 매입 실적을 보여, 계획 대비 실적은 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

(2025. 6.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채권액	채권매입액 ⁵⁸⁾
계획 (2022. 10. ~ 2026. 12. 총 51개월)	334,000	136,000
실적 (2022. 10. ~ 2025. 6. 총 33개월)	103,861	45,953
계획 대비 실적	31.1	33.8

(자료: 금융위원회)

□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실(우려)채권 매입 실적은 계획 대비 31.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은 계획 대비 65%를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한 것으로서, 사업 진행 속도에 비해 국가 재정 투입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임.

또한, 금융위원회는 총 51개월 동안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한다는 계획인데, 총 사업기간의 약 3분의 2가 경과한 2025년 6월 시점의 계획 대비 실적이 31.1%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업기간 내에 당초 계획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사업 진행 속도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재정의 출자를 늘릴 경우 국가 재정이 동 사업에 장기간 유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한정된 국가 재정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국가 재정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실적 등을 고려해 그 출자 속도를 조절하여야 할 것임.

⁵⁸⁾ 부실(우려)채권에 매입가율을 적용하여 실제 채권을 매입한 가격을 말함.

(2) 채권금융회사의 중개형 채무조정 동의율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채무조정 방식 중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에 적용하는 ‘매입형’(원금 감면)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새출발기금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동 기금이 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금(순부채)을 감면해주는 방식임.
- 이에 비해, 부실차주의 담보채무 및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보증·담보채무에 대해 적용하는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금리 인하를 약정하는 방식인데, 만약, 채권금융회사가 이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 참여하게 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 비교〉

구분	매입형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대상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부실차주(담보채권),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채권)
채무조정 범위	원금 및 이자 감면	이자만 감면(금리 인하방식)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이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 단,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권자로서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

- 즉,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재정의 투입 역시 불필요해지는 것임.

□ 그런데, 2025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채권매입액 4조 5,953억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매입액은 2조 175억원(43.9%)인데 비해 중개형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매입액은 2조 5,778억원(56.1%)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개형 채무조정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현황〉

(2025. 6. 기준, 단위: 명, 억원, %)

구분	매입채권			
	채무자수	채권액	매입액	비율
합 계	122,651	103,861	45,953	100
매입형 (원금 감면방식)	78,513	70,074	20,175	43.9
중개형 (금리 인하방식)	44,138	33,787	25,778	56.1

※ 중개형 약정 체결 후, 실효된 차주는 원금감면방식, 금리인하방식에 중복(단, 채권액은 인수시점 기준 차주 성격 반영)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중개형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액 규모가 크다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중개형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부실(우려)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⁵⁹⁾의 부담 중 상당 부분이 국가 재정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59) 새출발기금과 채권금융회사 간에 채권 양수도계약이 이루어지면 새출발기금은 계약체결일 당일에 현금으로 채권매입 대금 전액을 채권금융회사에 지급하므로, 채권금융회사는 부실채권 관리부담 감소 및 현금확보를 통한 유동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음.

- 실제로, 2025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계좌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율은 3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새출발기금 신청 계좌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현황 〉

2022. 10.~ 2025. 6. 동의회 신 대상	동의	부동의 (과반동의계좌 포함)
425,344계좌 (100%)	145,512계좌 (34.2%)	279,832계좌 (65.8%)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2024년도 중개형 채무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평균 76.6일이 걸리는 반면,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인해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평균 266.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정책효과가 그만큼 지연될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중개형 채무조정 평균 소요기간〉

채무조정 신청일 ~ 채무조정 약정일	
채권금융회사 동의 경우	채권금융회사 부동의로 인해 새출발기금이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한 경우
76.6일	266.3일*

* 2024년 부동의 계좌 98,720건 중 새출발기금과 약정을 완료한 51,490건(52.2%)을 대상으로 함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율이 낮은 경우 부실(우려)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의 부담이 국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가되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의 정책효과 역시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8.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⁶⁰⁾: 펀드 간 경쟁으로 인한 기존 펀드의 투자집행 지연 방지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 재정을 출자해 모펀드 조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제5호 펀드 조성을 위해 국가 재정 500억원을 출자하여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4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	50,000	50,000	-	-	50,000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국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자본과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후 피투자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운용해 오고 있는데,⁶¹⁾

동 펀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1호~5호) 조성되었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제6호 펀드도 조성될 계획임.

60)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2432-304)

61) 정부는 2017년 12월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 모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된 국가 재정은 2020년도 750억원, 2021년도 675억원, 2024년도 500억원이며⁶²⁾, 2025년도에도 500억원이 추가로 출자될 예정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제1호~6호 주요 특징〉

구 분	1호 (2018년)	2호 (2020년)	3호 (2021년)	4호 (2023년)	제5호 (2024년)	제6호(예정) (2025년)
재정출자	-	750억원	675억원	-	500억원	500억원
운용주체	한국성장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특징	조선, 건설 중장비, 철강 분야 등 전통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기업의 차입수요에 대응하여 투자 방식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수요 증가 대비	다양한 업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주력 산업 인센티브 삭제	금리·물가 상승 등 경제 하방 압력에 따른 구조조정 수요 대비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수요 대비

(자료: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임.

62) 모펀드 출자자별 출자금액 및 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국가 재정	산업 은행	수출입 은행	중소 기업	KAM CO	국민	농협	하나	우리	신한	키움	성장 금융	성장 사다리	합계
제1호	약정총액	-	1,502	1,102	646	250	350	350	350	350	350	-	40	125	5,415
	(비중)	-	(27.7)	(20.4)	(11.9)	(4.6)	(6.5)	(6.5)	(6.5)	(6.5)	(6.5)	-	(0.7)	(2.3)	(100.0)
제2호	약정총액	750	1,502	1,062	686	1,000	-	-	-	-	-	-	15	-	5,015
	(비중)	(15.0)	(30.0)	(21.2)	(13.7)	(19.9)	-	-	-	-	-	-	(0.3)	-	(100.0)
제3호	약정총액	675	1,322	935	668	600	-	-	-	-	200	100	10	-	4,510
	(비중)	(15.0)	(29.3)	(20.7)	(14.8)	(13.3)	-	-	-	-	(4.4)	(2.2)	(0.2)	-	(100.0)
제4호	약정총액	-	1,495	1,110	835	1,560	-	-	-	-	-	-	-	-	5,000
	(비중)	-	(29.9)	(22.2)	(16.7)	(31.2)	-	-	-	-	-	-	-	-	(100.0)
제5호	약정총액	500	1,335	991	824	1,350	-	-	-	-	-	-	-	-	5,000
	(비중)	(10.0)	(26.7)	(19.8)	(16.5)	(27.0)	-	-	-	-	-	-	-	-	(100.0)

○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⁶³⁾은 사전적 ·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인데, 이는 부실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함.

사전적 구조조정기업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기업 ⁶⁴⁾ ②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대상기업 ⁶⁵⁾ ③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의 지원대상기업 ⁶⁶⁾ ④ 기타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 ⑤ 코로나19 피해 기업 ⁶⁷⁾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④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이하)으로 분류된 기업

(자료: 금융위원회)

○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조성된 자펀드는 ① 펀드 조성 후 운용사가 4~5년의 투자기간에 걸쳐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② 운영사에서 투자대상기업을 정한 후 민간 투자자가 출자 여부를 정해 단건으로 펀드를 조성한 후 즉시 소진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구분됨.

63) 정책펀드의 투자대상은 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② 운용 효율성이나 민간자금 유입 등 시장성 확보를 위해 일부 허용되는 일반 투자대상으로 구분되는데,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블라인드 펀드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은 60%이며,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에는 100%임.

64)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65) 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기업, 최근 2년간 영업손실 발생 기업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271조의27제3항)

66)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으로서 채권은행 또는 자율협의회에서 유동성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6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 업체

2) 검토의견

□ 기업구조혁신펀드 제1호~제5호의 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6월 기준 총 2조 4,94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4조 9,702억원의 민간자본과 매칭하여 총 7조 4,642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였고, 이 자펀드 결성액 중 총 5조 4,123억원이 투자 집행되어 그 집행률은 72.5% 수준임.

〈기업구조혁신펀드 1호~5호 결성 및 집행 현황〉

(‘25.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개)

구 분			결성 현황			집행 현황		
구분	펀드 구분	자펀드 수	모펀드 총액	민간 자금	자 펀 드 결성(A)	투자업체 수	투자실적 (B)	집행률 (B/A)
1호 (2018년~)	소 계	12	5,415	11,026	16,441	48	15,995	97.3%
	프로젝트	6	1,415	4,798	6,213	5	6,213	100.0%
	블라인드	6	4,000	6,228	10,228	43	9,782	95.6%
2호 (2020년~)	소 계	17	5,015	10,836	15,851	45	15,130	95.4%
	프로젝트	12	2,006	6,875	8,881	12	8,881	100.0%
	블라인드	5	3,009	3,961	6,970	33	6,248	89.6%
3호 (2021년~)	소 계	13	4,510	13,283	17,793	42	16,567	93.1%
	프로젝트	7	1,510	8,770	10,280	7	10,280	100.0%
	블라인드	6	3,000	4,513	7,513	35	6,287	83.7%
4호 (2023년~)	소 계	8+α	5,000	6,190	11,190	16	4,577	40.9%
	프로젝트	3+α	2,200	2,800	5,000*	3	2,159	43.2%
	블라인드	5	2,800	3,390	6,190	13	2,418	39.1%
5호 (2024년~)	소 계	6+α	5,000	8,367	13,367	6	1,855	13.9%
	프로젝트	α	1,650	1,850	3,500*	-	-	-
	블라인드	6	3,350	6,517	9,867	6	1,855	18.8%
합계		56+α	24,940	49,702	74,642	157	54,123	72.5%

* 제4호 및 제5호 프로젝트펀드는 수시 결성 중으로 최소결성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금융위원회)

□ 현재 투자 여력이 있는 제4호 및 제5호 펀드를 살펴보면, 2025년 6월 기준 투자 집행률이 각각 40.9%, 13.9%로 나타나, 그 집행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

또한, 제4호 및 제5호 펀드의 블라인드 자펀드 결성은 완료된 상태이나, 프로젝트 자펀드의 경우에는 수시 결성 중으로 2025년 6월 현재 그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임.

□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500억 원을 기반으로 하여 제6호 펀드⁶⁸⁾를 설치할 계획이며, 2025년 8월 중에 모펀드 결성을 완료하여, 연도 중에 자펀드 운용사 선정작업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임.

〈기업구조혁신펀드 제6호 집행계획안〉

2025년 3~4분기	▪ 재정·정책 모펀드 정관 체결 및 설립
	▪ 자펀드(블라인드펀드) 선정공고 및 심사
	▪ 자펀드(프로젝트펀드) 수시 출자 제안 접수 및 심사
2026년 ~	▪ 선정 자펀드는 민간자금 매칭을 거쳐 투자집행 개시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주력산업 투자 관련 의무투자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존 펀드와는 달리, 제6호 펀드의 경우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 6개 주력산업분야(석유화학, 자동차, 2차전지,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고,

68) 금융위원회는 국가 재정(500억원)과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2,000억원)으로 모펀드(2,500억원)를 조성한 후, 민간자금과 매칭하여 총 5,0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제6호 펀드의 프로젝트 재원 전액을 주력산업에 배분하며, 후순위 배정⁶⁹⁾을 위한 재정 출자 비율을 종전 펀드의 5~7%보다 높은 10%로 상향한다는 계획임.
- 제4호 펀드는 2023년부터, 제5호 펀드는 2024년부터 결성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투자 집행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올해 내에 자펀드 운용사 선정이 완료되는 제6호 펀드의 투자 집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설 펀드와 기존 펀드 간 투자 집행 관련 경쟁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신설될 제6호 펀드의 경우 기존 펀드의 투자 집행 실적이 저조한 6개 주력산업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므로, 펀드 간 경쟁구도 형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 관련 민간 재원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설될 제6호 펀드의 투자조건이 유리할수록, 제4호 및 제5호 펀드의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결국, 제6호 펀드와 제4호 및 제5호 펀드의 투자 집행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기존 펀드의 투자금 집행이 지연될 수 있고,

69) 후순위 자금은 투자금 상환 시 가장 마지막 순위로 상환받게 되고, 펀드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순위 출자자 → 중순위 출자자 → 선순위 출자자 순으로 부담함. 즉,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동 펀드의 재정 출자금은 전액 후순위로 배정될 예정임.

이 경우, 국가 재정으로 출자한 재원이 구조조정 수요 기업에 즉시 투입되지 못하고, 모펀드에 장기간 유보되어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호 펀드의 지원 분야를 제4호 및 제5호 펀드와 차별성 있게 설정하고, 제4호 및 제5호 펀드 관련 자펀드 운용사 등의 조기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시장에 새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한정된 민간 투자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신설 펀드와 기존 펀드 간의 경쟁으로 인해 기존 펀드의 투자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9.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⁷⁰⁾: 특정업무경비 개인 정액 지급 시 현금 지급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공무원 상용임금, 특근매식비·복리후생비·기타운영비 등의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2024년도 예산현액 7억 200만원 중 5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5%)되고, 1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	702	-	-	702	593	-	109	719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동 사업에는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 및 검사수행을 위한 조사활동비 및 정보활동비를 집행하기 위한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서는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1억 3,600만원이 집행됨.

70) 세부사업: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8-202)

- 금융위원회의 2024년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금융정보 분석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자금세탁 관련 심사분석 및 검사수행을 위한 정보, 조사 및 검사활동비로 활용하도록 소속 직원 64명에게 개인별 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2024년도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단위: 천원)

직 급	인원수	1인당 月지급액	소 요 액		비 고
			月 소요액	年 소요액	
고공단	1	300	300	3,600	정보활동비
국장급	1	250	250	3,000	
실장급, 심의위원	3	200	600	7,200	
과장급 이하	59	178	10,500	126,000	조사활동비 검사활동비
합 계	64			139,800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음.
- 위 집행지침에서는 이와 같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별로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2024년 3월까지 이러한 원칙과 달리 금융정보분석원 부서 계좌로 특정업무경비를 이체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24년 4월 이후에는 위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인원의 개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특정업무경비 집행 방식을 변경하였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정액 지급 시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10.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⁷¹⁾: 금융위원회 청년인턴의 금융감독원 파견 부적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사업은 금융위원회 조직구성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8억 3,400만원 중 6억 7,200만원(80.6%)이 집행되고, 1억 6,200만원(19.4%)은 불용되었음.

○ 불용은 주로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발생(1억 3,900만원) 하였음.

< 2024회계연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834	-	-	834	672	-	162	575
-직무수행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54	-	-	54	45	-	9	54
-금융혁신 전문 역량 강화	55	-	1	56	54	-	2	55
-워크숍	51	-	-	51	39	-	12	51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4	-	-	4	4	-	-	4
-업무우수부서/ 직원 포상	8	-	-	8	8	-	-	8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	662	-	△1	661	522	-	139	403

(자료: 금융위원회)

71) 세부사업: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7135-301)

-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청년인턴 급여가 불용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50명의 청년인턴을 5개월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청년인턴(9명/49명)이 취업 등으로 인해 중도 퇴사하였고, 상반기 25명은 5개월(2024. 3. 25. ~ 2024. 8. 24.)간 근무하였으나, 하반기에 채용한 24명은 약 4개월(2025. 8. 25. ~ 2024. 12. 31.)만 근무하였기 때문임.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에는 청년인턴 6명을 금융위원회에 배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증액된 예산⁷²⁾을 바탕으로 상·하반기 각각 25명(총 5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음.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4년 확대된 청년인턴 인원 전체를 금융위원회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청년인턴에게 보다 다양한 일정함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청년인턴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채용한 총 50명의 청년인턴 중 20명(10명, 2회)은 금융감독원에서, 10명(5명, 2회)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하였음⁷³⁾.

⁷²⁾ 정부안은 6개월 6명, 2개월 3명 등 총 9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청년인턴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총 50명에 대해 5개월간의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정부 예산으로 선발한 청년인턴을 외부기관, 특히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선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2024년 예산을 의결하였는데, 타 기관에 청년인턴을 파견하여 해당 기관에 근무하도록 한 것은 그 사업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금융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청년인턴을 모집해 산하기관에 배치하는 것은 각 기관별로 요구하는 직무역량이나 필요 인재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직접 고용이 아닌 ‘외부기관 근무’ 형태로 집행될 경우 인턴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채용한 청년인턴⁷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예금보험공사에 배치된 금융위원회 청년인턴은 유사업무를 수행하고도 서류전형 등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함.

73) 근무기관 및 부서와 무관하게 금융위원회에서 선발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현장체험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

74)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자체적으로 3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함. 보수수준은 금융위원회 청년인턴과 유사(월 210만원)하며, 기간은 6개월임.

□ 결과적으로,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대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청년인턴 인원을 모두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금융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청년인턴을 모집해 타 기관에 배치하는 방식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리·책임 체계의 모호함, 근무조건과 혜택의 불균형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였으므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급격히 확대된 청년인턴 인원(’23년 6명 → ’24년 50명)을 금융위원회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어려워, 청년인턴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인력의 60%(30명)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운영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청년인턴 규모를 현실화(30명)하여 채용 청년인턴은 전원 금융위 내부에 배치·근무하고 있으며,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원만큼 하반기 추가채용을 진행함으로써 청년인턴 급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변함.

제3장 공적자금상환기금

Ⅰ. 개 요

1. 수입·지출 결산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⁷⁵⁾(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해당 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목적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⁷⁶⁾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음. 한시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⁷⁷⁾ 공적자금상환기금 역시 이 효력 만료일까지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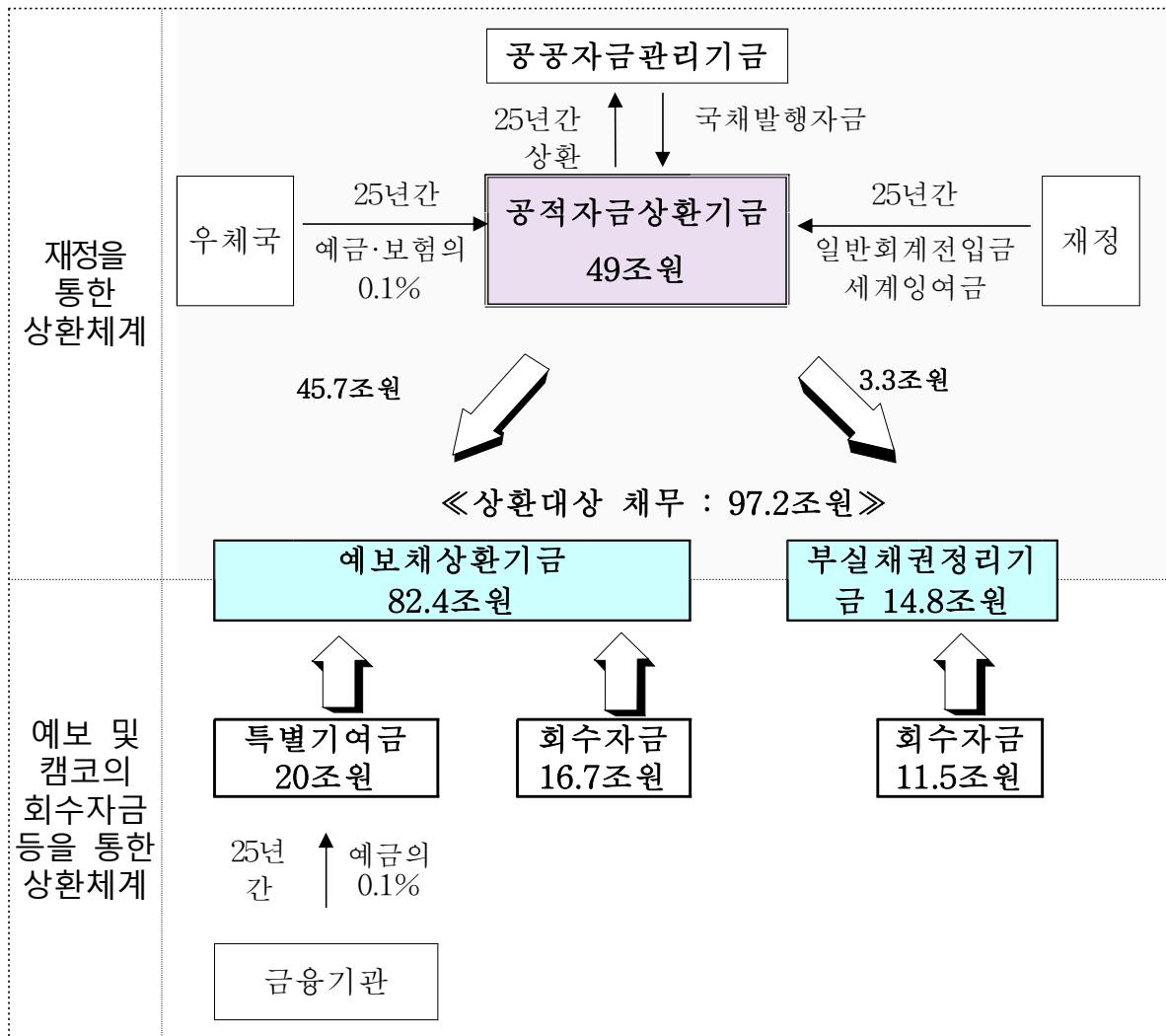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한 채무 상환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발행자금 49조원을 예수받아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5.7조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3.3조원)에 각각 출연하였음. 이후 동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받은 49조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75)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12.11.22일 운용을 종료하고, 2013.2.22일 잔여재산을 반환함.

7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77)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참고 : 2002년 공적자금 상환체계 〉



- 주 1)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투입한 자금 중, 2002년 말 기준 69조원(상환대상 채무 97.2조원 - 회수자금 28.2조원)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고, 총 69조원 중 20조원은 금융회사가, 나머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수립함.
- 2) 2003년~2027년까지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균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정부 부담분 49조원은 재정에서 매년 2조원씩 출연하여 상환하도록 하였음.
- 3)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 부담분(49조원)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시 지원한 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국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움.

□ 2024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각각 9조 3,273억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음.

○ 수입실적은 경상이전수입(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출연금 반환) 5조 1,90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조 5,000억원, 우체국예금·보험 특별회계전입금 1,129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1조 4,419억원 등임.

〈2024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자체수입	2,601,997	4,280,987	4,332,488	5,272,531	121.7	102.6
- 재산수입	1,463	888	888	934	105.2	△36.2
- 재고자산매각대	534	30,099	81,600	81,597	100.0	15,180.3
- 경상이전수입	2,600,000	4,250,000	4,250,000	5,190,000	122.1	99.6
정부내부수입	6,223,109	6,608,266	6,608,266	4,054,773	61.4	△34.8
- 일반회계전입금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100.0	722.7
- 세계잉여금	1,684,340	-	-	-	-	△100.0
- 특별회계전입금	110,705	115,655	115,655	112,873	97.6	2.0
- 공자기금예수금	4,124,204	3,992,611	3,992,611	1,441,900	36.1	△65.0
여유자금회수	58,193	-	-	12	-	△100.0
합 계	8,883,298	10,889,253	10,940,754	9,327,316	85.3	5.0

(자료: 금융위원회)

- 지출실적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8조 8,423억원, 그 예수이자 상환 4,848억원 등임.

〈2024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금융정책(전입금환급)	-	-	-	-	-	-
정부내부지출	8,883,281	10,339,173	10,390,657	9,327,136	89.8	5.0
- 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8,345,572	9,789,418	9,840,902	8,842,338	89.9	6.0
-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537,709	549,755	549,755	484,798	88.2	△9.8
기금운영비	5	128	145	141	97.2	2,720.0
여유자금운용	12	549,952	549,952	40	0.0	233.3
합 계	8,883,298	10,889,253	10,940,754	9,327,316	85.3	5.0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4년 자산은 2023년에 비하여 583억원이 감소한 0.4억원이며,

○ 부채는 유동부채(1,103억원) 및 장기차입부채(20조 6,112억원)로 구성됨.

○ 순자산은 △20조 7,214억원으로 2023년 말 △28조 680억원 대비 7조 3,466억원 증가함.

〈공적자금상환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40	12	28	233.3
	투자자산 ⁷⁸⁾	-	58,372	△58,372	△100.0
	자산계	40	58,384	△58,345	△99.9
부 채	유동부채	110,262	7,706,080	△7,595,818	△98.6
	장기차입부채	20,611,176	20,420,276	190,900	0.9
	장기충당부채	-	-	-	-
	부채계	20,721,438	28,126,356	△7,404,918	△26.3
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20,721,398	△28,067,971	7,346,573	26.2
	순자산계	△20,721,398	△28,067,971	7,346,573	26.2

(자료: 금융위원회)

78) 부실채권정리기금(2013.2.22. 청산)으로부터 반환받은 현물잔여재산(대우조선해양 주식)으로 2013년 중 9,569,838주를 매각함에 따라 보유중인 잔여 주식 2,325,577주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2024년 중 전량매각 하였음.

□ 2024년도 중 재정운영결과는 △4조 8,46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636억원 감소함.

○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대비 89억원 감소한 △232억원임. 비배분비용⁷⁹⁾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비용 등 4,803억원으로 전년대비 636억원 감소하였고, 비배분수익⁸⁰⁾은 여유자금운용수익 등 9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 감소함. 또한, 비교환수익⁸¹⁾은 우체국예금·보험 특별회계 전입금 1,129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잉여금 전입 5조 1,900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2조 5,922억원 증가함.

〈공적자금상환기금 재정운영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A)	2023(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순원가	△23,225	△14,302	△8,923	△62.4
II. 관리운영비	141	5	136	2,720.0
III. 비배분비용	480,318	543,872	△63,554	△11.7
IV. 비배분수익	934	1,815	△881	△48.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56,300	527,760	△71,460	△13.5
VI. 비교환수익 등	5,302,873	2,710,705	2,592,168	95.6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846,573	△2,182,945	△2,663,628	△122.0

(자료: 금융위원회)

79) 비배분비용이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을 말함.

80) 비배분수익이란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말함.

81)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함.

□ 2024년도 순자산은 △20조 7,214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 3,466억원 (26.2%) 증가함.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A)	2023(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기초순자산	△28,067,971	△32,239,116	4,171,145	12.9
II.재정운영결과	△4,846,573	△2,182,945	△2,663,628	△122.0
III.조정항목	2,500,000	1,988,200	511,800	25.7
IV.기말순자산 (I - II+III)	△20,721,398	△28,067,971	7,346,573	26.2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⁸²⁾: 채무상환 완료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구조조정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 49조원(원금기준)을 2027년까지 상환하는 사업임.
- ☐ 202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계획현액은 9조 8,409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8조 8,423억원만 상환하여 그 집행률은 89.9%임.

〈2024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목명· 세목명	2024						2025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C)	불용액	집행률	계획액
	당초	수정(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9,789,418	9,840,902	9,840,902	8,842,338	998,564	89.9	5,997,739

(자료: 금융위원회)

82) 세부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9111-841)

2) 검토의견

□ 정부는 2003년 설치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9조원을 예수받아, 공적자금 중 회수가 어려운 정부보증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와 부실채권정리기금채) 69조원 가운데 49조원을 부담하였음.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49조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⁸³⁾ 등 수입 재원을 활용해 상환하고 있음.

□ 2024년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약 20.6조원(원금)인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근거 법률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효력 만료일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⁸⁴⁾ 정부는 이 기한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잔액을 상환 완료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원금 기준으로, 2025년도에 6조원, 2026년도에 8.7조원, 2027년도에 5.9조원을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한 후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청산한다는 계획임.

83) 20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45.7조원) 받을 때 체결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간 약정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재원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을 위해 전출하고 있음.

84)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7월말기준)	2026* (계획안)	2027* (계획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내역	원금	6,290,225	6,402,465	8,345,572	8,842,338	4,084,124	8,718,811	5,894,626
	이자	799,543	647,009	537,709	484,798	232,530	302,592	60,121
원리금 상환계획	원금	6,290,225	6,402,465	8,345,572	9,840,902	5,997,739	8,718,811	5,894,626
	이자	844,790	703,109	651,458	549,755	438,282	302,592	60,121
잔액(원금)		38,648,264	32,232,982	28,011,614	20,611,176	14,613,437	5,894,626	-

*2026~2027년 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상환의 주요 재원⁸⁵⁾인 ① 일반 회계전입금, ② 세계잉여금, ③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및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의 최근 5년간 수입 내역을 살펴 보면, 연평균 5조 3,621억으로 나타나,

기금 청산까지 남은 3년간(2025년~2027년) 채무잔액 약 20.6조원(연평균 6.9조원)의 상환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8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3.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동 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반환받은 자금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주요 수입원 〉

(단위: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회계전입금	21,000	26,000	26,000	3,039	25,000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	1,034	1,067	1,075	1,107	1,129
세계잉여금	-	10,362	19,970	16,843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 전입금	-	12,580	24,000	26,000	51,900
합 계	22,034	50,009	71,045	46,989	78,029
평균 수입	53,621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또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재원 중 2024년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5조 1,900억원)인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수입 항목⁸⁶⁾ 중 향후 안정적인 수입 재원은 「예금자보호법」⁸⁷⁾에 따른 금융회사 특별기여금 약 2.7조원(2025년도 계획액) 뿐이므로, 2025년부터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

8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24년도 수입 현황 및 2025년도 계획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계획
	당초	수정	결산	수납률	
총 계	4,641,030	5,581,030	5,443,234	97.5	4,749,605
정부출자수입 (출자금융회사 배당금 등)	191,028	191,028	214,490	112.3	227,459
기타이자수입	101,079	101,079	130,723	129.3	117,396
기타경상이전수입 (금융회사 특별기여금 등)	2,544,120	2,544,120	2,580,600	101.4	2,660,038
재고자산매각대 (출자금융회사 주식매각)	1,033,172	1,033,172	216,626	21.0	525,330
정부예금회수	771,631	1,711,631	2,300,794	134.4	1,219,382

(자료: 예금보험공사)

87)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금 전입금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⁸⁸⁾

□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다른 재원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채무상환을 2027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기 쉽지 않아 보임.

□ 2027년을 법정 존속기한으로 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한 것은 일반 재정 활동과 분리해 안정적으로 관련 자금을 모아, 2002년 이전에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자금 청산과 관련해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3년간 (2025년~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적자금 부채상환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정해진 기한 안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안정적으로 청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88) 출자금용회사(한화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을 통한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주식 매각은 주가 및 경제환경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기금 청산 전 주식 매각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1. 수입·지출 결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정부와 금융기관⁸⁹⁾의 출연금, 신용보증료, 구상권회수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신규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에 대한 대위변제 등에 운용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운용 주체는 농협중앙회이고, 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출연금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임.

□ 2024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수입실적은 2조 574억 4,900만원으로 당초 계획금액 2조 196억 3,600만원 대비 1.9% 증가하였음.

○ 동 기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으며, 2024년에는 2,247억 6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24년에는 630억 600만원을 수납하였고, 구상채권회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⁹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이 법 제13조⁹¹⁾에 따라

89)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회원인 조합으로서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 등으로 2024년에는 860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음.

○ 보증료 수입은 기금의 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로 2024년에는 625억 7,2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위약금은 보증기일이 경과한 피보증채무 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인에게 기금이 보증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2024년에는 1억 6,000만원을 수납하고, 기타수입은 39억 800만원을 수납하였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24회계연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집행률 (D/C)	
자채수입	398,765	552,636	552,636	440,414	79.7	10.4
- 금융기관 출연금	211,751	219,535	219,535	224,706	102.4	6.1
- 이자수입	35,140	64,892	64,892	63,006	97.1	79.3
- 구상채권회수 등	83,521	171,802	171,802	86,062	50.1	3.0
- 보증료수입	63,644	92,437	92,437	62,572	67.7	△1.7
- 위약금	136	121	121	160	132.2	17.6
- 기타수입	4,573	3,849	3,849	3,908	101.5	△14.5
정부내부수입	-	30,000	30,000	30,000	100.0	순증
여유자금회수	1,087,781	1,437,000	1,437,000	1,587,035	110.4	45.9
합계	1,486,546	2,019,636	2,019,636	2,057,449	101.9	38.4

(자료: 금융위원회)

- 9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 9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구상권의 행사) ①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024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지출실적은 사업비 4,415억 900만원, 기금운영비 548억 1,900만원, 여유자금운용 1조 5,611억 21백만원 등 총 2조 574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대비 38.4% 증가하였음.
- 2024년 동 기금의 사업비는 보증부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4,195억 1,300만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관리비용 109억 1,200만원 등 총 4,415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음.
- 2024년 동 기금의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489억 6,500만원, 기금관리비 57억 2,800만원, 선급법인세 1억 2,600만원 등 총 548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4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사업비	430,138	356,654	456,654	441,509	96.7	2.6
대위변제	407,437	330,300	430,300	419,513	97.5	3.0
구상권관리비	11,371	14,245	14,245	10,912	76.6	△4.0
보증료환급	5,409	5,637	5,637	5,277	93.6	△2.4
위탁사업비	3,439	3,850	3,850	3,302	85.8	△4.0
농신보IT유지비	2,482	2,622	2,622	2,505	95.5	0.9
소송및법적절차	-	-	-	-	-	-
기금운영비	53,495	55,609	55,609	54,819	98.6	2.5
인건비	47,729	48,965	48,965	48,965	100.0	2.6
기금관리비	5,550	5,736	6,215	5,728	92.2	3.2
선급법인세	216	908	429	126	29.4	△41.7
회계기금간거래	-	-	-	-	-	-
기금간거래	-	-	-	-	-	-
여유자금운용	1,002,913	1,607,373	1,507,373	1,561,121	103.6	55.7
합계	1,486,546	2,019,636	2,019,636	2,057,449	101.9	38.4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4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2조 2,049억 5,600만원이고, 부채는 1조 1,665억 3,500만원이며, 순자산은 1조 384억 2,100만원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1,763,510	1,790,384	△26,874	△1.5
	투자자산	132,000	125,242	6,758	5.4
	일반유형자산	776	713	63	8.8
	무형자산	560	992	△432	△43.5
	기타비유동자산	308,110	287,747	20,363	7.1
	자산계	2,204,956	2,205,078	△122	0.01
부 채	유동부채	39,274	39,720	△446	△1.1
	장기충당부채	1,121,187	1,111,084	10,103	0.9
	기타비유동부채	6,074	6,573	△449	△7.6
	부채계	1,166,535	1,157,377	9,158	0.8
순자산	기본순자산	5,012,047	5,012,047	-	-
	적립금 및 잉여금	△4,002,200	△3,977,957	△24,243	0.6
	순자산조정	28,574	13,611	14,963	109.9
	순자산계	1,038,421	1,047,701	△9,280	△0.9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1억 2,2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투자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구상채권 등) 증가액 대비 유동자산(단기금융상품 등) 감소액이 더 큰 것에 기인함.

- 2024회계연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부채는 1조 1,665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1억 58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장기충당부채 101억 300만원 증가에 기인함.
- 2024회계연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순자산은 1조 384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억 8,0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손상각비 증가 등 손익저하에 따른 순자산 감소에 기인함.
- 2024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 결과는 542억 4,300만원 적자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 1,565억 500만원 적자 대비 적자규모가 1,022억 6,200만원 감소한 것임.
- 2024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 결과 적자규모가 감소한 주요 요인은 전년대비 프로그램 순원가 976억 3,500만원 감소 때문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332,198	429,833	△97,635	△22.7
1. 프로그램 총원가	393,014	491,492	△98,478	△20.0
2. 프로그램 수익	△60,816	△61,659	843	△1.4
II. 관리운영비	7,508	7,116	392	5.5
III. 비배분비용	650	695	△45	△6.5
IV. 비배분수익	61,407	69,388	△7,981	△11.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78,949	368,256	△89,307	△24.3
VI. 비교환수익 등	224,706	211,751	12,955	6.1
VII. 재정운영결과(V - VI)	54,243	156,505	△102,262	△65.3

(자료: 금융위원회)

□ 2024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말 순자산은 1조 38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 순자산 1조 477억 100만원 대비 92억 8,000만원 감소하였음.

○ 동 기금의 기말 순자산의 증감액이 92억 8,000만원 감소한 것은 재정운영표 상 재정운영결과 감소가 주요 요인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1,047,701	1,174,048	△126,347	△10.8
1. 기본순자산	5,012,047	5,012,047	-	-
2. 적립금 및 잉여금	△3,977,957	△3,821,452	△156,505	△4.1
3. 순자산조정	13,611	△16,547	30,158	△182.3
II. 재정운영결과	54,243	156,505	△102,262	△65.3
III. 조정항목	44,963	30,158	14,805	49.1
V. 기말순자산(I - II + III)	1,038,421	1,047,701	△9,280	△0.9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기타특별회계전입금⁹²⁾: 기금 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농어업인의 보증 지원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00억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기타특별회계전입금	30,000	-	30,000	30,000	30,000	-	-	150,00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농신보의 건전성 악화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농신보 기본재산⁹³⁾ 확충을 통한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편성되었음.

92) 세부사업: 기타특별회계전입금(91-912)

93) 기본재산은 전년도 기본재산과 당기순익금,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⁹⁴⁾는 기금의 운용배수⁹⁵⁾ 상한을 20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규정」 제12조⁹⁶⁾는 추가적 보증여력의 확보, 기본재산 가치변동 대응 필요성 등⁹⁷⁾에 따라 적정운용배수를 12.5배⁹⁸⁾로 설정·운용하고 있음.

○ 그런데, 농신보의 운용배수는 2014년~2019년 농특회계로 1.6조원 반환⁹⁹⁾과 보증사업 활성화 등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 보증잔액¹⁰⁰⁾의 증가 등으로 2019년부터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하여 운용 중에 있음.

9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보증 규모 대비 기본재산. 보증기금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배수가 낮을수록 기금이 건전하고 보증 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됨.

96) 「신용보증규정」

제12조(보증총한도) ③ 제2항의 보증총액한도의 적정한 수준은 12.5배로 한다.

97) 적정운용배수 관리의 필요성(자료: KFR 한국펀드평가, 「적정운용배수 산정 컨설팅 연구용역」, 2020. 8.)

구 분	내 용
추가적 보증여력 확보	○ 보증 상품의 다양화, 보증 수요의 확대 등으로 보증자산규모가 증가될 수 있음 ○ 계획보다 보증 자산의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운용배수를 법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기본재산 가치변동에 대응	○ 기본 재산은 경기 변동,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평가금액이 변동할 수 있음 ○ 극단적으로 기본 재산의 평가금액이 하락하더라도 보증 배수가 법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법정 수준 이하의 보증 배수 유지 * 이러한 필요성은 Basel III에서 자본보전완충자본 2.5%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임
보증자산의 질적변화에 대응	○ 기본 재산은 대위변제의 재원으로서 보증 자산의 사고율 증가, 대위변제 증가시 기본 재산의 유출 및 감소가 불가피함 ○ 운용배수의 분모항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의 감소는 운용배수를 급격히 증가시킴 ○ 이러한 보증 자산의 부실화 상황에서도 법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법정 수준 이하로 관리되어야 함

98) 현행 적정운용배수는 바젤II 기준 BIS비율의 규제 수준이 8%임에 착안하여 BIS비율의 역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운용배수를 8%의 역수인 12.5배로 설정한 것임.

99) 기본재산 감소의 주요원인은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낮게 유지됨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조 6,000억원이 기금에서 농특회계로 전출되었기 때문임.

100)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증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농어업분야의 지역소멸대응 및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의 확대* 등에 따라 보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농어업분야 지역소멸대응 및 시설현대화 관련 정책자금 배정규모: (2021년) 8조 9,419억원 → (2023년) 10조 3,585억원

〈연도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결산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정부출연금	△3,000	△2,000	△2,000	1,000	1,300	1,300	0	300
	금융기관출연금	1,222	1,240	1,269	1,386	1,833	1,971	2,118	2,247
	보증료,이자수입등	1,114	1,085	1,042	957	810	756	1,610	1,372
	계	△664	325	311	3,343	3,943	4,027	3,728	3,919
지출	보증보조비용	746	1,585	1,910	1,182	468	571	1,263	106
	구상채권상각비	1,466	2,125	2,668	2,197	1,896	1,849	3,104	3,271
	관리업무비 등	741	666	590	566	633	660	626	635
	계	2,953	4,376	5,168	3,945	2,998	3,078	4,993	4,012
기본재산(A)		19,357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10,384
보증잔액(B)		133,968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79,913
운용배수(B/A)		6.9	9.7	15.4	16.7	15.2	14.6	16.8	17.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처럼 농신보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되는 경우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기금의 기능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동 기금을 통하여 같은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¹⁰¹⁾이 원칙이나, 적정운용배수 내에서는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¹⁰²⁾까지 예외보증을 허용하고 있어, 운

10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개인인 경우: 15억원
2. 농림수산업자등이 법인인 경우: 20억원

102) 「신용보증규정」

제14조(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피보증인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15억원(법인은 20억원)으로 한다.

제15조(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피보증인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 이내로 한다.

1.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보증총한도의 적정한 수준이내에서 심의회가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한 보증

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예외보증을 중단하여야 함.

-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해서는 적정운용배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부터 매년 예외보증 지원의 운용시한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외보증 운용기한 적용 현황〉

일 정	적용현황
2020. 2.	■ 2019년 적정운용배수 초과(15.4배) 예외보증지원 운용시한 부여 - (최초) 2020. 5. 31.까지
2020. 5.	■ 예외보증 지원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0. 5. 31. → (변경) 2020. 8. 31.까지(3개월)
2020. 8.	■ 농신보 「신용보증규정」 개정 시행 및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0. 8. 31. → (변경) 2021. 8. 31.까지(1년)
2021. 8.	■ 예외보증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1. 8. 31. → (변경) 2022. 8. 31.까지
2022. 8.	■ 예외보증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2. 8. 31. → (변경) 2023. 8. 31.까지
2023. 8.	■ 예외보증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3. 8. 31. → (변경) 2024. 8. 31.까지
2024. 8.	■ 예외보증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4. 8. 31. → (변경) 2024. 12. 31.까지(3,133억원 한도내)
2024. 12.	■ 예외보증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4. 12. 31. → (변경) 2025. 12. 31.까지(3,133억원 한도내)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② 제1항에 의해 승인된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 중,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총액한도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보증총액의 한도 이내로 한다. (이하 생략)

□ 이와 같이 농신보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23회계 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2024년 4분기 순신규보증총량제¹⁰³⁾를 시범도입하였으며, 향후 운용배수, 정책자금 등을 고려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2024년도 300억원, 2025년도 1,500억원 등 1,800억원의 정부 출연과 더불어 금융기관 특별출연¹⁰⁴⁾으로 기금 건전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 중이라는 입장임.

103) 순신규보증총량제 개요(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배경

- 재정 상황 및 리스크 수준을 고려한 탄력적 보증공급 관리방안 마련
- 보증총량 관리를 통한 법정운용배수 준수 및 보증지원 체계 확립

□ 조치 내용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후 법정운용배수를 감안한 연간 순신규보증 총 한도 범위 내에서 분기별 한도 관리
 - 분기별 배정한도 비중(1분기 15%, 2분기 35%, 3분기 30%, 4분기 20%)

(예시) '25년 순신규보증 3조 4,000억원

(단위: 억원,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순신규보증	5,100	11,900	10,200	6,800	34,000

□ 분기별 배정한도 소진 시 관리 계획

- 배정한도 80% 소진 시 대체 보증기관이 없는 농림어업인 및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우선 실시
- 배정한도 100% 소진 시 정식신용조사 대상 보증 건*에 한해 다음분기 이월
 - *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 법인 혹은 3억원 초과 비법인(재무제표 보유시)
- ※ 분기별 한도 소진율(80~100%)에 따라 일반자금과 정책자금 차등 지원

104) 2024년 12월 농협은행 특별출연금 100억원 전입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지적사항] 농신보 운용배수는 2023년말 기준 16.8배, 2024년 6월 기준 17.3배로 전년도 14.6배에 비해 증가하였는바, 기금 운용배수가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여 법정 운용배수(20배)에 근접함에 따라 향후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24년 6월 기준 운용배수: 17.3배 - 향후 농신보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 이하로 회복되기 위하여 장기간의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운용배수 진입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제도개 선	○ 순신규보증총량관리제를 시범도입하였으며 향후 운용배수, 정책자금 등을 고려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보증 공급계획을 기금의 재정상황 및 리스크 수준을 고려하여 감축, 현행유지, 증가 등으로 구분하고 보증공급의 예측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별 순신규보증총량제를 도입(’24.4분기 시범도입, ’25년 하반기 정식도입 예정) - 기금 건전성,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추이, 기존 보증의 질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정부 정책자금 배정물량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 운영* 중 * (구성) 금융위, 농신보, 농식품부·해수부, 연구기관(금융연·농촌경제연) (내용) 농·어업인 대상 정책자금 공급과 연계한 보증총량 관리방안 및 기금건전성을 고려한 총당금 적립방식 개선안 마련 - 정부 출연과 더불어 금융기관 특별출연으로 기금 건전성 제고 노력 * 정부출연금 1,500억원(25년), 농협은행 100억원(24.12월) 既반영 / 수협은행 15억 예정(25년중) ○ 조치예정일 : 2025년 중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 5.)

□ 다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운용배수는 2024년말 기준 17.3배 수준으로, 2023년말 16.8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 원, 배)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추정)
기본재산(A)	10,792	11,741	10,476	10,384	10,894
보증잔액(B)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1,463
운용배수(B/A)	15.2	14.6	16.8	17.3	16.7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농신보의 건전성이 악화된 이유는 피보증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위변제액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상채권회수율 하락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¹⁰⁵⁾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 및 구상채권회수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추정)
대위변제액	3,021	2,904	4,074	4,195	4,380
구상채권회수율 ¹⁾	4.5	3.7	2.8	2.6	2.2

주1) 연중 구상채권 회수 수입액/구상채권 잔액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한편, 2024년~2025년 각각 300억원, 1,500억원 등 1,800억원 규모의 정부 출연금 전입에도 불구하고 2025년말 기준 기금의 운용배수는 16.7배 수준으로 전망되는바, 정부의 출연이 기금 건전성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상됨.

105) 2021년 1,896억원 → 2022년 1,849억원 → 2023년 3,104억원 → 2024년 3,271억원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향후 보증총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마련,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기금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 출연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기금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대위변제금¹⁰⁶⁾: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위변제금”은 피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농신보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2024년 계획현액 4,303억원 중 4,195억 1,300만원 (97.5%)이 집행되고, 107억 8,700만원(2.5%)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위변제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액		이·전용 등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 용 액	
	당초	수정						
대위변제금	330,300	430,300	-	430,300	419,513	-	10,787	438,01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대위변제금의 적정 계획액 편성 필요

□ 최근 고물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증 부실의 증가에 따라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에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대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실시하였음.

○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 시

106) 세부사업: 대위변제금(2432-680)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되, 농신보를 포함한 금융성 기금의 경우 프로그램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3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체변경을 허용하고 있음.¹⁰⁷⁾

- 금융위원회는 보증부실 증가로 인한 대위변제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 농신보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출금액의 각각 26.1%와 28.0%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금융성 기금의 기금운용 계획 자체변경 상한인 30% 수준에 근접한 수준임.

〈2023년~2024년 농신보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 자체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명	계 획			집 행 액 (C)	집 행 률 (C/A)	집 행 률 (C/B)
		당 초 (A)	수 정 (B)	증 감 율 ((B-A)/A)			
2023	산업금융지원(2400)	346,030	436,461	26.1	430,138	124.3	98.6
	- 대위변제금(2432-680)	319,604	409,604	28.2	407,437	127.5	99.5
2024	산업금융지원(2400)	356,654	456,654	28.0	441,509	123.8	96.7
	- 대위변제금(2432-680)	330,300	430,300	30.3	419,513	127.0	97.5

(자료: 금융위원회)

107) 「국가재정법」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국가재정법 [별표 3] 금융성 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¹⁰⁸⁾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의무적 지출사업이며, 보증 부실의 증가로 인한 대위변제금 부족분 발생은 사전에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¹⁰⁹⁾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그동안의 대위변제금 추계가 과거의 보증잔액과 대위변제율에 의존하여 추계되었으며, 향후 대위변제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보증¹¹⁰⁾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대위변제금 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보임.

○ 예를 들어 2024년도 대위변제금 계획액의 편성근거를 살펴보면, 2024년 추정 보증잔액에 최근 5년(2019~2023년) 간의 평균 대위변

10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109) 다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2024년도 대위변제금 계획안에 편성된 3,303억원은 최근 대위변제금과 불건전보증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과소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음.

내년도 대위변제금 계획안에 편성된 3,303억원은 최근의 대위변제금과 불건전보증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과소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농신보는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와 불건전보증 정상화 등 대위변제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 정무위원회,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3. 11.)

110) 불건전보증이란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등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보증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보증사고 사유로는 ①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② 채권자가 보증부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③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의한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④ 채무자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⑤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결정, 경매신청 또는 채무자의 폐업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들 수 있음.

제출¹¹¹⁾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최근 급증하는 불건전보증 규모 추세¹¹²⁾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2024년도 대위변제율 산출내역〉

2024년도 계획안 산출근거						
○ 대위변제금 = 2024년 보증잔액 추정 × 최근 5년(2019~2023년) 평균 대위변제율 = 18조 5,962억원 × 1.78% = 3,303억원						
* 보증별 최근 5년(2019~2023년) 평균 대위변제율(1.78%) 적용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 및 추정〉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추정	2024년 계획
보증잔액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8,629	185,962
대위변제액	3,265	3,073	3,021	2,904	3,188	3,303
대위변제율	2.03	1.87	1.85	1.69	1.78	1.78

(자료: 금융위원회)

□ 기금운용계획의 연례적인 대규모 자체변경은 ①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국회의 재정 심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②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 회계연도 중에 농신보의 수입·지출 구조를 왜곡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대위변제금 발생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의 연례적인 대규모 자체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11)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액

112) 불건전보증 잔액: (2021년) 526억원 → (2022년) 789억원 → (2023년) 1,053억원 → (2024년) 1,390억원 → (2025년) 1,658억원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 대위변제 감축을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최근 대위변제 규모는 고물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904억원에서 2024년 4,19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위변제율은 2022년 1.69%에서 2024년 2.33%까지 상승하였음.

○ 2024년말 기준 보증 유형별 대위변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보증¹¹³⁾, 우대보증¹¹⁴⁾, 특례보증¹¹⁵⁾에서 각각 3,183억원, 729억원, 284억원의 대위변제금이 집행되었으며, 대위변제율은 각각 3.29%, 1.40%, 0.91%로 나타나고 있음.

〈농신보 보증 유형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보증	보증잔액(A)	99,464	99,367	97,827	96,739	95,954
	대위변제(B)	2,409	2,272	3,201	3,183	1,507
	대위변제율(B/A)	2.42	2.29	3.27	3.29	1.57
우대보증	보증잔액(A)	45,773	48,253	50,590	51,969	52,941
	대위변제(B)	432	468	620	729	395
	대위변제율(B/A)	0.94	0.97	1.23	1.40	0.75
특례보증	보증잔액(A)	18,348	24,232	28,003	31,205	32,513
	대위변제(B)	181	162	253	284	154
	대위변제율(B/A)	0.99	0.67	0.90	0.91	0.47
합 계	보증잔액(A)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1,408
	대위변제(B)	3,021	2,904	4,074	4,196	2,056
	대위변제율(B/A)	1.85	1.69	2.31	2.33	1.13

주: 2025년 6월말 기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3) 농림어업인의 영농림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114) 농어업 생산성 향상, 조기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증조건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보증

115) 재해피해복구 등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증으로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 특히,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하여 일반보증 중심¹¹⁶⁾으로 법인보증 부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4년말 기준 법인의 대위변제율은 6.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2024년 법인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보증잔액(A)	24,840	23,124	22,417	20,479	18,532
대위변제(B)	1,264	1,156	973	1,309	1,136
대위변제율(B/A)	5.09	4.99	4.34	6.39	6.1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농신보는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2024년 1분기(1,153억원) 대비 2025년 1분기(846억원) 대위변제금이 감소하였으며, 2025년 3월말 기준으로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국회에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5년 상반기 기준 대위변제금은 2,056억원으로, 2024년 상반기 2,049억원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위변제 규모 증가에 대한 농신보의 대응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16) 2024년말 법인 승낙잔액 18,532억원 중 일반보증 취급 건은 18,385억원(약 99.5%)으로 대다수 일반보증으로 취급 중임.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지적사항]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및 유류비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불건전보증과 대위변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2023년 대위변제액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074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에 당초 계획액 3,196억원 대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900억원(+28.2%)을 증액변경하였음 * 2024년도 상반기 대위변제금 집행률: 61.9% ○ [시정요구사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 조기경보시스템 및 불건전보증·대위변제 감축 특별추진 등을 통해 전년 동기대비 대위변제금 감소(’24.1분기 1,153억 → ’25.1분기 846억) -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증건 전성 관리 강화 (’25.1분기 관리목표 7,123건 100% 달성) * 금융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유의관리가 필요한 피보증인의 신용정보, 휴폐업 정보 등을 확인하여 유효보증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 - 불건전보증·대위변제 감축 특별추진*을 통해 지역센터별 대위변제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25년 업적평가 배점 확대(2점→3점) ○ 조치완료 : 2025년 3월 31일	조치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 5.)

□ 한편, 이러한 대위변제 증가 추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건전보증 추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고금리 장기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24년말 기준 불건전보증 잔액은 2021년 526억원의 약 2.6배 수준인 1,39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건전보증비율은 2021년 0.32%에서 2024년 0.77%로 0.45%p 증가하였음.

〈농신보 불건전보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잔액(A)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1,408
불건전보증잔액(B)	526	789	1,053	1,390	1,658
불건전보증비율(B/A)	0.32	0.46	0.60	0.77	0.91

주: 2025년 6월말 기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대위변제 감축 및 불건전보증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여유자금운용¹¹⁷⁾: 여유자금운용 관련 제도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여유자금운용”은 농림어업인의 금융지원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적정한 유동성 관리를 목표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조 5,073억 7,300만원 중 1조 5,611억 2,200만원(103.6%)이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여유자금운용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액		이·전용 등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여유자금운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07,373	1,507,373	-	1,507,373	1,561,122	-	-	1,743,874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여유자금 운용실적 개선 필요

□ 농신보의 2024년도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1조 8,634억 6,400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3.88%(직접운용 3.85%, 연기금투자폴 3.88%)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음.

117) 단위사업: 여유자금운용(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9701)

- 금융위원회 소관의 다른 금융성 기금 중 농신보와 사업체계가 유사한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수익률이 각각 5.73%, 6.21%인 점을 감안할 때, 농신보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임.

〈농신보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여유자금 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 투자율 (수익률)	기타 (수익률)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1,863,464	1,863,464 (3.88%)	1,288,861 (3.85%)	574,603 (3.88%)	-
신용보증기금	13,659,531	13,265,759 (5.73%)	5,715,408 (4.36%)	7,550,351 (6.84%)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2,409,466	12,409,466 (6.21%)	4,783,633 (4.41%)	7,625,832 (7.38%)	-

(자료: 금융위원회)

- 그동안 농신보는 다른 금융성 기금에 비하여 작은 여유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산군을 제한적으로 운용하였으며, 특히 대위변제금 지출 증가 등에 대비하여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자금 인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확정금리형 상품(예치금)의 비중을 높게 운용하여 왔음.

- 2024년 기금별 연간자금운용계획 자산배분안을 살펴보면, 농신보의 확정금리형 상품(예치금) 비중은 69.8%로, 신용보증기금(35.5%)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17.4%)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

〈2024년 기금별 연간자금운용계획 자산배분안 요약〉

운용자산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단기자금		0.3%	0.4%	0.3%
중장기자금		99.7%	99.6%	99.7%
확정금리형 (예치금)		69.8%	35.5%	17.4%
실 적 배 당 형	국내채권	27.9%	53.4%	69.2%
	국내주식	2.0%	3.4%	5.1%
	해외채권	-	2.9%	1.4%
	해외주식	-	4.4%	6.6%
합 계		100.0%	100.0%	100.0%

주: 기금별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확정금리형 자산(예치금)의 비중을 높게 운용하는 자산배분 전략은 기금 안정성 및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농신보의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예치대상 금융기관을 농·수협 및 산림조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 2118)) 확정금리형 자산의 운용 협상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1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7조(기금의 사용)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협은행
2. 삭제 <2001. 7. 31.>
3. 수협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

확정금리형 자산은 실적배당형 자산에 비하여 중장기 수익률 제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¹¹⁹⁾

□ 이에 대하여 농신보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실적배당형 상품의 운용 비중¹²⁰⁾을 높이는 한편,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의 투자 승인을 받아 해외채권·주식의 위탁 투자(연기금투자플 수익증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5년 연간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해외자산군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반영하여 운용을 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 농신보는 향후 기금 여유자금의 관행적 운용을 지양하는 한편, 기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의 운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산림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119)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도 농신보의 경우 타 금융성 기금 대비 확정금리형 상품의 투자비중이 매우 높아 이를 축소하여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20) (중장기형) 확정금리형 비중 추이: (2022년) 71.4%→(2023년) 72.6%→(2024년) 66.8%→(2025년 6월) 62.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업무의 분리 필요

□ 농신보의 「자금운용준칙」 제32조¹²¹⁾에서는 자금운용과 관련된 위험관리를 위해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위험관리조직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준칙 제34조¹²²⁾에서는 자금운용의 투명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성과평가조직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신보는 자금운용을 담당하는 조직(신용보증기획부)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인 “신용보증업무부 리스크관리팀”를 설치·운용중이나, 이 조직에서 성과평가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의 담당인력은 팀장과 담당자 각각 1명에 불과함.

□ 그러나, 성과평가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가 동일한 조직에 의해 수행될 경우 업무 간의 이해 상충으로 자금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함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21) 「자금운용준칙」

제32조(위험관리조직의 설치) ① 자금운용과 관련된 위험관리를 위해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위험관리 조직을 설치 운용한다.

② 위험관리 조직은 위험의 유형별 한도를 설정하고 점검한다.

122) 「자금운용준칙」

제34조(성과평가조직의 설치) ① 자금운용의 투명한 성과평가를 위해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성과평가 조직을 설치 운용한다.

② 성과평가 조직은 운용상품과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투자자산별로 기준 수익률을 설정하여 운용성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검증한다.

□ 따라서, 농신보는 자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 조직의 분리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¹²³⁾

123)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해당 기능의 조직적 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농신보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 위원회를 독립 설치하였고, 전문성 보완을 위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담조직 분리를 위한 인력 충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5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Ⅰ. 개 요

1. 수입·지출 결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6년 1월에 설치되었음.

□ 2024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수입실적은 631억 700만원임.

○ 동 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¹²⁴⁾에 따라 저축장려금 지급예정액의 1/2 이상을 정부로부터 출연받고,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출연받고 있는데, 2024년에는 각각 314억 6,300만원을 출연받았음.

12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024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자체수입	26,638	31,581	31,589	31,581	100.0	18.6
- 한국은행 출연금	26,615	31,463	31,463	31,463	100.0	18.2
- 이자수입	23	118	126	118	100.0	413.0
정부내부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6,615	31,463	31,463	31,463	100.0	18.2
여유자금회수	7	1,065	63	63	5.9	800
합계	54,198	64,109	63,115	63,107	100.0	16.4

(자료: 금융위원회)

□ 2024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지출실적은 631억 700만원임.

○ 동 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법정 장려금 지급으로, 2024년도에 624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4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사업비(저축장려금)	54,135	61,806	62,429	62,429	100.0	15.3
기금운영비	-	1	1	-	0.0	-
여유자금운용	63	2,302	685	678	99.0	976.2
합계	54,198	64,109	63,115	63,107	100.0	16.4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4년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자산총액은 6억 7,900만원
으로, 2023년말 6,300만원 대비 6억 1,600만원(순증) 증가함.

○ 2024년도 말 기타 국고금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임.

□ 2024년말 기금의 부채 8억 800만원은 저축기관(농·수협 및 산림조합)에
대한 2024년 12월 기준 저축장려금 정산액 미지급액(2025년 1월 정산 지
급)으로, 2023년말 14억 2,300만원 대비 6억 1,600만원(43.2%) 감소함

○ 2024년 유동부채는 8억 800만원으로 이는 저축장려금의 미정산액인
미지급금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임.

□ 이에 따라 2024년말 기금의 순자산은 △1억 2,900만원으로 2023년말
△13억 6,000만원 대비 12억 3,100만원(90.5%) 증가하였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024년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679	63	616	977.8
	자산계	679	63	616	977.8
부 채	유동부채	808	1,423	△616	△43.2
	부채계	808	1,423	△616	△43.2
순자산	기본순자산	4,068	4,068	-	-
	적립금 및 잉여금	△4,197	△5,428	1,231	22.7
	순자산계	△129	△1,360	1,231	90.5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 중 기금의 재정운영순원가는 616억 9,500만원으로, 2023년 509억 9,100만원 대비 107억 400만원(21%) 증가함.

○ 프로그램 순원가 618억 1,300만원은 2024년 중 저축장려금 지급액 624억 2,900만원 및 2024년말 저축장려금 미정산액 8억 800만원에서 2023년말 저축장려금 미정산액 14억 2,300만원을 차감한 것임.

○ 2024년 여유자금운용수익인 비배분수익은 1억 1,900만원으로 2023년 (1억 3,200만원)에 비하여 1,300만원(9.8%) 감소하였음.

□ 비교환수익 등은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629억 2,600만원)으로, 전년 (540억 6,600만원) 대비 88억 6,000만원(16.4%) 증가하였음.

□ 2024년중 재정운영결과는 △12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400만원 증가하였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61,813	51,123	10,690	20.9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119	132	△13	△9.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1,695	50,991	10,704	21.0
VI. 비교환수익 등	62,926	54,066	8,860	16.4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231	△3,075	1,844	59.9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말 현재 기금의 순자산은 △1억 2,900만원으로 2023년말(△13억 6,000만원)대비 12억 3,100만원(90.5%) 증가하였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1,360	△4,435	3,075	69.3
1. 기본순자산	4,068	4,068	-	-
2. 적립금 및 잉여금	△5,428	△8,503	3,074	13.7
3. 순자산조정	-	-	-	-
II. 재정운영결과	△1,231	△3,075	1,844	60.0
III. 조항항목	-	-	-	-
IV. 기말순자산(I - II + III)	△129	△1,360	1,231	90.5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개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3년·5년 만기의 정기적금을 운영하는 사업임.

○ 동 저축 가입자는 만기도래 시에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2025년 기본금리: 연 3.68%) 외에 가입대상 및 저축기간에 따른 저축장려금(연 0.9%~4.8%)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가입한도는 연간 총 240만원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구 분	일반농어민	저소득농어민
가입대상 (법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24년 기준 월 295,19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24년 기준 월 217,980원 이하)
저축형태	정기적금(3년·5년 만기, 월·분기·반기 적립 방식)	
저축기관금리	연 3.68% (2025년 기본금리)	
저축장려금	계약기간	이자율(%)
		일반 저소득
	3년 만기	연 0.9 연 3.0
	5년 만기	연 1.5 연 4.8
	*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장려금재원	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가입한도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	
취급기관	단위농협·수협, 산림조합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 말 기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총 가입계좌 수는 21만 계좌이며, 총 불입액은 1조 1,542억원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

(단위 : 좌 수,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가입 계좌수(누적)	276,621	267,416	253,570	234,776	221,934	212,041
불입액(누적)	10,319	11,588	12,949	13,196	12,869	11,542

(자료: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 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및 기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 각각 314억 6,300만원, 기금운용 수익금 1억 1,800만원을 재원으로, 총 624억 2,900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였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¹²⁵⁾는 정부가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고, 한국은행이 그 나머지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1의 비율로 출연되고 있음.

12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저축장려금 자원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원	정부 출연금	35,395	33,872	34,112	26,615	27,033	31,463
	한국은행출연금	35,395	33,872	34,112	26,615	27,033	31,463
	기금운용수익	7	17	12	23	132	118
저축장려금지급액		70,815	67,757	68,233	53,260	54,135	62,429
만기 지급액		70,306	64,441	67,045	53,071	49,771	60,627
중도해지 지급액		1,365	1,401	1,186	1,208	1,350	1,185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조성·운용한다는 점에서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구분되고, 특정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며, 쓰고 남은 재원은 미래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원칙 하의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그러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당해 연도의 지출 경비를 충당하여 매해 연말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이며, 기금의 수입(한국은행 출연금)과 지출(저축장려금 지급)의 연계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동 기금은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도 반복적으로 기금 폐지 권고를 받고 있는데, 2024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현재 기금의 운용 방식으로는 농어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 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며, 기금운용방식의 개편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수행 및 기금 폐지를 권고” 하였음.

또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원과 목적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며, 단년도 예산으로 단년도 지출을 하는 기금 구조로 인해 중기 가용자산이 없으므로, 기금으로서의 존치실익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음.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결과¹²⁶⁾〉

연도	평가결과	기금 존치의 타당성
2018	조건부 존치	농어가 재산형성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지를 권유하는 것이 타당하나, 저소득 농어민 중심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전제 하에 조건부존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정지원규모의 단계적 감축 등을 권고함.
2019	폐지 (일몰)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기금의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 만기를 고려하여 폐지(일몰)를 권고함.
2022	폐지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기금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한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 시점에 맞추어 폐지할 것을 권고함. 특수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본 사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므로 기금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2024	폐지	현재 기금의 운용방식으로는 농어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 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며, 기금운용방식의 개편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수행 및 기금 폐지를 권고함.

126) 2024년도 기금존치평가, p.60 (일부 내용 축약)

□ 「국가재정법」 제5조¹²⁷⁾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외적 재정제도인 기금이 방만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동 기금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동 기금에 대한 부처 간 재원조달 및 소관 주체에 대한 이견¹²⁸⁾으로 인해 제도개선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127)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28) 관련 부처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처 이관 및 일반회계 이관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및 위탁기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전환, 소관부처 이관 등에 기본적으로 동의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이관 시에도 한은 출연금 유지 필요
- (한국은행) 재정의 화폐화 우려 등 감안 시 한은 출연은 부적절

제6장 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1. 수입·지출 결산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76년 6월에 설치되었으며,¹²⁹⁾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신용보증료, 구상권회수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신용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구상권관리, 경영지도 등에 지출함.
- 동 기금의 운용주체는 신용보증기금이고, 감독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출연금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2024년 정부출연금 수입은 800억원임.¹³⁰⁾
- 2024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수입실적은 9조 4,449억 800만원으로 계획금액 대비 82.3%를 수납하였음.
- 금융기관 출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수입으로,¹³¹⁾ 2024년에는 1조 2,724억 2,500만원을 수납하였음.

129)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30) 본예산 800억원

13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기준대출금(은행계정 대출채권 중 가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을 제외한 금액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요율(기준요율은 22.5bp이며, 직전반기 출연금액 대비 대위변제금액에 따라 $\pm 1 \sim 2$ bp 차등요율이 가감됨)을 곱하여 산출된 출연료를 수납하고 있음.

○ 구상권회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¹³²⁾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이 동 법 제30조¹³³⁾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징수하는 수입으로 2024년에는 2,675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신용보증료는 기금의 보증을 받는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 수입으로 2024년에는 8,451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음.

〈신용보증기금 2024회계연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수납률 (D/C)	
자체수입	3,158,517	3,367,980	3,367,980	3,670,628	109.0	16.2
－ 금융기관 출연금	1,167,910	1,097,223	1,097,223	1,272,425	116.0	8.9
－ 구상권회수	254,133	344,372	344,372	267,528	77.7	5.3
－ 신용보증료	858,874	1,098,600	1,098,600	845,177	76.9	△1.6
－ 이자수입	193,844	219,055	219,055	270,066	123.3	39.3
－ 기타수입	683,756	608,730	608,730	1,015,432	166.8	48.5
정부내부수입	334,998	80,000	80,000	80,000	100.0	△76.1
－ 정부출연금	83,700	80,000	80,000	80,000	100.0	△4.4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250,000	－	－	－	－	순감
－ 공자기금예탁이자	1,298	－	－	－	－	순감
여유자금회수	6,971,548	8,022,295	8,022,295	5,694,280	71.0	△18.3
합 계	10,465,063	11,470,275	11,470,275	9,444,908	82.3	△9.7

(자료: 신용보증기금)

- 132)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3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024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지출실적은 9조 4,449억 800만원으로
계획금액 대비 82.3%를 지출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사업비로 보증부실에 따른 대위변제금 2조 9,583억 7,700만원, 구상권관리와 보증료환급 등 기타사업비 4,620억 3,200만원 등 총 3조 4,204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로 3,732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음.

〈신용보증기금 2024회계연도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집행률 (D/C)	
사업비	2,703,024	4,116,079	4,116,929	3,420,409	83.1	26.5
- 대위변제	2,287,255	3,565,457	3,565,457	2,958,377	83.0	29.3
- 기타사업비	415,769	550,622	551,472	462,032	83.8	11.1
기금운영비	407,820	367,551	380,999	373,250	98.0	△8.5
- 인건비	265,840	275,035	275,035	273,004	99.3	2.7
- 기타운영비	141,980	92,516	105,964	100,246	94.6	△29.4
여유자금운용	7,354,219	6,986,645	6,972,347	5,651,249	81.1	△23.2
합 계	10,465,063	11,470,275	11,470,275	9,444,908	82.3	△9.7

(자료: 신용보증기금)

2. 재무제표

□ 2024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15조 7,749억 8,500만원이고, 부채는 3조 5,783억 5,600만원이며, 순자산은 12조 1,966억 2,900만원임.

○ 2024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15조 7,749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99억 700만원(3.3%) 증가하였는데, 자금운용손익 증가 등으로 금융성자산이 늘고, 구상채권이 확대된 것에 주로 기인함.

○ 2024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부채는 3조 5,783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0억 7,200만원(1.2%)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증료 선수수익이 감소하였으나, 부실 발생 증가 등으로 보증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함.

○ 2024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순자산은 12조 1,966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78억 3,500만원(3.9%)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운영 결과 3,721억 4,100만원 흑자와 투자증권 평가손익 80억 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함.

〈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13,575,522	12,185,559	1,389,963	11.4
	투자자산	1,573,090	2,425,635	△ 852,545	△ 35.1
	일반유형자산	533,865	545,685	△ 11,820	△ 2.2
	무형자산	5,760	7,034	△ 1,274	△ 18.1
	기타비유동자산	86,748	111,165	△ 24,417	△ 22.0
	자산계	15,774,985	15,275,078	499,907	3.3
부 채	유동부채	601,304	619,185	△ 17,881	△ 2.9
	장기충당부채	2,954,832	2,850,544	104,288	3.7
	기타비유동부채	22,220	66,555	△ 44,335	△ 66.6
	부채계	3,578,356	3,536,284	42,072	1.2
순자산	기본순자산	16,472,650	16,472,650	-	-
	적립금 및 잉여금	△ 4,828,375	△ 5,280,516	452,141	8.6
	순자산조정	552,354	546,660	5,694	1.0
	순자산계	12,196,629	11,738,794	457,835	3.9

(자료: 금융위원회)

□ 2024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3,721억 4,100만원
 흑자로 전년 대비 2,989억 8,500만원(44.5%) 감소함.

○ 2024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결과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것은, 대손상각비 증가로 인한 프로그램충원가가 확대됨에 기인함.

〈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1,798,203	876,028	922,175	105.3
1. 프로그램 총원가	2,888,751	2,150,408	738,343	34.3
2. 프로그램 수익	1,090,548	1,274,380	△183,832	△14.4
II. 관리운영비	125,816	142,330	△16,514	△11.6
III. 비배분비용	36,046	30,918	5,128	16.6
IV. 비배분수익	782,186	387,752	394,434	101.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177,879	661,524	516,355	78.1
VI. 비교환수익 등	1,550,021	1,332,650	217,371	16.3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72,141	△671,126	298,985	44.5

(자료: 신용보증기금)

□ 2024년 신용보증기금의 기말 순자산은 12조 1,96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 순자산 11조 7,387억 9,400만원 대비 4,578억 3,500만원 (3.9%) 증가하였음.

〈신용보증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11,738,794	10,563,727	1,175,067	11.1
1. 기본순자산	16,472,650	16,472,650	-	-
2. 적립금 및 잉여금	△5,280,516	△6,035,342	754,826	12.5
3. 순자산조정	546,660	126,419	420,241	332.4
II. 재정운영결과	△372,141	△671,126	298,985	44.5
III. 조정항목	85,694	503,941	△418,247	△83.0
IV. 기말순자산(I - II + III)	12,196,629	11,738,794	457,835	3.9

(자료: 신용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

□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금융기관의 출연금과 보증료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되는데, 2024년 정부·금융기관 출연금은 1조 6,300억원으로 전년도 정부·금융기관 출연금 1조 4,151억원 대비 2,149억원 증가하였음.

○ 2024년말 기준 기금조성현황은 66조 6,740억원으로, 정부출연금(25.2%)과 금융기관출연금(35.9%)이 전체의 61.1%를 차지하고, 보증료 등 수입은 25.7%를 차지함.

〈신용보증기금의 조성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누계(구성비)
출연금	정부	151,582	4,406	10,650	837	800	168,275(25.2)
	금융기관등	189,105	10,415	11,113	13,314	15,500	239,447(35.9)
	소계	340,687	14,821	21,763	14,151	16,300	407,722(61.1)
보증료 ¹⁾		138,099	7,813	8,515	8,448	8,155	171,030(25.7)
기 타 ²⁾		65,783	2,409	2,906	6,318	10,572	87,988(13.2)
합 계		544,569	25,043	33,184	28,917	35,027	666,740(100.0)

주1) 보증수익, 사용료·수수료 수익 등

주2) 이자수입, 자산처분이익, 기타수익 등

(자료: 신용보증기금)

□ 최근 6년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조 7,184억원 규모였던 신규보증은 2024년 15조 8,55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보증잔액은 52조 2,161억원에서 79조 4,711억원으로 52.2% 상승하였음.

-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2019년 5조 3,377억원 규모였으나, 2024년에는 12조 1,79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기금의 운용배수는 9.8배에서 6.5배로 감소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규보증	127,184	264,977	220,199	167,470	157,640	158,551
보증잔액(A)	522,161	671,531	785,888	833,689	816,227	794,711
기본재산(B)	53,377	81,922	88,791 ^{주)}	105,482 ^{주)}	117,227 ^{주)}	121,795 ^{주)}
운용배수(A/B)	9.8	8.2	8.9	7.9	7.0	6.5

주1) 총보증 기준

주2) 기본재산에서 팩토링은 제외('21년 101억원, '22년 155억원, '23년 161억원, '24년 171억원)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규모는 2020년 1조 3,594억원에서 2024년 2조 2,28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대위변제 누계액은 48조 9,493억원임.

- 2024년도의 구상권 발생액은 대위변제 규모와 동일한 2조 2,283억원이며, 연도중 구상권 회수액은 3,097억원으로, 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은 13.90%임.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관리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위변제		13,594	12,111	11,509	17,205	22,283
누계(A) ¹⁾		426,385	438,496	450,005	467,210	489,493
구상권 발생액(B)		13,594	12,111	11,509	17,205	22,283
회수	연도중(C)	3,993	4,266	3,625	3,156	3,097
	누계(D)	138,353	142,619	146,244	149,400	152,497
구상권 잔액		105,279	94,237	82,962	76,344	80,447
대위변제 대비 회수율 ²⁾ (D/A)		32.45	32.52	32.50	31.98	31.15
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C/B)		29.37	35.22	31.50	18.34	13.90

주1) 누계액 중 95년 이전 자료는 확인 가능한 통계수치로 작성

주2) 구상채권 회수율=구상(특수, 포기 포함) 채권 회수 누계액/대위변제 누계액 ×100

(자료: 신용보증기금)

II. 검토의견

1. 정부출자수입¹³⁴⁾: 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부출자수입”은 출자회사 주식, 보증연계투자 주식,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주식 배당금 및 유동화회사보증 SPC출자금 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5억 4,200만원이었으나, 302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계획액 대비 수납률 5,583.4%)되었음.

〈2024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액		계 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정부출자수입	542	542	542	30,262	30,262	-	-	478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 2024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수입 과목의 세부적인 계획액 편성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 계획액은 출자회사 주식 배당금 5억 200만원, 보증연계투자 주식 배당금 4,000만원 등 총 5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302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여 계획현액 대비 5,583.4%의 수납률을 기록하였음.

134) 세부사업: 정부출자수입(52-521)

〈2020년 이후 정부출자수입 계획 대비 징수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정부출자수입	386	34,412	431	1,530	375	15,815	510	44,974	542	30,262
·출자회사 주식 배당금	273	380	315	467	274	510	452	532	502	422
·보증연계투자 주식 배당금	113	32	116	22	101	27	58	71	40	21
·유동화회사보증 SPC출자금 등	-	34,000	-	456	-	-	-	14,850	-	15,578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주식 배당금	-	-	-	585	-	15,278	-	29,521	-	14,241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당초 계획액 대비 수납 실적이 높은 이유는 수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유동화회사보증 SPC 출자금 및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주식 배당금이 각각 155억 7,800만원, 142억 4,100만원 징수되었기 때문임.

- 유동화회사보증과 관련하여 SPC 출자금이란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한 P-CBO 만기 도래 후 해산 및 청산하는 과정에서 SPC가 보유한 자산이 부채보다 큰 경우 잉여 재원을 배당받는 것을 의미하고, 대물주식 배당금이란 신용보증기금이 P-CBO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후 SPC가 보유한 유동화자산(부실편입기업의 출자전환주식 등)을 양도받은 후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은 유동화회사보증과 관련한 SPC 출자금 및 대물주식 배당금

은 2020년 이후 각 1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정부출자수입 수입 과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그 동안 예측의 불확실성 등을 사유로 해당 항목을 수입 과목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았으나, 향후 수입 추계시 시장상황, SPC 자산 현황 및 부실 기초자산 편입기업의 배당 가능성을 정밀하게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기금운용계획에서의 수입 과목의 정확한 추계는 기금의 지출규모, 여유자금 운용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자수입의 계획 대비 징수 실적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¹³⁵⁾: 채권시장안정 유동화보증계정의 예상부실을 산정 방식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만기 도래 시, 선순위유동화증권의 상환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971억 400만원 중 1,335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33.6%)되고, 2,635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397,104	397,104	-	397,104	133,511	-	263,593	546,887

(자료: 신용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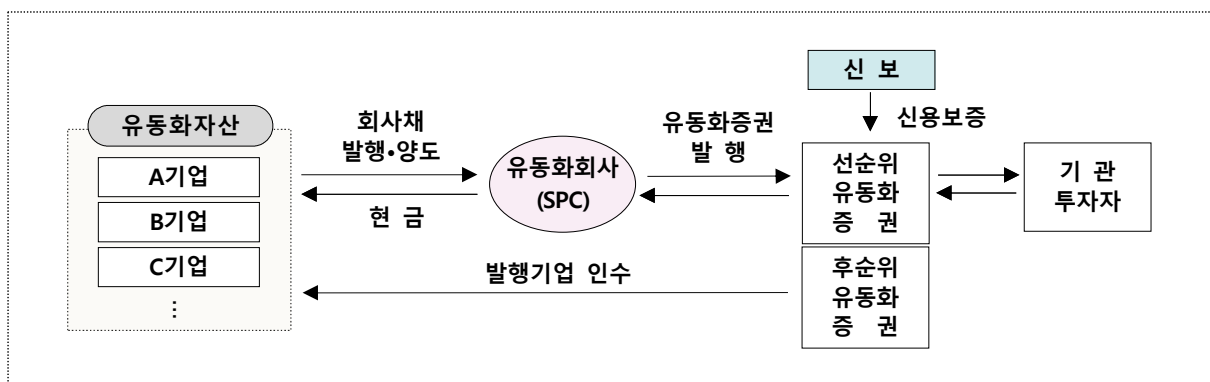
135) 세부사업: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2431-301)

2) 검토의견

□ 2024회계연도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크게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과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액은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 923억 2,500만원, 채권시장안정계정 3,04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유동화회사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함.

〈유동화회사보증 기본구조〉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은 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은 대부분 2020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¹³⁶⁾을 수행하고 있음.

-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경우 계획액 3,048억원 중 582억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19.1%에 불과한 상황이며, 2023년의 경우에는 2,10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었음.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 세부 집행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유동화 계정구분	예상 대위변제액 (A)	실제 대위변제액 (B)	불용액(A-B)	집행률
2023년	일반	1,171	346	825	29.5%
	채권시장안정	2,109	0	2,109	0.0%
2024년	일반	923	754	169	81.7%
	채권시장안정	3,048	582	2,466	19.1%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당초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대위변제 규모가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대

136) 코로나 19 피해 대응 유동화회사보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되어 현재는 공급이 종료되었고, 2023년 신설된 채권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에 편입되어 있음. 2023년부터 공급된 채권시장 안정 유동화 회사보증은 차환 2년 만기가 도래하는 2025년부터 부실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시작될 예정임.

위변제 규모를 기존 발생한 부실금액에 부실발생 예상금액을 더한 후 후순위유동화증권 규모(버퍼) 만큼을 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선순위유동화증권과 후순위유동화증권으로 구분되어 발행되며, 이 중 선순위유동화증권은 투자자 등에게 발행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나, 후순위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을 발행한 기업이 인수하고 신용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2024년 채권시장안정계정 대위변제금액 산출 방식〉

대위변제 예상액 3,047억 7,900만원	=	기 발생 부실금액 361억원	+	부실발생 예상금액 3,766억 8,500만원	-	버퍼 (Buffer) 1,080억 600만원
-------------------------------	---	-----------------------	---	--------------------------------	---	--------------------------------

(자료: 신용보증기금)

- 2024회계연도 계획안의 경우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은 기존 부실금액 361억원, 부실발생 예상금액 3,766억 8,500만원, 버퍼 1,080억 600만원을 기준으로 3,047억 7,900만원이 산출되었는데, 이 중 부실발생 예상금액이 과다 산출된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보면, 부실발생 예상금액은 정상 기초자산에 대한 연차별 경험부실률과 잔여만기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경우 신규와 차환,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을 구분하여 예상 부실률을 적용하고 있음.

-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예상부실률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예상부실률과 동일한 수준이나, 중견·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예상부실률을 적용하고 있음.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 예상부실률〉

(단위: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일반계정		신규	1.62	3.03
		차환	6.77	6.63
채권시장 안정계정	중소기업	신규	1.62	3.35
		차환	6.77	6.63
	중견·대기업	신규	3.64	6.81
		차환	15.19	14.89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러한 결과는 예상부실률을 산출하는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예상부실률은 최근 10년간 경험부실률을 사용하되 과거 연도에 비해 최근 연도에 편입된 기초자산의 부실발생 금액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산출¹³⁷⁾하고 있는데, 중견·대기업의 경우 과거 일부 기업의 회사채 부실 발생¹³⁸⁾으로 대량의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이 경험 부실률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137) 다만,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은 최근 10년간 경험부실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속인수 채권과 시장안정계정의 과거 경험부실률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음.

138) 2015년 동부제철(주) 2,053억원, 2016년 현대상선(주) 4,675억원, 2016년 (주)한진해운 3,705억원 등

□ 현행 예상부실률을 산출하는 방식은 과거의 부실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예상부실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특정 사건으로 인해 대량의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상부실률이 구조적으로 과다추계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예상부실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과거 경험부실률 중 특정 사례로 인해 전반적으로 과다추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업무용건물¹³⁹⁾: 광진지점 리모델링 및 본점 주차타워 공사 지연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업무용건물” 사업은 점포 이전 등을 위해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노후화된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19억원 중 23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20.1%) 되고, 95억 200만원이 이월,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업무용건물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업무용건물	11,900	11,900	-	11,900	2,396	9,502	2	14,294
- 광진지점 리모델링	6,000	6,000	-	6,000	637	5,362	1	5,250
- 본점 주차타워 신축	5,900	5,900	-	5,900	1,759	4,140	1	-

(자료: 신용보증기금)

139) 세부사업: 업무용건물(2431-305)

2) 검토의견

- 2024회계연도 업무용건물 사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를 위해 60억원, 본점 주차타워를 신설하기 위한 59억원 등 총 119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경우 6억 3,700만원(10.6%)을 집행하고 53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고 본점 주차타워 신설 공사의 경우 17억 5,900만원(29.8%)을 집행하고 41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음.
-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는 광진지점(서울 광진구 소재)¹⁴⁰⁾의 건물이 1992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하는 대수선 공사비용으로, 2024회계연도에 편성되어 이월된 금액 외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추가 공사비 52억 5,0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음.
- 본점 주차타워 신축 공사는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의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대하기 위해 유희부지 등을 활용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용임.

140) <광진지점 건물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소 재 지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20(구의동)	지하철역 도보 18분*
대지면적	2,154.40m ² (652평)	공시지가: 약186억원
연면적	8,284.65m ² (2,506평)	주차 45대(외부 4대)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6층	1~4층 업무시설
신축일	1992년 12월 21일	32년 경과

* 2호선(구의역) 1.2km / 5호선(아차산역) 1.1km / 7호선(어린이대공원역) 1.2km
(자료: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개요〉

구 분	공사 前		공사 後		증축 등*
옥탑	물탱크실		창고		42.52m2
6층	옥상정원, 공조기실, 기계실		옥상정원, 회의실		265.56m2
5층	농구장(제외)	샤워실, 휴게실	아트리움	다목적 로비	11.05m2
4층	이행전담팀, 임금피크직원		스타트업기업 입주공간		11.05m2
3층	동부채권관리단		동부채권관리단		11.05m2
2층	광진지점		로비 (신설)	광진지점	△49.43m2
1층	기업은행, 동부신용보험1센터			임피, 보험센터	△17.30m2
지하1층	주차 25대		주차 27대		△28.79m2
지하2층	주차 16대	전기실, 기계실	주차 18대	전기실, 기계실	△27.66m2
연면적	8,284.65m2 (2,506평)		8,460.18m2 (2,559평)		총 175.53m2
엘리베이터	1대		2대		1대 추가
주차대수	지하41대, 지상4대		지하45대(전기차 2대 포함)		차단기설치
비고	▪ 외장재 전면교체(기존 커튼월 존치) 및 일부 증축 ▪ 엘리베이터 1대 신설, 기존 기계, 전기, 통신, 소방시설 전면 교체 등				

(자료: 신용보증기금)

〈본점 주차타워 신축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건축(대지)면적	1,531.47m ² (463평)	테니스장, 조경공간 일부
연면적	4,464.92m ² (1,351평)	1층 453평, 2~3층 각 449평
건축규모	지상 3층 (11.45m)	옥상포함 총 4개층 주차
주차면수	133대	일반 124, 전기차 7, 장애인 2
기타시설	엘리베이터, 전기차 충전시설, 보안용 CCTV 등	

(자료: 신용보증기금)

□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와 본점 주차타워 신축을 위한 계획액이 차년도로 이월된 것은 당초 2024회계연도 계획안을 편성하던 당시 공사 계획에 비해 설계 및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보면,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경우 당초에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마친 후 5월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하여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024년도 공사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설계 및 인·허가가 지연되어 2024년 11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하였고, 공사기간도 연장되어 2025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임.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당초 계획 대비 추진 현황〉

구분	세부내용	당초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및 공사비 추정	2023. 12월	2023. 12월
설계공모	■ 제안공모 및 선정(심사위)	2024. 2월 ~2024. 4월	2024. 2월
실시설계 용역	■ 실시설계		2024. 8월
인·허가	■ 인·허가(경관심의 포함)		2024. 10월
공사입찰 및 계약	■ 시공사 선정(입찰)	2024. 5월	2024. 11월
착공	■ 착공신고 및 구조물 철거	2024. 5월 ~2024. 12월	2024. 11월 ~2025. 11월
시공	■ 공종별 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 폐)		(2025. 4월말 공정률 31.78%)
추가설계	■ 제안공모(2차) 및 설계	-	2025. 2월 ~2025. 6월
준공	■ 사용승인 및 세금납부	2024. 12월	2025. 12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 본점 주차타워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마친 후 6월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하여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024년도 공사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설계 및 인·허가가 지연되어 2024년 10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하였고, 공사기간도 연장되어 2025년 9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점 주차타워 공사 당초 계획 대비 추진 현황〉

구분	세부내용	당초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및 공사비 추정	'23.12월	'23.12월
설계공모	▪ 제안공모 및 선정	'24. 2월	'24. 2월
설계 및 인·허가	▪ 설계용역 및 BF인증 심의 ▪ 건축 인·허가	'24. 3~5월	'24. 3~8월
공사입찰 및 계약	▪ 시공사 선정(입찰)	'24. 6월	'24. 9월
시공	▪ 공종별 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24. 6~12월	'24.10월 ~'25. 9월 ('25. 5월말 공정률 53.2%)
준공	▪ 사용승인 및 세금납부	'24.12월	'25. 9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 당초 계획과 달리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와 본점 주차타워 신축 공사의 설계 및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유는 2024년도 계획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에 필요한 서울시 경관심의(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및 BF 인증(본점 주차타워 신축) 등 필요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함.

○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141) 제24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대상이 되나,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도 계획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2024년 상반기 중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종료한 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사실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고 실제 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였으며, 그 결과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이 당초 2024년 4월에서 10월로 연장되었고, 경관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고, 2025년도 계획안에 추가 공사비용을 반영하였음.

○ 본점 주차타워 신축 공사의 경우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2)에 따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141)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시가지·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BF인증) 의무 대상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2024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6월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였음.

- 그 결과 BF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설계 및 인·허가가 지연되었으며, BF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공사로 인해 공사 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되었음.

□ 이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이 공사의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로 계획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2024년도에 완공할 것을 전제로 편성된 계획액의 상당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효율적인 계획액의 집행과 공사의 효과성을 저해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경영지도¹⁴³⁾: 신용카드 수수료 과다 편성 지양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영지도”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잡매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창업종합지원 등 다양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료 수입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87억 1,000만원 중 163억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1%)되고, 24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경영지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경영지도	18,710	18,710	-	18,710	16,304	-	2,406	20,252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 등으로부터 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보증료는 신용카드, 펌뱅킹¹⁴⁴⁾, 현금 및 계좌이체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수납할 수 있음.

143) 세부사업: 경영지원(2431-307)

144) 펌뱅킹은 기업 또는 기관과 금융기관이 통신망을 직접 연결하여 자금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

- 2024년의 경우 보증료 수입은 7,363억 4,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보증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증료 수입	672,842	702,076	721,745	724,194	736,348

(자료: 신용보증기금)

- 경영지도 사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를 수납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수납받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

- 신용카드 수수료 지급을 위한 계획액은 2022년 30억 200만원, 2023년 31억 6,400만원, 2024년 36억 6,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실제 신용카드 수수료 집행액은 2022년 19억 700만원, 2023년 17억 500만원, 2024년 15억 1,5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경영지도 사업 중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A)	결산 (B)	차이 (B-A)	예산 (A)	결산 (B)	차이 (B-A)	예산 (A)	결산 (B)	차이 (B-A)
경영지도	15,920	13,960	△1,960	16,082	15,952	△130	18,710	16,304	△2,406
신용카드 수수료	3,002	1,907	△1,095	3,164	1,705	△1,459	3,660	1,515	△2,145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신용카드 수수료 집행액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보증료를 수납할 수 있는 네 가지 방식 중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펌뱅크 방식의 수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연도별 수납방법에 따른 보증료 수납액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이체 방식의 보증료 수납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펌뱅크를 이용한 보증료 수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수납방법에 따른 보증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펌뱅크	407,543	475,626	532,149	561,512	583,453
신용카드	107,513	103,407	84,520	75,796	67,733
기타	157,786	123,043	105,076	86,886	85,162
합계	672,842	702,076	721,745	724,194	736,348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카드사에 보증료의 평균 2.28%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으나, 펌뱅크를 통해 납부할 경우 수수료는 건당 최대 200원에 불과함.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증료 납부 금액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¹⁴⁵⁾: 리스크 관리 철저 및 임시전용 재원 상환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위탁보증에 대해 수탁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 5,554억 7,400만원 중 4,729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1%)되고, 825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555,474	555,474	-	555,474	472,926	-	82,548	347,946

(자료: 신용보증기금)

145) 세부사업: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2431-316)

2) 검토의견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2020년 5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으며, 2021년 프로그램의 개편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의 잔여한도 2.85조원을 활용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음.
- 사업 기간 동안 동 프로그램을 통해 총 7.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부터는 추가 보증공급 없이 피보증인이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위변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개요〉

구 분	소상공인위탁보증	
	기본 프로그램	임차 프로그램
지원대상	업력 6개월 이상의 개인기업인 소기업 (도박·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 제외)	기본 프로그램 대상 기업 중 집합 제한·경영위기업중 영위 임차 기업
지원한도	1,900만원	1,900만원
보증비율	95%	
보증기간 및 구조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5년 만기) ※ 당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 만기)에서 거치기간 1년 연장(2022.4월)	
보증료율	- 1년차 0.3% - 2~5년차 0.9%	- 1~2년차 면제 - 3~5년차 0.4%
보증심사	- 수탁은행에서 심사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 국 세 · 지방세 체납, 신용정보조회서상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심사 - 현장조사 미실시	

(자료: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보증과는 달리 수탁은
 행을 통해 보증심사 및 보증부대출이 이루어지는 ‘위탁방식’으로 진행
 하였음.

○ 이는 신용보증기금과 수탁은행 간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
 탁은행을 통해 보증심사 및 보증부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용
 보증기금의 현장조사와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 규모,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변동 내용 등을 수반하는 일반보증과 달리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경우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함.

〈일반보증과 위탁보증 주요 심사항목 비교〉

심사 항목	일반보증	위탁보증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비실시
▪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적용	비적용
▪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 규모	적용	비적용
▪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변동 내용	적용	비적용
▪ 신용도 취약기업 해당 여부	적용	비적용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 보유	적용	완화*
▪ 최근 1년 이내 신용관리정보 보유	적용	완화*
▪ 최근 1년 이내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적용	완화*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적용	적용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적용	적용

주: 검토일 기준 저축 여부를 심사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수탁은행을 통한 위탁방식으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고, 위탁보증에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부실위험은 일반보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 결과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순자산은 잠식된 상태이고, 대위변제액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 재원도 부족한 상황임.

〈일반보증과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 비교〉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0.2	1.7	3.9	13.1	16.7
	대위변제율	0.04	1.1	2.6	10.8	19.7
일반보증	부실률	2.4	2.0	2.0	3.3	3.6
	대위변제율	1.9	1.5	1.4	2.4	3.2

(자료: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을 위해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600억원, 2021년 본예산으로 1,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으나, 2023년 8월부터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이 자본잠식 상태가 됨에 따라 2024년 예산으로 800억원의 출연금을 추가 편성한 바 있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관련 출연금 규모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출연금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4,600
2021년	본예산	1,500
2024년	본예산	800
합계		6,900

(자료: 신용보증기금)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에서 발생한 누적 부실은 1조 3,499억원으로, 2024년에 대위변제를 위한 현금 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일반보증 계정에서 2,000억원을 임시 전용한 바 있음.

- 이러한 일반보증 계정으로부터의 임시 전용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대위변제 종료 시까지 약 1,739억원의 현금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이에 따라 잔여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환보증 계정’으로부터 일부 재원을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전용할 것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대환보증 계정’의 잔여재원 추정액 중 2,000억원을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전용하였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 재무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3(전망)
누적부실	1,324	3,863	9,749	13,499	15,475	16,673
순자산	3,079	1,527	△1,100	△2,778	△3,424	△4,087
기말현금				△793	△2,562	△3,739
일반계정 임시전용 반영 시 (2024년)	8,407	6,322	1,803	1,207	△562	△1,739
대환보증계정 전용 반영 시 (2025년)					1,438	261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부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2024년에 일반보증 계정으로부터 임시로 전용한 2,000억원에 대한 상환 방안¹⁴⁶⁾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일반보증 계정은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증 배수를 일반적으로 12.5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임시 전용한 2,000억원은 실질적으로 일반 보증 공급 규모가 2조 5,000억원 감소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음.

146)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에 통보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지침」에서는 “본 계정(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에 대한 '25년도 및 '25년도 이후 정부 출연예산 확정 시 전용분은 “일반보증 계정”으로 재전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6. 대환보증 대위변제¹⁴⁷⁾: 프로그램 수요에 비해 과다 추계된 정 부출연예산 편성 부적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한 위탁보증에 대해 수탁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 2,544억 3,600만원 중 1,236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48.6%)되고, 1,307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대환보증 대위변제	254,436	254,436	-	254,436	123,679	-	130,757	326,100

(자료: 신용보증기금)

147) 세부사업: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

2) 검토의견

-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극복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해 상환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도입되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연 최대 6.5%(금리 최대 5.5%, 보증료 연 1%)로 5년간 상환(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개인 5천만원, 기업 1억원 한도임.
-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재원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800억원, 2023년도 예산 800억원 등 총 7,600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교부받아 마련되었으며, 공급액의 9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총 9.5조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었음.
- 한편,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3월과 8월, 2024년 3월 등 총 3회에 걸쳐 각각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환대상채무, 접수 및 상환기한, 대출한도 등을 변경한 바 있음.
- 2023년 3월에는 코로나 19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접수기한도 기존 2023년말에서 1년 연장했으며, 상환기간은 10년(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한도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하였음.

- 2023년 8월에는 대환대상 채무를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사업목적 가계대출로 확대하고, 2024년 3월에는 대환대상 채무의 취급 기준일을 1년 확대하고, 최초 1년간 보증료를 0.7%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음.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개요〉

구 분	2022년 8월 도입	2023년 3월	2023년 8월	2024년 3월
지원대상	<u>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u>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u>전체</u>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환대상 채무	'22. 5. 31.까지 취급된 고금리 (연 7% 이상) 사업자대출		<u>'22. 5. 31.까지</u> 취급된 고금리 (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및 <u>사업목적 가계대출</u>	<u>'23. 5. 31.까지</u> 취급된 고금리 (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및 <u>사업목적 가계대출</u>
접수기한	2023년 말	2024년 말		
총량한도	8.5조원	9.5조원		
상환구조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10년(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개인기업) 5천만원, (법인기업) 1억원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금리	최대 5.5%			최대 5.0%
보증료율	연 1% 고정보증료율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최초 1년간 보증료 0.7% 추가 감면 (은행 출연)
보증비율	90%			
보증방식	위탁보증(15개 은행에 업무 위탁)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iM뱅크(舊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등 제도를 변경한 것은 당초 계획한 공급목표 대비 공급 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말까지 8조 5,000억원, 2024년에는 9조 5,000억원(누계기준)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을 보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연도별 공급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보증공급 계획(a) ^{주1)}	8,500,000	9,500,000	9,500,000
신규 보증공급액 ^{주2)}	232,085	933,288	494,712
누적 신규 보증공급액(b)	232,085	1,165,373	1,660,085
계획 대비 보증 공급 실적(b/a)	2.7	12.3	17.5

(자료: 신용보증기금)

주1) 보증공급 계획: 정부출연금 [2022년 추경(6,800억원) + 2023년 본예산(800억원)] × 운용배수 (12.5배)

주2) 신규보증 운용기간: 2022년 9월 ~ 2024년 12월

□ 보증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유사 대환프로그램을 출시하여 대환대출의 수요가 분산되었고, 이들 유사 프로그램에 비해 상품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함.

- 최초 설계된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경우 대환 이후의 대출 금리는 최대 5.5%, 보증료율은 연 1%로 비용부담 비율이 최대 6.5%였으나, 3차례 개편을 거치면서 대출 금리는 최초 1년간 최대 5.0%로 낮추고, 보증료는 최초 1년간 면제하고 2~3년차는 0.3%를 인하한 바 있음.
- 이에 반해 유사한 시기에 운영된 다른 유사 프로그램의 경우 대환 이후의 금리는 최대 연 4.5% 수준에 불과하고 보증료도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됨.

〈소상공인 대환보증, 소상공인 대환대출, 기회UP 특례보증 비교〉

구 분	신보 (저금리 대환보증)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경기신보 (기회UP 특례보증)
대환 금리	· (1년) 5.0% 고정 · (2년) 5.5% 고정 · (3~10년) 시장금리 적용	· (1~10년) 4.5% 고정	· 시장금리 - 2%(이차보전) * 2024년 9월 기준 3.6%
보증 료율	· (1년) 0% (2~3년) 0.7% (4~10년) 1.0%	· 해당 없음	· 0.5%

(자료: 신용보증기금)

- 당초 계획한 9조 5,000억원의 공급 계획 대비 17.5%에 해당하는 1조 6,600억원 수준의 공급만 이루어진 후 2024년말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 재정으로 투입한 7,6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잔여 재원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인 대환보증 예상 잔여재원의 일부를 현금 재원이 부족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전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사업이 종료되는 2034년까지 소상공인
대환보증 계정에서 약 2,119억원의 잔여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하고, 이 중 2,000억원을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전용하였
음.

〈소상공인 대환보증 잔여자원 예상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e	2026년 ^e	2027년 ^e	2028년 ^e	2029년 ^e	2030년 ^e	2031년 ^e		2034년 ^e
잔여자원	7,109	5,968	4,909	3,937	3,223	2,744	2,395	2,125	...	2,119

(자료: 신용보증기금)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과
같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당초
수요에 비해 과도한 정부 재정을 출연받아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제7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개 요

1. 수입·지출 결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은 「예금자보호법」¹⁴⁸⁾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기금관리주체)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정리하고,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예금보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하였음.¹⁴⁹⁾
- 상환기금은 「예금자보호법」¹⁵⁰⁾에 따라 2027년 말 청산 예정이며, 그 자산 및 부채는 공적자금상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가 정해짐.

148)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149) 이와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에는 2003년 1월 1일 통상적인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이 신설되었음.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부칙 제9조 (상환기금의 계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제외한다)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

150)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 2024년도 상환기금 수입실적은 변경계획금액 5조 5,810억원 대비 2.5% 감소한 5조 4,432억원임.

〈2024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자체수입	2,963,109	3,869,399	3,869,399	3,142,440	81.2	6.1
정부출자수입	277,801	191,028	191,028	214,490	112.3	△22.8
이자·재산수입	107,902	101,079	101,079	130,723	129.3	21.1
법정부담금 등	2,497,406	2,544,120	2,544,120	2,580,600	101.4	3.3
재고자산매각대	80,000	1,033,172	1,033,172	216,626	21.0	170.8
여유자금회수	1,941,526	771,631	1,711,631	2,300,794	134.4	18.5
합계	4,904,634	4,641,030	5,581,030	5,443,234	97.5	11.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자체수입 3조 1,424억원은 보유주식 매각 등에 따른 재고자산매각대 2,166억원, 정부 출자금융회사의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입인 정부 출자수입이 2,145억원, 이자·재산수입 1,307억원, 부보금융기관의 특별 기여금인 법정부담금 등 2조 5,806억원으로 구성됨.

○ 여유자금회수는 2023년도 기금운용 결과에 따른 기초보유자금 2조 3,008억원임.

□ 2024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은 변경계획금액 5조 5,810억원 대비 2.5% 감소한 5조 4,432억원임.

〈2024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집행률 (D/C)	
사업비 (금융구조조정지원)	277	3,652	3,652	192	5.3	△30.7
정부내부지출(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600,000	4,250,000	5,190,000	5,190,000	100.0	99.6
기금운영비	3,563	3,450	3,450	3,028	87.8	△15.0
여유자금운용	2,300,794	383,928	383,928	250,013	65.1	△89.1
합계	4,904,634	4,641,030	5,581,030	5,443,234	97.5	11.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사업비는 기타정리자문경비로 1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소송종결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집행률은 5.3%임.
- 정부내부지출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¹⁵¹⁾한 것으로 2024년도에 5조 1,900억원을 전출함.
 - 여유자금의 전출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23년 국회 결산 지적 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9,400억원을 추가 편성
- 기금운영비는 30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 28억 4,400만원, 기금관리비 2억 5,900만원이 포함됨.
- 2024년도 기금운용 결과에 따른 기말보유자금인 여유자금운용은 2,500억원임.

151) 상환기금은 2021년 8월에 공적자금 부채(82.4조원)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고, 부채상환 완료 이후 법정 부담금(금융회사 특별기여금) 수입 등 여유재원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음.

2. 재무제표

□ 2024년말 현재 자산총액은 1조 3,714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조 3,284억원 (62.9%) 감소하였음.

○ 출자 주식 매각 등으로 인한 투자자산 2,447억원 감소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등으로 유동자산이 2조 806억원이 감소한데 기인함.

□ 2024년말 현재 부채총액은 0원으로, 전년말 대비 변동사항 없음.

□ 2024년말 현재 순자산총액은 1조 3,714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조 3,284 (62.9%) 감소하였음.

○ 이는 재정운영결과 2조 9,422억원 흑자(+요인)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5조 1,900억원(-요인)에 주로 기인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328,568	2,409,177	△2,080,609	△86.4
	투자자산	1,042,113	1,286,830	△244,717	△19.0
	기타비유동자산	692	3,730	△3,038	△81.4
	자산계	1,371,373	3,699,737	△2,328,364	△62.9
부 채	유동부채	-	-	-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부채계	-	-	-	-
순자산	기본순자산	52,306,380	52,306,380	-	-
	적립금 및 잉여금	△50,716,107	△48,468,288	△2,247,819	4.6
	순자산조정	△218,900	△138,354	△80,546	58.2
	순자산계	1,371,373	3,699,737	△2,328,364	△62.9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4년 재정운영결과는 △2조 9,422억원(흑자)으로 특별기여금수익(2조 5,745억원) 및 배당금수익(2,145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음.

- 프로그램순원가는 대손충당금 전입 등 프로그램비용(754억원)에서 배당금수익, 지원자산 처분이익 등 프로그램수익(3,637억원)을 차감한 결과 △2,883억원이 발생하였음.

- 재정운영순원가는 관리운영비(30억원)와 운용자산 이자수익(824억원) 등을 반영한 결과 △3,677억원이 발생하였음.

- 비교환수익은 부담금수익 등으로 공사의 경우 특별기여금수익이 해당되며 2조 5,745억원이 발생하였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 288,330	△ 317,534	29,204	△ 9.2
II. 관리운영비	3,025	3,473	△ 447	△ 12.9
III. 비배분비용	49	55	△ 6	△ 10.5
IV. 비배분수익	82,423	92,494	△ 10,071	△ 10.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 367,678	△ 406,500	38,822	△ 9.6
VI. 비교환수익 등	2,574,503	2,492,853	81,650	3.3
VII. 재정운영결과(V - VI)	△ 2,942,181	△ 2,899,353	△ 42,828	1.5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4년말 순자산총액은 1조 3,714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기초 순자산에 재정운영결과 2조 9,422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5조 1,900억원, 보유주식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 805억원을 반영한 것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3,699,737	3,370,614	329,123	9.8
II. 재정운영결과	△ 2,942,181	△ 2,899,353	△ 42,828	△ 1.5
III. 조정항목	△ 5,270,545	△ 2,570,230	△ 2,700,315	△ 105.1
IV. 기말순자산(I - II + III)	1,371,373	3,699,737	△ 2,328,364	△ 62.9

(자료: 예금보험공사)

II. 검토의견

1. 재고자산매각대¹⁵²⁾: 기금 청산 일정을 고려한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가치 극대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고자산매각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용회사의 주식 매각 수입을 말하는데, 2024년도 계획액 1조 332억원 중 2,166억원이 수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실적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계 획
	계 획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재고자산매각대	1,033,172	1,033,172	216,626	216,626	525,330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4년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리금융지주 출자주식 잔여지분(1.24%) 매각대 1,366억원¹⁵³⁾, 수협중앙회 국채¹⁵⁴⁾ 만기도래 금액 800억원 등임.

152) 세부사업: 재고자산매각대(73-731)

153)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도에 잔여지분 모두를 매각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완료하였음.

154) 수협중앙회는 2022년 9월 예금보험공사 보유 잔여지분에 대해 국채로 상환 완료하였으며,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은 수령한 국채의 연도별(2023년-2027년) 만기 도래시에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재고자산매각대의 연도별 계획액 및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이후 그 수납률이 감소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1조 332억원의 수입계획을 세웠으나, 최종 2,166억원(21%)만 수납되었음.

< 연도별 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액 및 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이체등 증감액	계 획 현액	수납액	수납률
	당초	수정(A)				
2022	910,859	910,859	-	910,859	558,986	61.4
2023	215,642	215,642	-	215,642	80,000	37.1
2024	1,033,172	1,033,172	-	1,033,172	216,626	21.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이처럼 재고자산매각대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당초 계획한 출자금
용회사의 주식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 예금보험공사는 2025년 6월 현재, 한화생명보험 주식 약 8,686만주와
서울보증보험 주식 약 5,855만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의
주가 등 매각 환경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보유 주식 전부를
매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생명보험에 대하여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2017년 이후 남아있는 지분 10%에 대한 매각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아, 공적자금의 미회수액 규모가 1조 299억원에 이르는 상
황임.

또한,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도 공적자금 10조 2,500억원이 지원되었지만, 2025년 3월에 보유지분(93.85%) 중 10%를 매각하는데 그쳐, 2025년 6월 기준 총 5조 1,584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상황임.

< 출자금용회사 주식 보유 현황 >

(단위: 억원, 2025. 6. 기준)

구 분	공적자금('97~'25.6.)			보유 주식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주식 수	지분율
한화생명보험	35,500	25,201	10,299	86,857,001주	10%
서울보증보험	102,500	51,584	50,916	58,546,746주*	83.85%*

* 2025. 3. 14. IPO(기업공개) 시 보유 주식(6,553만주, 93.85%) 중 698만주(10%)를 공모 가격(26,000원)에 매각하여 1,815억원 회수
(자료: 예금보험공사)

○ 이와 같이 공적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낮은 주가¹⁵⁵⁾ 등으로 인해 그 지분을 즉시 매각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인한 의무보호예수 기간¹⁵⁶⁾(1년)이 2026년 3월까지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체 지분을 매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155) 2025년 8월 11일 기준 시가 3,385원

156) 서울보증보험은 2025년 3월 기업공개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최대주주, 임원 등 주요 주주의 보유 주식 매도를 제한함..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존속기한(202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기금 청산을 준비해야 하는 한편¹⁵⁷⁾, 공적자금 상환으로 인한 국민 부담 최소화¹⁵⁸⁾를 위해 보유자산 매각 시에 그 가치를 극대화할 책무도 있음.

□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의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살핍으로써 그 보유지분을 기금 청산 전에 가능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식 매각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 보유 주식을 현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최종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 등에 귀속¹⁵⁹⁾시키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적정 가격 형성 시점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157)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158)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9)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법정 존속기한(2027년 12월)을 고려한 보유지분의 효율적 매각 방안과 함께 기금 청산 후 잔여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제8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1. 수입·지출 결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8년 1월부터 설치·운용되었음.

○ 동 기금은 정부¹⁶⁰⁾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신용보증료, 구상권회수금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신용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구상권 관리 등의 운용에 지출하였음.

○ 동 기금의 운용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고, 감독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 동 기금은 개인의 전세자금보증 등과 사업자의 건설자금보증 등을 수행하는 주택신용보증계정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운영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음.¹⁶¹⁾

□ 2024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수입실적은 4조 5,796억 5,100만원으로 계획금액 대비 6.5% 감소하였음.

160) 주신보계정은 1988년~2007년 정부로부터 총 1조 4,820억원을 출연받은 바 있으나, 2016년~2022년 정부출연금을 회수하는 조치로 총 1조 4,8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2024년말 현재 잔여 정부출연금은 0원임.

16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 동 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와 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으며, 2024년에는 해당 수입으로 1조 697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음.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¹⁶²⁾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 등으로 2024년에는 2,387억 200만원을 수납하였음.
- 면허료 및 수수료는 기금으로부터 주택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보증료로 2024년에는 3,012억 6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4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 실적(총괄)〉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 도				전년 대비 증감 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수납률 (D/C)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25,263	4,897,189	4,897,189	4,579,651	93.5	△5.1
○ 자체수입	1,793,733	1,921,203	1,921,203	1,768,650	92.1	△1.4
- 이자수입	144,570	180,300	180,300	158,758	88.1	9.8
- 위약금	77	142	142	198	139.4	157.1
- 금융기관출연금	1,161,594	1,128,480	1,128,480	1,069,786	94.8	△7.9
- 기타경상이전수입	171,845	225,491	225,491	238,702	105.9	38.9
- 면허료 및 수수료	315,647	386,790	386,790	301,206	77.9	△4.6
○ 정부내부수입	532,957	-	-	-	-	순감
○ 여유자금회수	2,498,573	2,975,986	2,975,986	2,811,001	94.5	12.5

16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2024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 실적(계정별)>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 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수납률 (D/C)	
□ 주택신용보증계정	4,348,486	4,212,407	4,212,407	3,993,420	94.8	△8.2
○ 자체수입	1,503,135	1,575,156	1,575,156	1,456,235	92.5	△3.1
- 이자수입	133,848	169,489	169,489	143,291	84.5	7.1
- 위약금	77	142	142	198	139.4	157.1
- 금융기관출연금	1,074,015	1,038,511	1,038,511	985,429	94.9	△8.2
- 기타경상이전수입	143,348	192,993	192,993	201,359	104.3	40.5
- 면허료 및 수수료	151,847	174,021	174,021	125,958	72.4	△17.0
○ 정부내부수입	532,957	-	-	-	-	순감
○ 여유자금회수	2,312,394	2,637,251	2,637,251	2,537,185	96.2	9.7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476,776	684,782	684,782	586,231	85.6	23.0
○ 자체수입	290,598	346,047	346,047	312,415	90.3	7.5
- 이자수입	10,722	10,811	10,811	15,467	143.1	44.3
- 위약금	-	-	-	-	-	-
- 금융기관출연금	87,579	89,969	89,969	84,357	93.8	△3.7
- 기타경상이전수입	28,498	32,498	32,498	37,343	114.9	31.0
- 면허료 및 수수료	163,799	212,769	212,769	175,248	82.4	7.0
○ 정부내부수입	-	-	-	-	-	-
○ 여유자금회수	186,178	338,735	338,735	273,816	80.8	47.1
합계	4,825,263	4,897,189	4,897,189	4,579,651	93.5	△5.1

(자료: 금융위원회)

□ 2024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지출실적은 4조 5,796억 5,100만원으로 계획금액 대비 6.5% 감소하였음.

○ 사업비는 주택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9,110억 4,000만원, 구상권관리비 273억 6,800만원, 보증료환급 326억 8,600만원, 사업수수료 104억 8,900만원, 담보설정비용 23억 6,600만원, 주신보·주연보IT운영 73억 1,600만원 등 총 9,912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음.

○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428억 500만원, 기금관리비 128억 1,400만원, 법인세 9억 100만원 등 총 565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4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 실적(총괄)〉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 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집행률 (D/C)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25,263	4,897,189	4,897,189	4,579,651	93.5	△5.1
○ 사업비	699,594	781,432	1,016,859	991,265	97.5	41.7
구상권관리비	21,223	24,277	32,274	27,368	84.8	29.0
보증료환급	23,268	28,657	34,715	32,686	94.2	40.5
대위변제	635,639	700,850	926,435	911,040	98.3	43.3
사업수수료	11,017	18,003	12,011	10,489	87.3	△4.8
담보설정비용	2,424	3,168	3,168	2,366	74.7	△2.4
주신보·주연보IT운영	6,023	6,477	8,256	7,316	88.6	21.5
○ 기금운영비	72,838	57,905	58,812	56,520	96.1	△22.4
인건비	41,975	44,455	44,455	42,805	96.3	2.0
기금관리비	13,926	13,450	13,450	12,814	95.3	△8.0
법인세	16,937	-	907	901	99.3	△94.7
○ 정부내부지출	-	-	-	-	-	-
공자기금예탁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 여유자금운용	4,052,831	4,057,852	3,821,518	3,531,866	92.4	△12.9

<2024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 실적(계정별)>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3년 결산 (A)	2024년도				전년 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집행률 (D/C)	
□ 주택신용보증계정	4,348,486	4,212,407	4,212,407	3,993,420	94.8	△8.2
○ 사업비	643,710	739,500	947,509	927,140	97.9	44.0
구상권관리비	19,920	23,156	30,101	25,437	84.5	27.7
보증료환급	20,351	25,129	30,129	28,490	94.6	40.0
대위변제	589,067	669,400	870,000	857,857	98.6	45.6
사업수수료	10,270	16,967	10,975	9,654	88.0	△6.0
주신보IT운영	4,102	4,848	6,304	5,701	90.4	39.0
○ 기금운영비	53,784	39,261	40,329	38,547	95.6	△28.3
인건비	29,223	30,884	30,884	29,658	96.0	1.5
기금관리비	8,737	8,377	8,377	7,988	95.4	△8.6
법인세	15,824	-	907	901	99.3	△94.3
○ 정부내부지출	-	-	-	-	-	-
공자기금예탁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 여유자금운용	3,650,992	3,433,646	3,224,730	3,027,733	93.9	△17.1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476,776	684,782	684,782	586,231	85.6	23.0
○ 사업비	55,884	41,932	69,350	64,125	92.5	14.7
구상권관리비	1,303	1,121	2,173	1,931	88.9	48.2
보증료환급	2,917	3,528	4,586	4,195	91.5	43.8
대위변제	46,572	31,450	56,435	53,183	94.2	14.2
사업수수료	747	1,036	1,036	835	80.6	11.8
담보설정비용	2,424	3,168	3,168	2,366	74.7	△2.4
주연보IT운영	1,921	1,629	1,952	1,615	82.7	△15.9
○ 기금운영비	19,054	18,644	18,644	17,974	96.4	△5.7
인건비	12,753	13,571	13,571	13,147	96.9	3.1
기금관리비	5,189	5,073	5,073	4,826	95.1	△7.0
법인세	1,112	-	-	-	-	순감
○ 여유자금운용	401,838	624,206	596,788	504,133	84.5	25.5
합계	4,825,263	4,897,189	4,897,189	4,579,651	93.5	△5.1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4년 말 기준 기금의 자산은 13조 6,044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하였고, 부채는 1조 2,685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12조 3,358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10,808,852	9,697,273	1,111,579	11.5
	투자자산	2,263,038	2,081,386	181,652	8.7
	일반유형자산	1	1	-	-
	무형자산	2,541	4,134	△1,593	△38.5
	기타비유동자산	529,989	378,454	151,535	40.0
	자산계	13,604,421	12,161,248	1,443,173	11.9
부 채	유동부채	96,913	93,251	3,662	3.9
	장기충당부채	1,095,779	955,243	140,536	14.7
	기타비유동부채	75,841	74,650	1,191	1.6
	부채계	1,268,533	1,123,144	145,389	12.9
순자산	기본순자산	3,226,921	3,226,921	-	-
	적립금 및 잉여금	8,659,769	7,463,609	1,196,160	16.0
	순자산조정	449,198	347,574	101,624	29.2
	순자산계	12,335,888	11,038,104	1,297,784	11.8

(자료: 금융위원회)

□ 2024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1조 1,961억원 6,000만원 흑자로 전년도 재정운영결과인 7,191억원 4,300만원 흑자 대비 4,770억 1,700만원 증가함.

○ 동 기금의 재정운영결과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자산(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전년 대비 4,329억원 증가한 데 기인함.

* 연기금투자품의 연간 배당으로 실제 처분이 아닌 재투자 개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496,034	608,831	△112,797	△18.5
1. 프로그램 총원가	776,365	869,053	△92,688	△10.7
2. 프로그램 수익	△280,331	260,222	△20,109	△7.7
II. 관리운영비	23,275	24,287	△1,012	△4.2
III. 비배분비용	1,089	613	476	77.7
IV. 비배분수익	646,772	191,280	455,492	238.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26,374	442,451	△568,825	△128.6
VI. 비교환수익 등	1,069,786	1,161,594	△91,808	△7.9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196,160	△719,143	△477,017	△66.3

(자료: 금융위원회)

□ 2024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기말 순자산은 12조 3,358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 순자산 11조 381억 500만원 대비 1조 2,977억 8,300만원 증가하였음.

○ 동 기금의 기말 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24년 재정운영 결과를 1조 1,961억 6,000만원 시현한 것에 기인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11,038,105	9,683,692	1,354,413	14.0
1. 기본순자산	3,226,921	3,226,921	0	-
2. 적립금 및 잉여금	7,463,609	6,744,466	719,143	10.7
3. 순자산조정	347,575	△287,695	635,270	220.8
II. 재정운영결과	△1,196,160	△719,143	△477,017	△66.3
III. 조정항목	101,624	635,270	△533,646	△84.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12,335,888	11,038,105	1,297,783	11.8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대위변제(주택신용보증계정·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¹⁶³⁾ 및 기타경상이전수입¹⁶⁴⁾: 보증심사 단계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위변제” 사업은 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은 2024년 계획현액 8,700억원 중 8,578억 5,700만원(98.6%)이 집행되고 121억 4,3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은 2024년 계획현액 564억 3,500만원 중 531억 8,300만원(94.2%)이 집행되고 32억 5,2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대 위 변 제 (주 신 보)	669,400	870,000	-	870,000	857,857	-	12,143	1,336,400
대 위 변 제 (주 연 보)	31,450	56,435		56,435	53,183	-	3,252	88,814

(자료: 금융위원회)

163) 세부사업: 주신보운영 대위변제(2631-303), 주연보운영 대위변제(2631-303)

164)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은 채무관계자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 등 구상권 행사에 의한 구상권 회수금, 법인세 환급금 및 구상권관리비 회수액 등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1,929억 9,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3조 3,750억 1,800만원 중 2013억 5,900만원을 수납하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6.0%) 2조 9,255억 4,100만원을 미수납(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 86.7%), 2,481억 1,9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율 7.4%).

〈2024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불 납 결 손 액	
	당 초	수 정						
기타경상이전수입	192,993	192,993	192,993	3,375,018	201,359	2,925,541	248,119	288,759

(자료: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신보계정과 주연보계정으로 구분됨.
- 주신보계정은 개인이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 포함)·개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거나(개인보증), 사업자가 주택의 건설·임대를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거나(사업자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반환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함.

〈개인보증 구조〉

보증부대출 개념도



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림에서 “보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 구조〉

임차보증금반환보증 개념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2024년도 주신보계정의 보증공급 규모는 총 76조 2577원이고, 연도 말 보증잔액은 130조 9778억원임.

〈2024년도 주신보계정 보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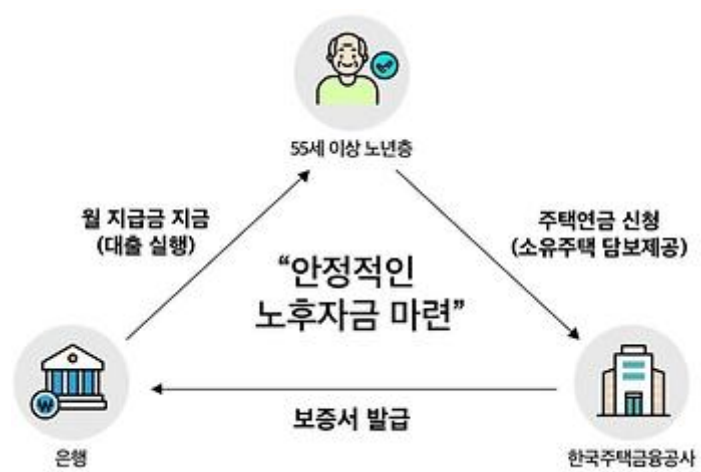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보증실적										보증잔액 (2024년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개인	528,000	601,361	610,000	588,873	674,000	641,769	623,000	618,766	652,000	615,960	1,029,849
반환		2,941		10,700		30,650		68,298		92,666	
사업자	36,000	42,291	40,000	51,370	44,000	57,488	48,000	68,196	60,000	53,951	125,819
총계	564,000	646,593	650,000	650,943	718,000	729,907	671,000	755,260	712,000	762,577	1,309,778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연보계정은 55세 이상 고령자인 주택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 형태로 대출(이른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도 주연보계정의 보증공급 규모는 총 23조 5,575억원이고, 연도말 보증잔액은 161조 1,499억원임.

〈2024년도 주연보계정 보증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보증실적										보증잔액 (2024년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건수	11,600	10,172	10,500	10,805	10,850	14,580	14,700	14,885	15,080	14,670	105,127
보증공급액	119,000	111,028	140,000	150,255	230,000	249,692	254,000	225,016	255,000	194,499	1,386,790
연금지급액	12,274	12,105	13,168	14,547	13,168	19,242	21,167	23,856	26,242	26,406	119,582
총계	142,874	133,305	163,668	175,607	254,018	283,514	289,867	263,757	296,322	235,575	1,611,499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 검토의견:

- 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연금 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보증사고 발생 증가와 함께 공사의 대위변제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대출 실행 후 연체 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등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금융기관의 보증심사 부실 여부 등 면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고 피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 그런데 2024년도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보증, 반환보증, 사업자보증 및 연금보증 상품 모두에서 전년 대비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 그리고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 비중이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전세사기¹⁶⁵⁾ 등에 따라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증대되어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2024년도의 경우 보증사고¹⁶⁶⁾ 금액이 전년 대비 2.5배로 증가(1,013억원→2,524억원)하였고,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전년 대비 2.7배로 증가(840억원→2,275억원)하였음.

16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 6. 1. 시행) 이후 2025년 7월말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로 최종결정한 사례는 총 3만 2,185건임.

166) 2022년도 반환보증 공급분에 대한 보증사고는 해당 반환보증이 만기(2년)가 되는 2024년에 발생하게 됨.

〈최근 5년간 주신보계정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	보증 잔액(A)	1,719,624	995,686	1,733,405	1,078,006	1,805,307	1,102,294	1,799,371	1,087,086	1,725,155	1,029,849
	보증사고 금액(B)	10,772	3,593	9,351	3,596	11,059	5,287	15,438	7,790	17,892	9,445
	보증사고율(B/A)	0.63	0.36	0.52	0.33	0.61	0.48	0.86	0.72	1.04	0.92
	대위변제 금액(C)	7,392	2,461	6,009	2,242	6,653	3,099	9,086	5,035	10,994	6,168
	대위변제율(C/A)	-	0.25	-	0.21	-	0.28	-	0.46	-	0.6
반환 ¹⁾	보증 잔액(A)	1,591	2,928	7,347	13,384	21,658	41,849	49,820	96,557	77,286	154,110
	보증사고 금액(B)	-	-	-	-	51	111	486	1,013	1,312	2,524
	보증사고율(B/A)	-	-	-	-	-	0.27	-	1.05	-	1.64
	대위변제 금액(C)	-	-	-	-	28	61	405	840	1,182	2,275
	대위변제율(C/A)	-	-	-	-	-	0.15	-	0.87	-	1.48
사업자	보증잔액(A)	1,324	58,904	1,830	78,599	2,211	92,192	3,138	124,586	3,611	125,819
	보증사고금액(B)	51	237	16	35	17	55	110	1,791	144	2,026
	보증사고율(B/A)	3.85	0.40	0.87	0.04	0.77	0.06	3.51	1.44	3.99	1.61
	대위변제금액(C)	18	27	6	45	5	7	9	16	1	136
	대위변제율(C/A)	-	0.05	-	0.06	-	0.01	-	0.01	-	0.11

주1)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2020년 7월 처음 출시되어 2020년도 보증공급 건의 만기도래
시점인 2022년부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최근 5년간 주연보계정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 잔액(A)		66,121	734,914	71,791	829,866	82,941	1,046,243	94,406	1,235,333	105,127	1,386,790
보증사고 금액(B)		-	-	-	-	-	-	-	-	-	-
보증사고율(B/A)		-	-	-	-	-	-	-	-	-	-
대위변제 금액(C)		109	137	131	148	174	207	284	466	380	538
대위변제율(C/A)		-	0.019	-	0.018	-	0.020	-	0.038	-	0.039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금액이 계획 대비 과다해짐에 따라 공사는 2024년 ‘대위변제(주신보·주연보)’ 사업에 대한 총 3회¹⁶⁷⁾에 걸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신보계정 총 30.0%, 주연보계정 총 79.4%의 계획액 증액을 실시하였음.
- 공사는 2024년도뿐 아니라 과거부터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대위변제 계획액을 증액하여 운용해왔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당초 계획액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였음.

〈최근 5년간 대위변제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회)

연도	사업명	계 획 액				수정
		당초	증액	(변경률)	변경횟수	
2020	대위변제(주신보)	240,000	13,130	(+5.5%)	1	253,130
	대위변제(주연보)	11,359	2,700	(+23.8%)	2	14,059
2021	대위변제(주신보)	281,000	-	-	-	281,000
	대위변제(주연보)	24,438	-	-	-	24,438
2022	대위변제(주신보)	291,200	28,800	(+9.9%)	1	320,000
	대위변제(주연보)	23,400	0	-	0	23,400
2023	대위변제(주신보)	306,100	288,345	(+94.2%)	3	594,445
	대위변제(주연보)	24,790	30,386	(+122.6%)	2	55,176
2024	대위변제(주신보)	669,400	+200,600	(+30.0%)	1	870,000
	대위변제(주연보)	31,450	+24,985	(+79.4%)	2	56,435

(자료: 금융위원회)

167) 2024년도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 횟수는 총 8회임.

□ 한편 공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공사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구상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DM발송, 유선연락 등 채권 추심 활동을 실시함. 또한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상환을 회피하거나 채무조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 등 자발적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또한 통상적인 법적절차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하고, 시효 내 구상권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익 있는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 처리를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공사의 구상채권 회수 실적을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5~6%로 상당히 저조하고, 특히 주신보계정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징 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1	124,043	124,043	124,043	2,443,416	130,624	105.3	5.3	2,119,703	193,089
2022	135,197	135,197	135,197	2,452,207	124,922	92.4	5.1	2,190,830	136,455
2023	145,612	145,612	145,612	2,798,656	143,348	98.4	5.1	2,481,273	174,035
2024	192,993	192,993	192,993	3,375,018	201,359	104.3	6.0	2,925,541	248,119
2025 (7월말)	288,759	288,759	288,759	3,746,905	151,763	52.6	4.1	3,408,168	186,973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5년간 주신보계정 구상채권 회수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인	구상채권 ¹⁾	13,789	13,245	14,105	16,430	18,902
	구상채권회수액	1,413	1,130	1,068	1,100	1,377
	회수율 ²⁾	7.81	7.05	6.53	5.74	6.09
반환	구상채권	-	-	55	781	2,751
	구상채권회수액	-	-	6	113	305
	회수율	-	-	10.55	12.69	9.98
사업자	구상채권	8,040	7,806	7,609	7,460	7,435
	구상채권회수액	34	15	23	45	7
	회수율	0.4	0.19	0.3	0.6	0.09

주1) 회수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각처리한 채권도 포함

주2) 회수율(원금) = 보증종류별 구상권 원금 회수액 / {보증종류별 전년도 구상권 잔액 + 보증종류별 당해 대위변제액} * 1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최근 5년간 주연보계정 구상채권 회수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상채권	131.95	162.82	245.28	443.84	616.01
구상채권회수액	85.18	114.47	124.8	265.47	346.38
회수율 ¹⁾	39.15	40.97	33.73	37.34	35.27

주1) 회수율(원금) = 구상채권회수(원금) / {전년도 구상채권잔액 + 당해연도 발생} × 1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특히 반환보증의 경우 2024년 구상채권의 규모가 전년대비 15% 증가한 가운데 회수율은 오히려 9.98%로 감소하였으며, 사업자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회수율이 1% 미만대로 몹시 미흡한 실정임.

- 나아가, 최근 감사원의 공사 기관정기감사(2025. 7. 31.) 결과에 따르면 개인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3사¹⁶⁸⁾의 최근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현황을 비교했을 때, 공사의 경우 보증 공급금액이 보증3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인 데 반해 관련 대위변제 비중은 67%에 달하는 등 타사 대비 보증사고 비율이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주금공	공급 건수	629,924	717,114	709,470	740,426	<u>713,163 (67%)</u>	357,753
	공급 금액	403,196	506,948	493,353	546,800	<u>529,299 (45%)</u>	280,630
HUG	공급 건수	118,963	128,385	162,273	154,587	218,100 (20%)	110,505
	공급 금액	168,291	194,463	256,755	246,673	329,386 (28%)	171,647
SGI	공급 건수	124,434	161,818	162,182	163,806	140,234 (13%)	76,152
	공급 금액	225,055	341,232	372,675	367,758	314,682 (27%)	177,570
계	공급 건수	873,321	1,007,317	1,033,925	1,058,819	1,071,497	544,410
	공급 금액	796,542	1,042,643	1,122,783	1,161,231	1,173,367	629,847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정기감사”, 2025. 7.)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주금공	대위변제 건수	5,439	6,939	5,475	6,276	<u>8,708 (85%)</u>	5,056
	대위변제 금액	1,689	2,386	2,166	3,053	<u>4,983 (67%)</u>	2,964
HUG	대위변제 건수	118	222	199	392	873 (8%)	423
	대위변제 금액	172	310	262	502	1,298 (17%)	615
SGI	대위변제 건수	378	426	364	459	693 (7%)	491
	대위변제 금액	343	462	470	674	1,211 (16%)	840
계	대위변제 건수	5,935	7,587	6,038	7,127	10,274	5,970
	대위변제 금액	2,204	3,158	2,898	4,229	7,492	4,419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정기감사”, 2025. 7.)

168)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심사 승인 단계에서 보증기관 간 물건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동일 물건지에 대한 중복 보증과 사기대출 등이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보증상품의 채권보전조치가 미흡하여¹⁶⁹⁾ 타 보증상품 및 보증기관 대비 회수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채권 회수 단계에서 부정대출자에 대한 고발기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¹⁷⁰⁾이 확인되었음.

□ 공사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위변제율과 저조한 구상채권 회수율은 초기 보증심사 단계의 리스크 관리와 대위변제 이후 채권회수 프로세스 모두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공사는 향후 피보증인의 상환능력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잠재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사전 심사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채권 회수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구상채권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적 보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연례적으로 과도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국회의 심의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측면이

169) 청년전세자금보증 상품의 경우 낮은 보증금액(2억원 제한), 특례보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채권보전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채권보전조치가 의무화된 타 보증기관에 비해 회수율이 저조하였음.

170) 고발기준상 고발대상에 해당되어도 공사가 자체 조사하여 고발한 사례는 없고, 공사가 고발한 사례는 모두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것이거나 특정 차주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비위 통보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었음.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공사는 추후 연간 기금의 대위변제 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여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